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2023. 5. 개정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 본 길잡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각 기관은 기관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본 길잡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권익보호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I	제1장 연구윤리 길잡이 개요	1
	1. 배경	3
	2. 목적 및 주요내용	4
	3. 적용 대상 및 활용방법	5
	4. 구성	7

II	제2장 연구 진실성 보호 및 관리	9
	제1절 개요	11
	1. 연구진실성의 개념	11
	2. 관련 근거	13
	3. 연구진실성 관련 길잡이의 목적	13
	제2절 연구진실성 확보 방안	14
	1.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기본 원칙	14
	2. 연구수행에서의 연구진실성 확보 노력	15
	제3절 연구진실성 보호·관리 체계	18
	1.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환경 조성	18
	2. 연구수행에서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	19

III	제3장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21
	제1절 개요	23
	1. 학문교류의 개념	23
	2. 학문교류 관련 길잡이의 목적	23
	제2절 학문교류의 기본원칙	23
	1. 연구결과 발표의 기본원칙	23
	2. 저자표시 및 기여자	25
	3. 저자의 소속기관 표시	29
	4. 특수관계인의 저자표시	30
	5. 논문 투고 시 이해충돌의 공개	32



CONTENTS

6.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33
7. 건전한 학술활동	34
제3절 정보의 보호	39
1.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39
2. 국제교류에서 정보의 보호	42
3. 해외 주요국의 연구보안 관련 사례	44

IV

제4장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59

제1절 개요	63
1. 이해충돌의 개념	63
2. 이해충돌 관련 법·규정	64
3. 이해충돌 예방·관리 규정 마련 의무	67
4. 이해충돌 예방·관리 길잡이의 기본 원칙과 목적	72
제2절 연구개발 이해충돌의 유형	74
1. 연구개발 이해충돌의 유형 구분	74
2. 연구자등의 직무 유형별 예시 및 관련 법령	76
제3절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방안	79
1.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목적	79
2. 연구기관의 책무	79
3. 연구자의 책무	82
제4절 이해충돌 관리·점검 절차 및 체계	84
1. 연구수행 시 이해충돌 관리·점검 체계	84
2. 연구자의 외부 활동 수행 시 사전 보고 및 관리체계	86
3. 연구자 창업 시 직무적 이해충돌 관리	87

부록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 해설 98

제1절 개요	98
--------------	----

제2절 연구자 개인 차원의 이해충돌 유형과 대응	98
1.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98
2.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103
3.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104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105
5.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108
6. 재산상 이익 목적 직무상 비밀 이용 제한	109
7. 민간기관 재직자 공무수행사인 활동시 의무	111
제3절 연구기관 차원의 이해충돌 유형과 대응	113
1.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재직자 가족채용 제한	113
2.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재직자 관련 수의계약 제한	114
제4절 이해충돌 대응 체계 및 연구자·연구기관의 책무	117
1. 이해충돌 예방	117
2. 이해충돌 신고 및 처리 절차	119
3. 이해충돌담당관의 지정	121
4. 이해충돌 관련 규정 등의 위반에 대한 조치	122
5.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이해충돌 예방 책무	124

V

제5장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 127

제1절 개요	129
1. 인간 대상 연구의 개념	129
2. 인간 대상 연구 관련 법·규정	131
3. 동물실험의 개념	131
4. 동물실험 관련 법·규정	132
5.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실험 관련 길잡이의 목적	133
제2절 인간 대상 연구	134
1. 인간 대상 연구의 원칙	134
2. 연구개발기관의 책무	136
3. 위원회의 책무	138
4. 연구자의 책무	140



CONTENTS

제3절 동물실험	143
1. 동물실험의 원칙	143
2. 연구개발기관의 책무	144
3. 위원회의 책무	147
4. 연구자의 책무	149

VI

제6장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155

제1절 개요	157
1. 건전한 연구실 문화의 개념	157
2. 건전한 연구실 문화조성 관련 길잡이의 목적	158
제2절 연구자 권익보호	158
1. 권익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	158
2. 차별 금지	161
제3절 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및 갈등 관리	162
1. 상호 신뢰 조성	162
2. 연구실 내 갈등 관리	163
제4절 연구실 내 소통 강화	164
1. 목표지향적 소통	164
2. 주기적 개방형 소통	164
제5절 연구자 안전 및 건강 보호	165
1. 안전환경 조성	165
2. 건강검진	167
3. 안전문화 인식 확립 및 실행	167

VII

제7장 연구윤리 교육 173

제1절 개요	175
1. 연구윤리 교육의 목적	175
2. 관련 근거	175

제2절 연구윤리 교육 내용 177

- 1. 개요 177
- 2. 공통 주제 177
- 3. 선택 주제 178
- 4. 연구윤리 범주 관련 주요 교육 내용 178

제3절 연구윤리 교육 방법 180

- 1. 교육의 실시 180
- 2. 교육프로그램 181
- 3. 교육자료 182
- 4. 교육인력 183

VIII 제8장 예시규정 189

IX 부 록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조사·검증 및 처리절차 203



들 어 가 며

2007년 과학기술부에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처음 제정한 이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부정행위 의혹 제기가 늘어나고, 새로운 형태의 연구윤리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연구윤리적 감수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동안 연구부정행위 중심으로 접근을 하다보니 오히려 올바른 연구수행과 다양한 연구윤리의 확립에 소홀했던 탓은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2021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으로 연구기관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새로운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에 따라 오랜 기간 연구윤리를 연구하고 해당 분야에서 활동해온 민간전문가들로 “연구윤리 길잡이(가이드라인) 전담반(T/F)”을 구성하여 각각의 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 길잡이를 마련하였습니다. 길잡이를 마련하면서 연구윤리규정에 새롭게 반영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였고, 특히 선부르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순간 연구자나 연구기관에는 현실적인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히 고민하였습니다. 한편, 오랫동안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계에 연구윤리 문제가 많다는 사회의 시각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연구부정행위 방지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연구윤리와 책임 있는 연구수행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하였습니다.

T/F 내에서도 그리고 연구현장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정부에서 새로운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과 우려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나 혁신법에 새로이 추가된 연구윤리 범주들이 그동안 등한시해왔던 바람직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우리 연구현장에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중요한 원칙들이고, 정부나 사회의 타율적 요구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신기술 개발과 급속한 변화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연구윤리 문제는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연구 부정행위 방지라는 좁은 틀로는 과학기술과 연구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연구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연구윤리 의식의 고취와 체득화, 그리고 건강한 연구문화를 통해서만 우리 연구자들이 전문가로서, 또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길잡이에서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괴리가 나는 부분은 전적으로 T/F의 부족함에 기인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현장의 연구자들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지켜나갈 연구윤리의 자율적 규율과 길잡이를 완성시켜 가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2월

'21년도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길잡이) TF 위원장 **엄 창 섭**



2021년 5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고 2022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현장의 이해충돌 예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현장은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로 구성되므로, 본 길잡이는 각 주체의 특성에 맞는 이해충돌 관련 법령 규정을 소개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현장에서도 관련 주체의 법적 지위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본 길잡이는 관련 법령 및 처벌 규정을 쉽게 소개하여 연구자 등을 법적으로 보호하되, 법령 규정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가 연구개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제4장은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와 ‘부록: 공공부문의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 해설’을 구분하여,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부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을 안내하여 현장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부록: 공공부문의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 해설’에서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 이해충돌 관련 법규에 따라 이미 준수하고 있는 사항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새롭게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공공연구부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윤리길잡이 개정본은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이 길잡이가 연구현장에서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5월



제2차 개정본 안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통해 연구윤리범주를 확대하고 연구기관에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규정을 마련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간·동물 연구윤리, 건전한 연구실문화 등 혁신법상 규정된 연구윤리에 관한 통합사항을 포괄하는 통합가이드라인으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제정('22.2) 및 개정('22.5)한 바 있습니다.

이 후 연구기관의 필요와 사례, 연구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연구윤리 길잡이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본을 준비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의 제정 및 운영 시 참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연구자의 외부활동,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소속연구자의 기술창업 등 이해충돌 자체 규정 마련 시 연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연구개발기관의 자발적인 연구윤리 확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의 분야별 연구윤리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보안 인식 제고 및 대책 마련 등에 실질적으로 참고 가능한 연구보안 관련 주요 해외 사례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국내 연구자의 부실의심학술지 논문 게재가 이슈화됨에 따라, 부실학술지 게재를 예방하기 위해 부실의심 학술지의 특징과 주의사항, 예방방법 등 참고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길잡이가 연구현장에서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5월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제1장

연구윤리
길잡이 개요

I	제1장 연구윤리 길잡이 개요	1
	1 배경	3
	2 목적 및 주요내용	4
	3 적용 대상 및 활용방법	5
	4 구성	7

I

제1장 연구윤리 길잡이 개요

1. 배경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정에 따라 종전의 연구진실성, 연구부정 대응에 국한되었던 연구윤리 규범이 건강하고 성숙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규범으로 범위가 확장되었음

〈혁신법으로 달라진 연구윤리〉¹⁾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윤리확보	연구윤리확보
연구윤리개념	연구부정행위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 관리	연구진실성 확보 +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 이해 충돌 관리 + 인간·동물 대상 연구 윤리 +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
책임주체	불명확	연구자·연구개발기관
책임주체의 의무	(연구자) - (연구기관) 연구부정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	(연구자) 연구윤리 준수 및 진실·투명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수행 (연구기관) ① 자체 연구윤리 규정 마련, ② 소속 연구자 등의 연구윤리 확보 지원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책무를 지니며(혁신법 제7조제1항)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5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해야 함(혁신법 제31조제4항 및 시행령 제58조)

📖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7343호)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중략)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중략)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1.06)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④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87호)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2.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4.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5.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6.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때 혁신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 규정은 혁신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하여 마련하는 자체규정과는 구분되는 개념임

- 제57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하여 마련하는 자체규정은 동법 시행규칙을 참조하기 바람

 관련 법령: ‘부정행위의 검증·조치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87호)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2. 목적 및 주요내용

 본 길잡이는 연구개발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 및 예시규정을 제시함으로써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연구윤리 규정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됨

- 혁신법 제정에 의해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확대되었으나, 연구윤리규정 제·개정에 곤란을 겪는 기관의 연구윤리관련 담당 부서, 담당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길잡이를 마련
- 연구기관이 연구윤리 관련 규정, 지침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포함해야 할 사항들에 관해 주요 개념 소개, 관련 법령 및 규정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기관은 기관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본 길잡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舊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기관 정책 등에 따라 각 기관이 운영 중인 연구윤리규정(지침 또는 강령 등) 중 모범 규정 사례 등을 제시하여 각 기관별로 부족한 연구윤리규정 부분을 보완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 길잡이는 개요를 포함하여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58조 제1항에 따라 포함해야 할 사항을 반영하여,
- ①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②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③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④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⑤ 연구자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⑥ 연구윤리 교육 및 ⑦ 예시규정을 포함하여 구성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22년 5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의 적용 등을 고려하여 본 개정본('22.5월)에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분야 및 관련 예시규정을 추가함

3. 적용 대상 및 활용방법

- 📌 본 길잡이는 혁신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적용대상이며,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제2조제3호 정의에 따름

🔗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87호)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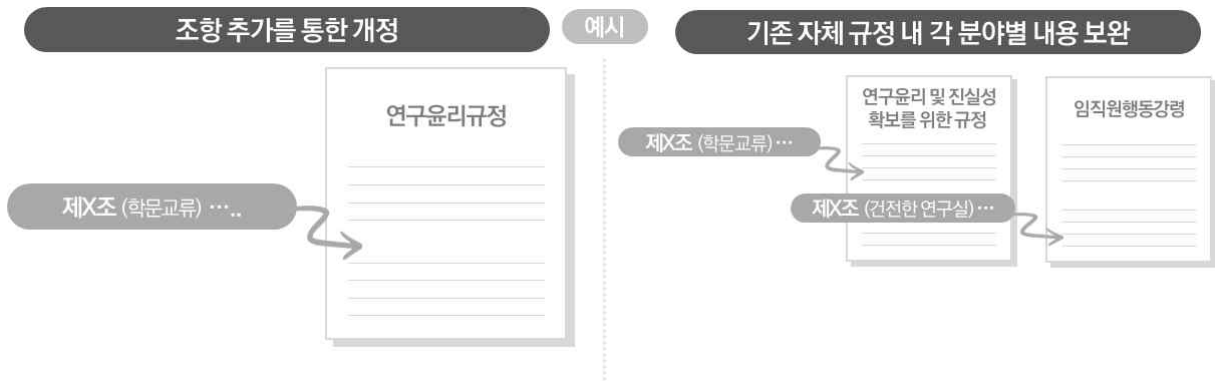
본 길잡이를 참고하여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기존에 있었던 자체규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등 편의에 따라 규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학술진흥법 제15조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에 따른 자체규정 또는 舊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 등

※ 특히, 대학·출연연구 여건이 상이한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 각 연구개발기관들은 기관의 상황과 특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길잡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함

※ 본 길잡이에 참고 및 사례 자료로 포함된 법규정 및 연구기관의 자체규정 등은 수시로 제개정될 수 있어 본 길잡이에 실린 내용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해당 법규정을 확인하길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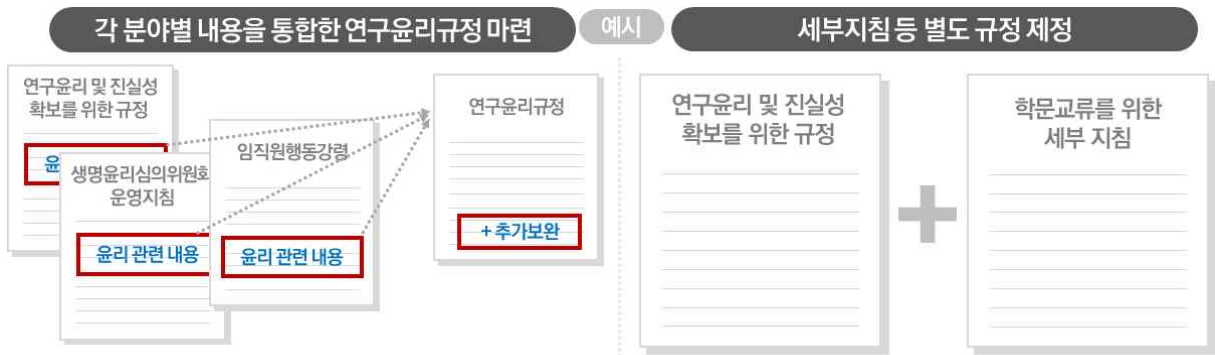
- 자체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길잡이를 참고하여 조항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혁신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포함해야 할 사항이 각기 다른 규정에 포함되어 있을 시 기존 자체규정의 통합화가 아닌 각 분야별 내용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개정해도 무방함



-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 기존에 있었던 자체규정에서 각 분야별 내용을 통합하고 추가·보완한 하나의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거나, 기존 자체규정의 세부지침 또는 행동강령 등을 제정**하는 등으로 규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연구윤리규정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운영 등 세부적인 내용은 기존 자체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

** 기존 규정에서 각 분야에 대한 세부내용은 세부지침을 따른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



4. 구성

-  각 장은 각 분야에 대한 기본 개념과 분야별 길잡이의 목적 및 범위, 관련 법령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연구윤리규정 제·개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음
- 주요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 관련 법령, 규정 사례 등을 포함함



참고

각 분야별 연구윤리규정 제·개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에 대한 개념 이해 또는 해석 등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내용

관련 법령

각 분야별 연구윤리 주요 사항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조항 내용

규정사례

대학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 중 향후 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개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규정사례

참고할만한 자료 본 연구윤리길잡이에서 상세히 다루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참고할만한 문헌 소개

-  예시규정은 연구개발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규정 사례 등을 토대로 마련하였으며, 기관별 ‘연구윤리규정’ 제·개정 시(기존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또는 새로운 연구윤리규정 제정 등),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제시한 사항을 참고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제2장

연구 진실성 보호
및 관리

II

제2장 연구 진실성 보호 및 관리 9

제1절 개요 11

- 1 연구진실성의 개념 11
- 2 관련 근거 13
- 3 연구진실성 관련 길잡이의 목적 13

제2절 연구진실성 확보 방안 14

- 1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기본 원칙 14
- 2 연구수행에서의 연구진실성 확보 노력 15

제3절 연구진실성 보호·관리 체계 18

- 1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환경 조성 18
- 2 연구수행에서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 19

II

제2장 연구 진실성 보호 및 관리

제1절 개요

1. 연구진실성의 개념

 연구진실성(research integrity)은 연구윤리의 핵심으로 연구개발에서의 진실성은 연구의 계획, 제안, 수행, 보고, 평가 등 연구의 전 과정에서 객관성, 정직성, 개방성, 책임성, 공정성 등 과학의 핵심 가치를 따르는 것을 의미²⁾

- 연구 계획 단계에서부터 연구자는 연구가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연구수행 과정에서 정확한 데이터와 면밀한 방법론을 토대로 매우 높은 수준의 증거 및 과학적 신뢰성 확보가 요구됨
- 또한 연구결과와 확산 단계에서 연구자는 해당 연구에 기여한 모든 연구자의 공적을 밝히고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하며, 연구결과를 입증하는 데 사용된 모든 실험 방법 및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함
- 이러한 진실성 확보를 위한 핵심 가치는 연구자 개인뿐 아니라 연구기관, 연구비 지원기관, 학회 및 지식사회가 함께 추구해나가야 하며,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범과 실천 방안은 기술과 연구 환경의 변화, 연구 분야의 특성에 따라 함께 공진화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함



참고

- **과학연구에서의 진실성**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8, p8))
 - 과학연구의 전 과정에서 속임수, 부주의, 자기기만 등으로 인해 정확성과 객관성에 결함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지는 않았는지 여부와 관련됨
- **연구진실성**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걸음」, 2019, p10)
 - 연구의 전 과정(제안, 계획, 수행, 보고, 검토, 확산 등)에서 연구의 핵심가치인 ① 객관성, ② 정직성, ③ 개방성, ④ 공정성, ⑤ 책무성, ⑥ 관리 등을 지켜 나가는 것을 의미함
- **연구진실성** (「연구진실성 연구윤리 업무 매뉴얼, 2021」, p13)
 - 연구진실성(research integrity)은 연구윤리의 핵심으로 바람직한 연구가 무엇인지를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으며 절차적 투명성과 내용적 객관성을 포괄하는 개념에 해당함

2)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2017. Fostering Integrity in Research.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https://doi.org/10.17226/21896>: p38



참고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기본 원칙〉

- **Fostering Integrity in Research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Medicine, 2017)**
 - 객관성(objectivity): 특정한 동기가 연구자의 연구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함
 - 정직성(honesty):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자료와 데이터를 사실 그대로 활용하고 보고해야 함
 - 개방성(openness): 연구수행을 통해 획득된 데이터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책임성(accountability): 연구수행 과정과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공정성(fairness): 연구자원 분배, 연구업적 평가 등에서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 관리의 의무(stewardship): 연구의 가치가 잘 확산되고 연구자들의 활동이 진작될 수 있도록 연구공동체를 운영해야 함
- **The European Code of Conduct for Research Integrity (All European Academies, 2017)**
 - 신뢰성(reliability): 연구의 디자인, 방법론, 분석, 자원 활용 과정에서의 연구의 질적 수준 확보
 - 정직성(honesty): 연구의 기획, 수행, 검토, 보고, 발표 등 전 과정에서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 존중(respect): 동료 연구자, 연구 참여자, 사회, 생태계, 문화유산 및 환경에 대한 존중
 - 책무(accountability): 연구의 첫 아이디어부터 성과물 출판에 이르기까지 연구관리, 교육, 감독 및 멘토링, 연구의 영향력 등에 대한 책임성
- **Singapore Statement on Research Integrity (2010)**
 -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의 정직성(honesty)
 - 연구수행에서의 책임성(accountability)
 - 공동연구에서의 상호 존중과 공정성(professional courtesy and fairness)
 - 연구의 사회적 책무(good stewardship of research on behalf of others)

규정사례

〈연구진실성 관련 원칙〉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5조(원칙)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함으로써 학문적 진실성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1. 자신의 연구결과를 보고·발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2.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본 연구윤리지침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3. 연구결과를 대중매체에 과장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4조(연구의 진실성)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련 근거

- ④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함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를 포함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 관련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8069호)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⑤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87호)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7343호)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④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연구진실성 관련 길잡이의 목적

- ④ 본 길잡이 '제2장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는 연구수행에서의 정직성, 개방성, 공정성 등의 확보를 위한 기본 원칙과 관리체계를 제시함
 - 연구진실성 확보는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국한되지 않으며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책임 있는 연구수행의 기본 원칙을 포괄함
 - 종전에는 연구진실성의 보호 및 관리의 개념이 연구부정행위의 조사·검증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본 길잡이 '제2장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사회적·윤리적 영향을 고려한 진실성 보호 및 관리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검증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본 길잡이에 포함하지 않으며, 다만, 연구결과의 발표 등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관련 내용은 본 길잡이의 제3장(학문교류에 관한 윤리)에서 일부 다루고 있음

제2절 연구진실성 확보 방안

1.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기본 원칙

- ① 연구자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실에 기초하여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함
- ② 연구자는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연구개발이 미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 영향을 고려해야 함
- ③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책임 있는 연구수행 문화를 지지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연구의 전 단계에서 연구진실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연구수행단계별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숙지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지도하에 있는 다른 연구자에게 책임 있는 연구수행에 대한 지도와 멘토링을 제공하고, 필요 시 연구수행을 모니터링함
 - 책임있는 연구수행과 관련한 법, 규정, 학문적 기준, 도덕적 기준, 기관 정책을 준수해야 함

📖 관련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7671호)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⑤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7343호)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연구수행에서의 연구진실성 확보 노력³⁾

1) 연구비 지원에 따른 관리 책임

- ☞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 수주 및 집행과정에서의 윤리적 책임을 견지함으로써 재정적 지원이 있는 경우 이를 적절하게 밝히고 재원을 투명하게 사용·관리하여야 함
- ☞ 연구비 지원으로 인해 연구의 진실성이 저해되지 않아야 함
- ☞ 연구결과 발표 시 연구비 지원 사실을 명시하여야 함

2) 연구자료의 기록·처리, 보존, 보고 및 공개

- ☞ 연구자는 정확하고 검증된 연구자료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해야 함
 - 연구데이터는 연구의 독창성을 증명하고 연구성과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연구실 및 연구기관의 기록 방식 및 방침 등을 준수하여 정확히 기록해야 함
 - 연구자는 연구데이터 또는 연구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임의로 변형, 삭제 또는 누락함으로써 연구자료를 조작(변조)하여서는 안 됨
 - ※ 연구데이터는 실험의 재료·과정·결과, 관찰·현장조사·설문조사의 결과 등 원 자료를 의미하며, 연구자료는 연구데이터 및 이를 처리한 이차자료를 의미
 - 연구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진실하지 아니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지 않도록 함
- ☞ 연구자료의 기록, 저장, 보존 및 관리, 공개, 소유 등에 관한 소속 연구기관 및 연구비 지원 기관 등의 정책 및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3) 연구성과의 사용

- ☞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연구문헌 등을 작성할 때에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여야 함
- ☞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연구저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해야 함
- ☞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결과물 또는 연구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정확한 출처 표시를 해야 하며, 동일한 문장을 사용 시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함
- ☞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 및 인용 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여서는 아니됨

4) 공동연구 및 저자 표시

- ☞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 연구자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함
- ☞ 연구의 계획, 개념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현저하게 기여한 연구자들을 반드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 순서는 전공분야의 규칙과 참여한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야 함

3) 서울대, 고려대 등 연구기관의 현행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토대로 주요 내용을 발췌 및 재구성함

5) 연구성과 보고 및 발표에서의 진실성 확보

-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보고 및 발표할 때 정확하고 진실되게 기술해야 함
-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발견 시 지체 없이 연구결과와 연구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
- 연구결과를 대중매체에 과장하여 공개하지 않아야 함



참고

〈연구수행단계별 연구진실성 보호 방안〉⁴⁾

1. 연구설계 및 계획단계

- 본격적인 연구수행 이전 연구설계 및 계획 단계에서 연구가 연구공동체의 지적 발전, 사회의 안녕과 인류의 복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해야 함
- 공동연구 시 참여 연구자 간 공통의 연구목적을 공유하고, 역할 배분 및 연구 기여도에 따른 저자 자격 부여 및 순위 등을 합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함
-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수행 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획득해야 함

2. 연구수행단계

- 연구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연구 데이터(문헌 원문, 설문조사 결과, DNA 서열 등)의 보관은 연구과제의 성격과 데이터의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 데이터 저장과 보호에 드는 비용, 연구지원 기관의 요구나 규칙 등을 준수하여 보관, 폐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데이터의 분석 및 해석에서 객관성과 정직성을 유지해야 함
-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이익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고 데이터의 진실성 확보 및 학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소유자 이외의 연구자들과 공유하고 활용해야 함

3. 연구결과 보고 및 확산 단계

- 저자는 연구계획부터 연구결과 발표까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유의미한 지적 기여를 한 연구자임
- 연구가 개시되기 전 연구진이 충분히 협의하여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저자 순서를 결정하여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결과물, 저자,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부정행위 가능성 여부를 점검하고 연구의 학문적, 사회적, 윤리적 영향 및 악용 가능성 등에 대해 점검해야 함

※ 연구진실성과 관련하여 위조·변조·표절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포함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할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을 참고

참고할만한 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202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 이효빈, 조진호, 엄창섭, 이인재.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 첫걸음, 한국연구재단 (2019) p26-49



참고

〈연구진실성 관련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 예시〉⁵⁾

- 위조, 변조, 표절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 등에서 연구진실성을 위반한 연구부정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 연구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결과 발표 전 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분	번호	내용	예	아니오
위조	1	연구수행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한 사실이 없는가?		
변조	2	연구수행 과정에서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임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형, 삭제, 왜곡하여 기록한 사실이 없는가?		
표절	3	이미 발표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연구성과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였는가?		
	4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개념, 용어, 문장, 표현, 그림, 표, 사진, 영상, 데이터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였는가?		
	5	타인의 연구성과물을 그대로 쓰지 않고 풀어쓰기(paraphrasing) 또는 요약(summarizing)을 하면서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였는가?		
	6	외국어 논문이나 저서를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였는가?		
	7	2차 문헌을 활용하면서 재인용 표기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해서만 출처를 표기한 적이 없는가?		
	8	출처 표기를 제대로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해당 학문 분야에서 인정하는 범위 이내 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9	타인의 저작물을 여러 번 인용한 경우 모든 인용 부분들에 대해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였는가?		
	10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할 경우, 적절한 인용 표기를 했는가?		
부당한 저자표기	11	연구에 지적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였는가?		
	12	연구에 지적 기여를 하지 않은 연구자에게는 저자의 자격을 제외하였는가?		
	13	저자들의 표기 순서와 연구 기여도가 일치하는가?		
부당한 중복게재	14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적절한 출처 표기를 하였는가?		
	15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여러 번 활용하면서 모든 인용 부분들에 대해 정확하게 출처 표기를 하였는가?		
	16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 표기를 제대로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해당 학문 분야에서 인정하는 범위 이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5) 이효빈, 조진호, 엄창섭, 이인재.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 첫걸음, 한국연구재단 (2019) p12-13

제3절 연구진실성 보호·관리 체계

1.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환경 조성

 연구자의 책임있는 연구수행*은 기관의 연구문화에 의해 강화되고 뒷받침되므로,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진실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연구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함

* 책임있는 연구수행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며, 연구윤리의 준수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등을 포함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진실성의 기본 원칙 등 표준 규범을 제시하여야 함
- 연구자가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수행과 관련된 법, 규정, 지침, 정책을 확인하고, 그에 부합하는 절차 및 체계를 갖추고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연구계획 단계에서는 연구비 신청 등과 관련한 행정지원, 연구 진행 단계에서는 연구비 집행 관리 및 지도, 연구결과 보고 및 확산단계에서는 연구부정행위 유혹을 줄일 수 있는 평가제도 수립 등을 지원하여 소속 연구자가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가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행위규범 등 사회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함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규정사례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명시〉

부산대학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4조(대학의 의무) ②대학은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구수행에서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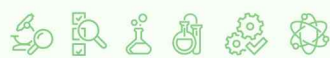
-  연구자의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진실성 보호, 관리 등에 관한 담당인력 또는 조직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책임 있는 연구수행에 관련한 정책, 법규, 지침 등에 부합되는 연구진실성 및 연구윤리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함
 - 연구기관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진실성 보호·관리, 교육·훈련 제도의 수립 등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관의 여건 및 정책에 따라, 기존에 설치·운영중인 관련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에서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 또는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관련 법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③ 대학등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④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연구자료·데이터, 연구노트 등의 소유, 관리 등의 책임, 보존 및 폐기, 보안, 공개 등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함
- 연구자료·데이터 등의 저장, 보유, 폐기 등은 연구 분야별 특성에 따라 확립된 기준 등을 따르고, 정보보호, 저작권, 라이선싱 등은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연구 보안 및 기밀 보호 등과 관련하여 데이터 사용에 관한 보안서약 및 제한사항 등을 명확히 숙지하도록 함
 - 연구데이터 저장, 보호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 및 네트워크 등 안정적인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함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제3장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III

제3장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21
제1절 개요	23
1 학문교류의 개념	23
2 학문교류 관련 길잡이의 목적	23
제2절 학문교류의 기본원칙	23
1 연구결과 발표의 기본원칙	23
2 저자표시 및 기여자	25
3 저자의 소속기관 표시	29
4 특수관계인의 저자표시	30
5 논문 투고 시 이해충돌의 공개	32
6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33
7 건전한 학술활동	34
제3절 정보의 보호	39
1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39
2 국제교류에서 정보의 보호	42
3 해외 주요국의 연구보안 관련 사례	44

III

제3장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제1절 개요

1. 학문교류의 개념

- ☞ 학문교류는 연구자 개인, 연구기관, 학술단체의 학문적, 과학적, 기술적 발전을 위해 다른 연구자, 연구기관, 학술단체, 일반인 및 연구 최종 소비자 등과 소통하는 것임
- 학문교류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학술대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 출판하는 행위, 책을 출판하는 행위와 같이 전통적인 학술활동을 포함함
 - 그러나, 현재는 인터넷이나 매스미디어 등 비전통적인 매체를 통해 연구결과를 알리는 경우가 늘면서 연구결과를 알리는 방식과 매체와 관계없이 연구자,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할 수 있음

2. 학문교류 관련 길잡이의 목적

- ☞ 연구자가 학문교류 시 또는 연구결과 발표 시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예시 등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학문교류 문화 정착을 위하여 학문공동체가 스스로 연구윤리 확립 기반 조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함
- 학문교류는 연구 발표 및 확산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길잡이에서는 연구자들이 결과발표 시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권고사항을 포함함

제2절 학문교류의 기본원칙

1. 연구결과 발표의 기본원칙

- ☞ 연구는 연구설계 단계, 연구수행 단계를 거쳐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연구 발표 및 확산 단계로 구분되며, 학문교류는 일반적으로 가장 마지막 단계인 연구 발표 및 확산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짐.
- ☞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는 연구활동 실천을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전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참고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7343호)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87호)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표절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는 자신의 이전 연구개발자료 또는 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사용하는 “자기표절”까지 포함하여 표절로 정의함

- 특히,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성과를 사용할 경우 또는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인용할 경우 표절과 중복게재의 논란이 없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

〈표절과 중복게재〉

- 표절이란 타인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출처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의미
- 적절한 인용 표시를 했더라도 그 양과 질이 해당 학문 분야에서 인정하는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면 그 또한 표절에 해당함
- 자신의 선행연구 결과를 후속연구에 활용할 때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전 저작물의 내용 일부를 바꾸거나 새로운 연구를 첨가해도 이전 연구와 질적 차이가 없다면 유사한 저작물로 보며 이를 ‘부당한 중복게재’*라 함

* 중복게재를 판단하는 기준은 학문 분야나 학술지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이전에 발표 내지 게재되지 않은 최초의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는 학술지의 출판 규정을 고려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도 일반적인 중복게재의 판단 기준은 이미 게재된 내용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것임⁶⁾

-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3호에는 표절의 정의를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라고 하여 자신의 이전 연구 성과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가져와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정의함

규정사례

〈연구결과 발표에 있어서의 원칙 명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5조(원칙)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함으로써 학문적 진실성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1. 자신의 연구결과를 보고·발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2.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본 연구윤리지침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3. 연구결과를 대중매체에 과장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책임 있게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을 갖고 있으며, 지원사항은 연구업적 관리, 연구 저자 정보 관리, 이해 충돌 관리, 연구윤리교육 등을 포함할 수 있음

관련 법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263호)

제6조(대학의 역할과 책임) ⑦ 대학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규정사례

〈연구결과물 관리에 있어 대학의 역할과 책임 명시〉

서울과학기술대 연구윤리규정 제5조(대학의 역할과 책임) ⑤ 총장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저자표시 및 기여자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연구 활동에 충분한 기여*를 한 연구자는 저자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저자는 연구의 특정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함⁶⁾

* 저자는 연구 계획, 연구 컨셉 제공, 연구를 위한 실험 디자인(통계, 비임상 또는 임상실험 포함), 연구수행에 의한 결과 도출, 연구의 유효성 검증, 데이터분석, 논문초고작성, 논문 수정본 작성 등의 임무를 수행함

 저자 선정 시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저자(부당한 저자) 유형을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부당한 저자에는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서로 이름을 올려주는 상호지원저자, 연구자가 자신의 성과를 부풀리거나 상대방에게 보답하기 위해 저자로 이름을 올려주는 선물저자, 높은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올리라고 강요하는 강요저자, 연구를 수행하고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유령저자 등이 있음

6)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동문사 (2015) p271

7)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PRACTICE (1999) 에서 일부 발췌

- ☞ 만약 저자로서의 권리를 지닌 연구자가 소속 기관을 옮기거나 일신상의 이유로 더 이상 연구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해당 연구자의 연구를 연구결과물로 활용할 때에는 저자로 이름을 올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연구결과에서 제외시켜야 함

📖 관련 법령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제1항제1호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263호) 제12조 제1항제4호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규정사례

〈저자의 자격 관련 연구윤리규정〉

고려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12조(저자결정 기준) ①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의 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의 착상 및 설계
2. 데이터 수집 및 해석
3. 초고 작성
4. 최종 원고의 승인 등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10조(저자표시) ②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현저하게 기여한 연구자들을 반드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부산대학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저자의 자격과 의무) ① 저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에 기여한 자
2.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에 기여한 자
3.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하여 승인한 자

〈부당한 저자 표시 관련 연구윤리 규정〉

고려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12조(저자결정 기준)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10조(저자표시) ⑤ 연구의 계획, 수행, 개념정립,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연구책임자 또는 교수는 소속 연구원 또는 지도학생에 대하여 기여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저자 자격 또는 순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4조제4호(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 결과 또는 내용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의 각 목에 위배되면 원칙적으로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되나, 그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학문분야의 특성과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저자의 자격과 순서는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저자 순서를 정할 때는 연구 시작 전 모든 저자들이 충분히 합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록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추후 연구결과 발표 시 학문분야와 학술지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전에 합의했던 사항을 확인하여 저자 순서에 모든 연구자가 최종 합의해야 함

* COPE⁸⁾에서는 보편타당하게 동의 된 저자의 정의는 없기 때문에 저자 자격과 순서에 대한 논의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재논의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음



참고

〈학문 분야에 따른 일반적 저자 규정에 대한 미국 사례〉

학문분야	관련 학회/기관	세부내용
자연과학분야	미국국립과학원회보	저자권(Authorship) 또는 저자 자격은 연구 작업물에 대해 충분한 기여를 한 연구자들에게만 주어져야 함, 저자는 자신들의 연구 공헌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미국화학회	저자들은 연구 결과에 대해 책임을 공유하는 사람들임
	미국국립한림원	저자란 논문 성과에 대해 인정을 받는 동시에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을 뜻함. 따라서, 논문의 각주나 본문이 논문의 특정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다른 저자에게 할당하지 않는 한, 논문에 이름이 나타나는 저자들은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함
수학, 이론 전산학 및 고에너지물리학	미국수학회	수학 분야의 경우, 저자들은 보통 알파벳 순서로 나열됨(하디-리틀우드 법칙, Hardy-Littlewood Rule). 이러한 방식은 미국 수학회 홈페이지, 특히 2004년 공동 연구 및 간행물의 “수학의 학문 및 연구에 관한 정보문” 단락에 명시되어 있음 ⁹⁾ . 경제학, 비즈니스, 재무학 및 입자 물리학과 같은 학문분야의 경우에도 저자를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일반적임
사회학	미국사회학회	(1) 사회학자들은 그들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작업물에 대해서만 저자 자격을 포함한 책임 및 인정을 받음; (2) 사회학자들은 직책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연구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공헌도에 의해서만 주저자 자격 및 출판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저자 순서를 정할 때는 연구 및 출판 과정에서의 공헌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정해야 함; (3) 다수의 저자가 있는 출판물에서 주저자로 표기된 학생의 경우, 그 출판물은 주로 그 학생의 학위 논문에서 유래된 경우가 많음
사회과학	미국심리학회	저자 자격에 있어서 의학분야와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원고를 작성한 연구자만이 아니라, 연구를 위한 문제 및 가설 제시, 실험 디자인 설계, 통계 분석, 결과 해석, 논문의 주요 내용 작성 등 연구에 중대한 기여를 한 연구자들을 모두 저자에 포함해야 함

8)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는 비영리기관으로 편집인 및 출판사에 연구·출판 윤리 및 진실성에 대한 조언을 통해 출판문화 향상을 미션으로 하는 기관

9)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The Culture of Research and Scholarship in Mathematics: Joint Research and Its Publication (2004)

규정사례

〈저자표시 순서 관련 연구윤리규정〉

고려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13조(저자표시 순서결정) ①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10조(저자표시) ③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의 표시 순서는 참여한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연구의 기여도 및 해당 전공분야의 특성과 합리적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부산대학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3조(저자표시 순서결정) ①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②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학술논문에서 저자는 일반적으로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나뉘게 되며, 학문분야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저자는 통상 연구에 주된 지적 또는 학문적 기여를 한 자로서 가장 크게 이바지한 사람에게 부여함. 교신저자는 논문 출판 전 과정에서 저자, 학술지, 독자와 소통하는 자로, 연구과정, 연구보고서 및 논문 작성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며, 전체적인 연구작업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

규정사례

〈교신저자의 역할 및 책임 관련 연구윤리규정〉

고려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10조(저자의 책임과 의무) ①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고려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11조(교신저자) ①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② 교신저자는 저자 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저자 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지만, 연구수행 시 직·간접적 도움을 준 사람이나 단체인 기여자*에 대해서는 사사표기를 통해 그 이름과 역할을 명시함. 단, 저자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연구자를 저자가 아닌 기여자로 이름을 올려서는 안 됨

* 연구비를 지원해 준 자 또는 단체, 행정적인 도움을 준 자 또는 단체, 연구자료를 제공한 자 또는 단체, 멘토링을 제공해 준 자 등을 의미함



참고

〈저자가 아닌 기여자의 종류〉¹⁰⁾

구분	역할
행정지원	연구비 획득에 도움을 준 인물 또는 기관
	IRB, IACUC 심의 승인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 인물 또는 기관
기술지원	연구자료, 연구장비, 연구대상 및 자원 획득과 관리에 도움을 준 인물 또는 기관
	단순 실험이나 분석 업무를 수행한 인물 또는 기관
	시약, 실험동물 등 연구자원을 제공한 인물 또는 기관
멘토링	원고를 읽고 퇴고와 조언을 제공한 인물 또는 기관
재정지원	연구비를 제공한 인물 또는 기관

규정사례

〈Nature의 사사표기〉¹¹⁾

“사사표기는 간결하게 하되 익명의 심사자나 편집인을 포함하지 않으며, 불필요하거나 과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중략) 사사표기에 연구비 지원번호나 기여자 번호를 포함할 수 있다.”

“Acknowledgements should be brief, and should not include thanks to anonymous referees and editors, inessential words, or effusive comments. A person can be thanked for assistance, not “excellent” assistance, or for comments, not “insightful” comments, for example. Acknowledgements can contain grant and contribution numbers.”

3. 저자의 소속기관 표시

 연구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기관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연구를 발표하는 해당 분야에 관행이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으며 논문 게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속 기관을 선택하여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참고

〈저자의 소속기관 표기〉¹²⁾

저자의 소속기관은 연구결과를 기관이 소유한다는 것과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진실성에 대하여 기관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학술지는 모든 저자의 소속기관을 표시할 것을 권장함

- 소속기관은 연구자가 실제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연구자가 실제로 여러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한 경우, 연구를 수행한 모든 기관을 소속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음
-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 연구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나 학생이 소속된 교육기관의 경우는 연구를 수행한 기관의 허락을 받아 공동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별도의 장소에 “현재 소속기관”으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함

규정사례

〈저자 소속 표시 관련 연구윤리규정〉

고려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14조(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10조(저자표시) ④ 연구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공분야에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10) 이호빈, 조진호, 엄창섭, 이인재.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 첫걸음, 한국연구재단 (2019) p44

11) “Formatting guide”, Nature, (2021.11.25. 접속), <https://www.nature.com/nature/for-authors/formatting-guide>

12) 이호빈, 현명호. 과학기술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한국연구재단 (2020) p.19

4. 특수관계인의 저자표시

 2018년에 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제5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에 제9호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를 추가하여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특수관계인*의 저자표시 시 특히 유의해야 함을 의미

* 한국연구재단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는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에서는 특수관계인을 미성년자(만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최소한의 설정으로 연구개발기관의 사정에 맞게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¹³⁾

관련 법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263호)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①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대학등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대학등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⑤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대학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⑦ 대학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⑧ 대학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 한국연구재단,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20.04.10)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는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구결과 발표 시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기여 없이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특수관계인과의 공저 논문 발표를 계획하고 있을 경우, 공저 논문 발표 전에 소속 기관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 연구부정 논란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가 특수관계인을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체 지침(또는 기준 및 서식)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참고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가족 등) 관련 권고사항¹⁴⁾〉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 연구 시작 전: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소속기관 및 공동 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 연구 수행 중: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 연구노트 기록 및 보관은 연구자 소속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는 과학기술부가 제정한 '연구노트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2022.1.1. 일부개정]을 참고
 - 공저 논문 발표 전: 소속 기관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대학 등 연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 소속 연구자가 특수관계인을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자체 지침(또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연구 시작 전: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요 확인 사항(예시): 특수관계인의 활동계획, 이해상충 문제, 연구실 안전 등
 - 연구 수행 중: 특수관계인이 연구 참여를 통해 작성한 연구노트, 연구실 출입기록 등을 소속 연구자가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공저 논문 관리: 소속 연구자와 특수관계인 간의 공저 논문들에 대한 서지사항과 논문 원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14) 한국연구재단,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판), (2020.04.10.) 일부 수정

5. 논문 투고 시 이해충돌의 공개

 이해충돌에는 금전적·비금전적 이해충돌이 있으며, 이해충돌은 출판물의 객관성, 무결성 및 가치를 훼손하거나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구결과 발표 시에 연구자는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함

- Nature지는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유형을 재정적* 이해충돌과 비재정적** 이해충돌로 구분하고, 논문 투고 시 교신저자에게 논문의 모든 저자에 대한 잠재적 이해충돌에 대한 진술서(disclosure)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재정적 이해충돌에는 자금조달(funding), 고용(employment), 개인의 재정적 이익(personal financial interests) 등을 포함

** 비재정적 이해충돌은 조직 및 개인과의 개인적 또는 직업적 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비정부 조직의 회원, 로비 단체의 회원, 기업의 무보수 자문 직위 등이 포함



참고

〈Nature지의 이해충돌 고지 관련 정책〉¹⁵⁾

- 2001년부터 Nature지는 기본 연구 논문에 대해 저자의 재정적 이해충돌 관리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2003년부터 리뷰 및 뉴스, 도서 리뷰 등 기타 유형의 외부 저작 자료에 대해서도 재정적 이해충돌 관리 정책을 확장·적용함
- 2018년 1월부터 연구 기사, 리뷰, 논평 및 연구 분석에 대하여 비재정적 이해충돌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Disclosure of Potential Competing Interest



Journal Name:

Manuscript Number:

Manuscript Title:

Corresponding Author(s):

In the interests of transparency and to help readers form their own judgements of potential bias, *Nature Research* journals require authors to declare any competing financial and/or non-financial interests in relation to the work described in the submitted manuscript. The corresponding author is responsible for submitting a competing financial interests statement on behalf of all authors of the paper.

Financial competing interests

No, I declare the authors have no competing interests as defined by Nature Research, or other interests that might be perceived to influence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

Yes, I declare the authors have competing interests as defined by Nature Research, or other interests that might be perceived to influence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

If yes, please specify your competing interests in the box below, followed by the initials of the relevant author(s).

¹⁵⁾ "Competing interests", Nature portfolio (2021.12.13. 접속), <https://www.nature.com/nature-portfolio/editorial-policies/competing-interests>

6.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에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나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에 관해 책임성 있게 발언하고 독립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¹⁶⁾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결과가 발표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전 연구결과가 인류, 사회, 국가 안보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발표하여야 함

- 특히, 초기의 미완성된 연구나 요약된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연구의 잘못된 해석이나 적용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악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발표 결과가 전문가 공동체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사실 확인과 분석을 기반으로 신뢰성 있는 결과를 발표해야 함

또한, 연구개발성과는 공공재로서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인류의 이익과 복지, 인권 등 글로벌 웰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결과를 적용해야 하는 책임을 인식¹⁷⁾해야 함



참고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¹⁸⁾

- 연구자는 연구 활동 및 결과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연구수행 과정에서 전문성, 안정성, 공공성을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함.

구분	내용
전문성	과학연구는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인들이 연구자들의 전문성을 믿고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함
안정성	연구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활용에 있어 안전해야 할 뿐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 환경 보전에 기여해야 함
공공성	연구비는 공공부문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개인이 연구를 수행하더라도 그 과정이나 결과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함

규정사례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명시〉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6조(연구결과와 사회적 기여)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서울대학교의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연구가 장기적으로 인류문화사회에 영향을 미침을 깊이 인식한다.

16) 송성수, 연구윤리의 이해: 쟁점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통권 157호 (2006), p.1-12

17) 제9회 세계과학포럼의 '과학, 윤리 및 책임에 관한 선언' (2019)

18) 이효빈, 조진호, 엄창섭, 이인재.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 첫걸음, 한국연구재단 (2019), p.16

7. 건전한 학술활동

-  연구자는 출판윤리를 어기는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부실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등 부실학문교류 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학문교류 전 투고할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의 성격이나 유형을 충분히 인지해야 함

〈부실학술지/부실학술대회의 특징〉¹⁹⁾

구분	특징	세부내용
부실학술지	동료심사	동료심사가 간소하거나 형식적이지는 않은지, 게재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살핀 후 논문 원고를 보냄
	공격적 마케팅	이메일을 통해 논문 게재를 독려한다면 부실학술지일 가능성이 높음
	비용청구 방식	정확한 논문심사료나 출판비용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지 않음
	불투명한 운영진 정보	운영진의 이름, 소속, 지위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거짓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부실학술대회	동료심사	일반학회의 경우 동료심사를 거치는 반면 부실학회의 경우 동료심사 없이 모든 논문이나 초록을 수락함
	공격적 마케팅	저명한 학자들이 참석한다고 선전하거나, 학회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해준다고 선전하거나, 학회 참여를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면 참여를 제고함
	불투명한 운영진	신분과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인물 또는 운영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기관이 메일을 통해 논문 게재를 독려한다면 부실학술지일 가능성이 높음
	다양한 학문분야	일반학회의 경우 특정 학문 분야에 대한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반면 부실학회는 광범위한 학문 분야에 걸쳐 초록과 논문을 수락함



참고

〈부실학문교류 활동〉

- 부실학문교류 활동에는 부실의심(악탈적) 학술지(predatory journal) 논문게재와 부실학술대회(fake conference) 참석이 있음
- 부실학문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학자는 순진한(naive) 기여자, 묵인적(cognizant) 기여자, 거짓 학자(pseudo-scientist)로 구분할 수 있음. 묵인적 기여자와 거짓 학자들은 허위학문교류 활동의 공범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순진한 기여자의 경우는 자신의 값진 연구성과를 망칠 뿐만 아니라 징계까지 받게 되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연구자는 물론 부실학술지의 편집위원이나 심사자로 활동을 하는 것도 학문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마찬가지로 부실학술대회도 참석하는 연구자는 물론 부실학술대회를 조직 또는 주관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활동 또는 주제강연을 하는 것도 학문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함

19) 이호빈, 조진호, 엄창섭, 이인재.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 첫걸음, 한국연구재단 (2019), p.52-5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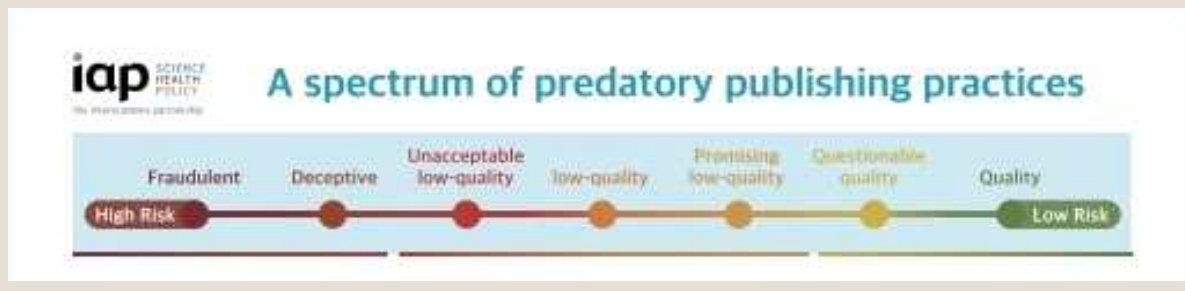
〈부실의심 학술지의 특징과 주의사항〉²⁰⁾

- 부실의심 학술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학술 발전과 지식 진보를 위해 모범적으로 동료심사를 실시하는 학술지와 달리 상업적 이익추구 때문에 동료심사를 부실하게 실시하는 학술지를 부실의심 또는 약탈적 학술지라 부르고 있음
- 국제한림원연합회는 1. 학술출판의 상업화, 2. 정량적 연구업적 평가, 3. 부실한 동료심사 등을 약탈적 학술활동을 유발하는 3대 요인으로 꼽고 있음
- 부실의심 혹은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연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임
- 또한, 국제한림원연합회에 따르면 약탈적 학술지는 좋은 연구를 사장시키거나 빈약한 연구를 확산시킴으로써 학술 생태계를 망가지게 함.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실의심(약탈적) 학술지는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유통함으로써 잠재적으로는 “새로운 지식의 손실”, “연구 시간과 자원의 낭비”, “연구결과와 왜곡과 가치 저하”, “연구결과를 활용한 증거기반 공공정책의 훼손”을 초래함.
- 부실의심 학술지의 특징은 매우 다양하나, 국제한림원연합회는 주요 특징으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음. 또, 국제한림원 연합회는 부실의심 학술지의 약탈적 사기 행위가 계속 진화하고 있어, 부실의심 학술지와 일반적 학술지 간의 구분이나 경계가 점점 어려워지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부실의심(약탈적) 학술지의 5대 특징〉

구분	내 용
첫째	엄격한 동료심사 없이 유료로 신속하게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둘째	저명한 과학자가 해당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것처럼 가장한다.
셋째	사기성 학술지 영향력 지수(IF) 등을 활용한다.
넷째	학술지 타이틀이 정통적인 학술지와 유사하다.
다섯째	해당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부추기는 이메일을 적극적으로 발송한다.

- 국제한림원연합회는 부실의심 학술지를 위험 정도에 따라 고위험에서 저위험까지 6개 등급으로 구분하면서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20) Inter-academy partnership (IAP) (2022), Combating predatory journals and conferences

- 첫 번째 등급은 사기성 학술지(Fraudulent journals)임. 이들 학술지는 저명한 학술지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여 연구자를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참고로 국제한림원연합회는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출판사로 오믹스출판그룹(OMICS Publishing Group)을 지목하고 있음.
- 두 번째 등급은 기만성 학술지(Deceptive journals)임. 이들 학술지는 편집위원회의 구성을 속이거나 동료심사, 출판 비용 등을 속이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
- 세 번째 등급은 학계에서 통용하기 어려운 저품질 학술지(Unacceptable low-quality journals)임. 이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은 학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거나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논문들을 출판하는 학술지를 의미함.
- 네 번째 등급은 저품질 학술지(Low-quality journals)임. 이들 학술지는 불투명한 출판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청탁 등을 통해 논문을 출판하여 논문의 질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음
- 다섯 번째 등급은 저품질 가능성을 내포한 학술지(Well-intentioned, promising low-quality journals)임. 출판사에서 질 낮은 학술지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므로 향후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학술지를 가리킴
- 여섯 번째 등급은 의심스러운 학술지(Questionable quality journals)임. 이들 학술지는 다른 악탈적 학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는 낮지만,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학술지임. 이들 학술지는 빠른 동료심사를 약속함으로써 논문의 질이 의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전통 학술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료심사를 진행함. 참고로 국제한림원연합회는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출판사로 MDPI를 지목하고 있음.
- 부실의심 학술지는 그 위험 정도에 따라 고위험과 저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러나 위험도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부실의심 학술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연구자는 학술지 분류등급을 인지하시어 “의심스러운 출판 정책을 가지고 있거나, 동료심사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종종 질이 낮은 논문들을 출판하는 학술지들”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점검하신 후 논문을 투고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은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하기 전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절차와 규정을 갖추고, 연구자의 학문교류가 위축되지 않도록 심의 생략 가능한 학술회의 및 학술지 목록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과제를 지원받은 주관연구기관 등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 소속 연구자들이 건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에 연구논문을 발표하도록 안내하고 권장해야 한다고 권고²¹⁾

참고할만한 자료

- 한국연구재단(2023.04.), 부실의심 또는 악탈적 학술지 이용예방
- 한국연구재단(2022.09.), 부실 학술활동 예방하기
- 한국연구재단(2018.09.), 악탈적 학술지와 학회 예방 가이드
- 한국연구재단(2018.10.),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 Inter-Academy Partnership(2022) Combatting predatory journals and conferences

²¹⁾ 한국연구재단,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2018.10.01.)



참고

〈학술지 논문게재를 위한 절차(안)〉

- 연구자는 논문 투고 시 부실학술지 점검 사항을 확인하여 국외 학술지 논문 투고 여부를 결정

구 분 주 체	내 용	비 고
연구자	논문 투고 시 점검사항 확인 후 국외 학술지 논문 투고 여부 결정 ※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외 학술지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	별첨 3-1. 논문 투고 시 점검 사항 (예시)
연구자	부실학술지로 의심되는 경우,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 의심신고’에 신고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학술정보공유시스템 (http://safe.koar.kr)
기관·대학· 연구관리 전문기관	부실학술지 이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물 관리 전문기관의 적절한 조치 필요	



참고

〈부실의심 학술지 게재 예방방법〉

- 특정 학술지가 부실한 지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는 학술지에 대한 자가 점검 사이트나 툴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학술지에 대한 Black 또는 White List를 활용하는 방법임
- 학술지에 대한 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은 가장 간편한 방법이지만 국제학술단체에서 공인된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으며 리스트를 활용할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국내외 연구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자가점검 사이트(예시)〉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SAFE) 〈https://safe.koar.kr〉	개별 학술지의 SCI/SSCI, SCOPUS, DOAJ 등재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운영
Think-Check-Submit 캠페인 〈https://thinkchecksubmit.org〉	ISSN International Center 등 글로벌 학술출판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약탈적 학술지 점검운동 - Thing : 연구결과를 믿을 만한 저널에 투고하려고 하나요? - Check : 투고하기로 선택한 저널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Submit : 향후 경력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되면 투고하십시오.

〈학술지에 대한 블랙리스트(예시)〉

- 노르웨이 고등교육역량위원회 X등급(약탈적) 학술지 리스트
〈https://kanalregister.hkdir.no/publiseringskanaler/Forside〉
- Beall's List 〈https://beallslist.net/〉
- Retraction Watch Hijacked Journals Checker
〈https://retractionwatch.com/the-retraction-watch-hijacked-journal-checker/〉
- Cabells 社の Predatory Reports 〈https://www2.cabells.com〉(유료 서비스)

〈학술대회 참석을 위한 절차(안)〉

- 연구자는 학술대회 참석 시 점검 사항을 확인하여 (국외)학술대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며, (별첨 3-2. 학술대회 참석 시 점검 사항) 참석 결정을 한 경우 출장신청서(계획서)를 기관에 제출함(별첨 3-3.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신청서(예시))
- 기관에서는 연구자의 출장신청서에 대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외 학술대회 참석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연구자는 국외 출장(학회 참석) 결과(귀국) 보고서(일자별 주요 활동 내역 및 사진 등 참석 증빙자료 별첨)작성을 하며, 허위학술대회가 의심될 때는 이를 신고함

구 분 주 체	내 용	비 고
연구자	학술대회 참석 시 점검 사항 확인 후 (국외)학술대회 참석 여부 결정	별첨 3-2. 학술대회 참석 시 점검 사항
연구자 → 기관·대학	출장신청서(계획서)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제출	별첨 3-3.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신청서(예시)
기관·대학	연구자의 출장신청서에 대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외 학술대회 참석 승인	
연구자	국외 출장(학회 참석) 결과(귀국)보고서 작성 시 아래 항목 포함하여 작성 ① 일자별 주요 활동 내역 및 시사점 ② 사진 등 참석 증빙자료 별첨 부실학술대회로 의심되는 경우,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 의심신고’에 신고 * 해당 학회의 의심 사유 등을 포함하여 신고	
기관·대학 연구관리 전문기관	부실학술대회 참석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물 관리 전문기관의 적절한 조치 필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학술정보공유시스템 (http://safe.koar.kr)
		자체규정마련

또한, 공공자금을 이용한 학술활동이 공공성을 담보했는지, 연구비를 적절한 용도에 합당하게 사용했는지 등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연구자는 학문교류 업무 수행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야 하며, 연구비가 사적인 목적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

※ 학문교류의 목적으로 국외 출장 시 가족을 동반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동반 목적, 관련 비용 지출 등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구분	준수항목 (예시)
출장 신고 [별첨 3-3]	• 연구자는 출장 시 출장 목적 및 일정, 여비 등을 포함하는 출장계획을 소속기관에 신고한다. (출장형태에 따라 간소화 가능) • 공적 또는 사적인 목적으로 가족 등을 동반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사전신청내역에 포함하도록 한다. ※ 가족 등을 동반하는 경우 사유, 경비지출방식에 대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확인하여 제출 • 연구기관은 출장계획을 검토하고, 여비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여 출장을 승인한다. (출장형태에 따라 간소화 가능)
비용 관리	•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 등 타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 기준의 여비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가족 등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과의 동행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출장비에서 제외한다. ※ 가족 동반 투숙 시, 객실 크기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출장자가 부담



참고

〈가족동반 국외 출장 관련 해외대학 규정〉

- (하버드) 가족 관련 지출 경비는 지원하지 않음. 다만, 가족 동반 사항이 출장 목적에 포함되는 경우 (기금 모금 활동 등) 미국 국세청(IRS) 규정에 의거하여 출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을 지원
- (예일) 가족 및 기타 동반자에 대해서는 출장비를 사용할 수 없음. 다만, 가족 등의 동반이 출장 목적에 해당하고 예외 및 특례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하에 출장비 사용 가능
- (캠브리지) 배우자 또는 가족의 지출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다만, 가족 동반이 출장 목적에 해당*되거나 연구비 지원기관 등이 가족 관련 출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는 예외로 함. 또한 배우자/가족 동반에 관한 사항은 학과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

* 배우자가 특정 자격을 갖추어 출장자의 출장목적을 지원하는 경우 (예: 통역가로서 통역을 지원)

제3절 정보의 보호

1.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17호)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보안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6.>

1. 소속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
2.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3.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 제정·운영 방안

- 특히,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안관리 조치를 해야 함
- * ‘보안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의미함
- ※ 연구기관은 연구자의 연구결과 중 보안과제 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연구결과의 발표를 검토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

📖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17호)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 나.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
 -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제46조(보안관리 조치) 법 제21조제3항에서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 12. 6.>

1.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2.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 현황 관리
3.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
4.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5. 연구개발기관이 운영하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6. 연구개발정보 처리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7. 보안책임자 지정 <개정 2022. 12. 6.>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²²⁾

구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보안관리 체계	모든 과제	1. 이 규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 심의회 운영	○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배치	○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홍보 실시	○	

구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의 관리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6. 보안사고 예방·조치·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해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시행	○	○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4. 연구개발결과의 해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5. 연구개발 결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연구자는 국가핵심기술* 또는 보안과제에 대한 기밀 사항을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전 계약 사항과 국가핵심기술을 누설할 가능성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함

*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뜻하며,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됨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라고 하더라도 연구 결과의 최종 소유는 소속기관에 있으므로 소속기관에서 제한하는 보안, 안보,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연구자료는 기관의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됨

규정사례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명시〉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16조(직무와 관련된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교수 또는 연구원이 본교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연구의 결과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소유이므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7조 (연구 결과물의 소유권) ① 학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의 결과 및 지적재산권은 본교의 소유이므로 본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2. 국제교류에서 정보의 보호

- ☞ 해외로의 과학기술 정보 유출 증가와 국가 핵심 지적자산을 이전하여 처벌받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국제적 학문교류를 할 경우 의도치 않은 위법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주의가 필요함
- ☞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할 경우 「산업기술보호지침」 제17조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세미나·학술발표 시*에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출승인을 받아야 함
 - * 세미나가 공개된 형태로 진행되거나 발표내용이 공개된 내용을 다루는 경우는 예외
 - ※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경우(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출신고
 - 연구자는 해외연구자 및 해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연구결과 발표, 자문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산업기술보호지침」에 따른 절차 및 세부 조치사항 등을 따라야 함

☞ 관련 법령

「산업기술보호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2호)

제17조(수출승인 신청 대상)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외국기업 등에 매각, 이전 등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등에 국가핵심기술 매각
2. 외국기업 등에 자료전송, 양도, 기술지도, 위탁연구, 위탁생산, 인력의 장기파견 등을 통한 국가핵심기술의 이전
3. 외국기관 등에 실질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의 이전·공유를 위해 진행되는 세미나, 강의, 학술발표 등 특정기관과 기술 협력이나 정보 교류
4. 국가핵심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공유되는 외국기업 등과의 연구 및 공동연구 참여(외국기업 등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 수행하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를 포함)
5.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을 허락하면서 관련 영업비밀 등 비공개 기술의 동반 이전
6.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등 양수인 또는 실시권자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배타적 지배권의 이전
7. 외국 정부 및 기관 등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설계·제조상의 결함 및 타당성 분석, 신뢰성 검증 등을 위한 연구용역 자료 제공
8. 외국 정부 및 기관 등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해외 인증, 인·허가를 위한 기술자료 제공
9. 외국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등 제소, 소송 대응을 위한 국가핵심기술 자료 제공
10. 클라우드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저장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외국기업 등의 접근권한 부여·열람·사용 등의 허용
11. 기존 수출승인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은 해외 법인이 신축 사업장(공장)으로의 기술 재이전
12. 위 1호에서 11호 외의 다른방법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행위

제25조(수출승인 신청·신고 대상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 및 수출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일반에 공개된 기술이나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세미나, 학회 발표, 강의 등에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기술
 - 가. 책, 정기간행물 등 인쇄물의 형태 또는 홈페이지 등 전자적 형태 등을 통해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

- 나. 견학, 강의, 전시회 등 일반에 공개된 장소에서 구두 또는 행위를 통해 이전되는 기술
 - 다. 학회 발표자료 또는 전시회 배포자료 등의 송부, 정기간행물예의 기고 등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전되는 기술
 - 라.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램
2. 국내기업의 연구인력, 대학 교수 등이 외국 기업 및 기관과 수행하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이 없는 연구의 참여 또는 실질적인 국가핵심기술 이전이 없는 연구 참여
 3. 해외 특허출원을 위한 출원명세서, 보충자료(거절이유를 통보받은 경우 의견서를 포함) 등 특허권의 출원 또는 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의 제공

-  또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에 외국인 연구자가 참여할 경우 보안교육과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안사항이나 민감한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  기관은 소속 연구자가 해외연구자 또는 해외연구기관과 보안과제나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자 할 때 이를 검토 및 승인하여 발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규정사례

〈국제교류 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규정 예시〉²³⁾

제O조(국제 공동연구 수행관리)

- ① 해외 연구기관이 상호 업무협조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핵심기술 관련 과제 또는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연구진행과정에서 해외기관에 제공되는 연구자료 및 산출물 등에 대해 소속기관의 검토와 승인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O조(연구정보 국외유출 방지)

- ① 연구기관은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에 규정된 사항과 “산업기술보호법” 등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연구기관의 소속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외국인 등 접촉 시 특이사항” 등을 각 소속기관의 연구보안담당부서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한다.
 1. 외국인 등 접촉 시 특이사항(국가기밀 및 국가안보·국익관련 정보 탐지 수집, 연구기밀 유출 또는 유출 기도사실 인지 등)
 2. 외국정보기관원 사적 접촉 시
 3. 외국정보기관과의 국제협력 시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국제교류활동 시 유의사항 안내 (2021.2.26.), 별첨 2. 과학기술 국제교류활동 연구기관 참고용 자가진단사항

3. 해외 주요국의 연구보안 관련 사례

1) 개요

-  A국 3개 대학 학칙 개정으로 학문자율성 제한과 연구성과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후 미국이 A국 7개 대학에 대해 제재하는 등 연구안보에 대한 주요국의 관심이 고조
-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은 연구기관·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보안 체크리스트를 마련·배포
 - 국가마다 차이점은 있으나, 공통적으로 외부의 금전적·비금전적 지원에 대한 소속기관 보고체계, 이해 또는 역할상충 관련 정보의 관리, 연구성과에 대한 소유권 배분, 물리적 보안 및 정보보안 등을 다룸

2) 주요배경

-  A국 3개 대학 학칙 개정²⁴⁾과 A국 7개 대학²⁵⁾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
 - A국 공산당은 3개 대학 학칙을 개정하여, 국방력 강화를 위해 대학과 군대의 결속을 강화하고 공산당 영도 및 특정 사상을 강조하며, 학문적 독립에 대한 당의 개입을 확대('19.12.)
 - 미 트럼프 행정부는 A국 7개 대학 연구원·대학원생의 미국 입국 금지 조치에 서명하였고('20.5.), 미 후버 연구소는 7개 대학이 연구자산 탈취 경로임을 지적('21.5.)
 - * 자료: 선인경 외(2022), 글로벌 연구생태계에서의 안보와 자율성 충돌. STEPI 보고서.
-  A국 대학교들의 학칙 개정에 대한 OECD 우려 표명
 - OECD 소속 전문가들은 학문적 독립을 저해하는 학칙 개정에 대하여 해당 대학 및 해외 파트너 기관의 연구자율성 침해와 연구성과 탈취·검열 우려* ('22.12.)
 - * Expert Group Meetings on "Integrity and security in the global research ecosystem"; 선인경 외(2022) 재인용



참고

〈A국 B대학 학칙 개정 내용 ('19.12.)〉

구분	내용
서문	(수정) “사상의 자유” → “애국봉헌”
	(신규) “공산당의 영도 하에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공산당의 치국이정을 위해 복무한다”
제4조	(수정) “교수와 학생의 자치, 민주관리” → “공산당 B대학위원회 영도 하의 학장 책임제”
제9조	(신규) “A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교직원과 학생의 두뇌를 무장한다”

24) Reuter (2019) “Change to Chinese university's charter dropping 'freedom of thought' stirs debate” (<https://www.reuters.com/article/us-china-university-idUSKBN1YM1A3>)

25) VOA (2020) “US Ban on Chinese Students With Military Links Divides Experts on Impact” (<https://www.voanews.com/a/usa-us-ban-chinese-students-military-links-divides-experts-impact/6190553.html>)

3) 주요사례

① 미국 NSF의 원천연구 안보 위험성 진단 도구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은 「원천연구 안보에 관한 JASON* 보고서」를 발간('19.12.)

- NSF 설립 70주년을 맞아 미국 원천 연구의 안보 이슈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정책제안 도출
 - 위험성 진단 도구를 제시하여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조직이 외국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전에 잠재적 위험요인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
 - 국가안보 및 국가경쟁력 관련성과 외국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대한 연구기관 보고 의무 강조
- * 주로 국방 문제에 대해 정부에 조언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과학자 자문 패널



참고

〈「원천연구 안보에 관한 JASON 보고서」의 위험성 진단 도구 주요 내용〉

연구책임자(PI)	연구기관·조직
• 계약·협약 내용 등의 내용과 조건이 명확한가? • 모든 참여자들의 이해충돌과 역할상충 관련 모든 정보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 불필요하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특이한 계약의 내용이 있는가? • 협약·계약에 따른 활동 수행을 위한 자금 및 비금전적 지원의 출처는 어디인가? 명확한가? • 참여자가 해당 계약·협약을 마치고자 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협약·계약 내용에 따라 연구자 등은 소속 기관 외의 공간에서 연구를 하여야 하는가? • 소속기관·조직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 미국의 국가안보, 정치, 사회, 인간적 권리에 해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 미국의 국가 경쟁력에 위협이 되거나 수출통제 정책에 위배되지는 않는가? • 지적재산 관련 위험요인은 무엇인가? • 데이터 공개, 학술지 게재 및 발표 등과 관련한 지침이 명확한가? • 조기 종료(중단)에 따른 위험은 무엇인가? • 계약·협약 내용이 잘못 해석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 • 기관 자체의 핵심 가치에 위배될 위험이 있는가? • 기관이 해당 계약·협약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위험(손실)은 무엇인가?

 NSF는 연구안보 전담 조직인 「연구안보전략정책실(CRSSP)*」 신설('20.3.)

- 연구안보전략정책실은 JASON 보고서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신설되어,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안보 정책 실무**를 관장하는 핵심 역할 수행
- 특히 NSF는 「반도체와 과학법」('22.7.)에 따라 인공지능, 양자정보과학, 바이오 등 10대 핵심기술영역을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보안 중요성 증대

* Chief of Research Security Strategy and Policy

** CRSSP 실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산하 연구안보분과위원회 공동의장

② 일본 문부과학성의 연구진실성 체크리스트

 일본 문부과학성「연구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위험 대응을 위한 체크리스트」공표('21.12.)

- 외국기관·대학 등과의 교류,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에 따른 위험 요인과 정보공개 의무 등에 대해 연구자가 스스로 인식하고 대응하도록 지원
- 계약절차, 연구과정 및 성과활용 단계에서 위험 우려 시 적극적인 상담 및 보고 강조



참고

〈「연구의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위험* 대응을 위한 체크리스트」 주요 내용〉

* 해외 공동연구 또는 교류 시 이해충돌·역할상충, 기술유출·정보유출, 신뢰 저하 위험 등

대학·연구기관용	연구자용
① 전반적인 사항	
• 여러 '위험'에 대해 적절한 대응체계가 있는가? • 연구자·직원이 '위험' 우려 시 상담 창구가 있는가? • 연구자·직원을 대상으로 '위험' 교육이 있는가?	• '위험' 우려 시 소속기관 담당부서와 상담이 이루어지는가? • 연구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력·이력 등 관련 정보가 담당부서에 보고되고 있는가?
② 절차에 관한 사항(외국의 기관·대학 등과 제휴·계약을 맺거나 외국 지원을 받는 경우)	
(계약절차) • 외국기관과 계약 체결 시 적절한 검토절차를 거치는가? • 서면계약 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는가? • 제휴·계약한 참여자 정보를 요구하는가? (보고·인식) • 장기간 제휴·계약 시 상대 기관 및 연구자, 공동연구 내용 변화에 대한 보고 체계가 있는가? • 외국 기관으로부터 지원 시 보고받는 체계가 있는가? • 장기간 출장 내용 파악 체계가 있는가? • 연구성과의 목적 외 사용 등 위험요인을 교육하는가? • 외국 기관과의 제휴·지원이 없는 경우에도 '위험' 인지를 위한 교육이 시행되는가?	(계약절차) • 외국기관과 계약 체결 시 적절한 검토를 거쳤는가? • 위험성을 사전 검토하여 기술정보를 관리하는가? (상담창구) • 지원에 따른 위험 우려 시 상담을 요청하는가? • 제휴·계약으로 인한 위험 우려 시 상담을 요청하는가? • 국외 출장으로 위험 우려 시 상담 등을 요청하는가? (보고·인식) • 외국 기관의 지원내용과 교류·협력 변경사항을 소속 기관에 보고하는가? • 외국 기관과의 제휴·지원이 없는 경우에도 '위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는가?
③ 상대방(연구자·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외국의 기관·대학 등과 제휴·협약을 맺을 경우)	
• 소속 연구자·직원이 외국 기관 등과 협력 시 상대 기관 및 참여 연구원 정보와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는가?	• 상대 기관 및 참여 연구원에 대한 정보와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는가?

 문부과학성 내 연구환경과에서 정부연구비(경쟁적 연구비*) 정책을 집행 및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공모형 과제 신청 시 국외 포함 타 연구자금 수혜현황 신고 의무화

- 요구정보(타기관 수혜규모, 연구내용, 연구기관 등) 등을 허위 신고할 경우 5년 간 경쟁적 연구비 신청자격 제한, 연구과제 선정 취소, 연구비 감액 등 제재조치 가능

* 대학, 연구기관 등이 부처·기관 등의 공모를 통해 지원받는 연구자 금 중 연구과제수행에 관한 경비

③ 영국 NPSA의 신뢰할 수 있는 연구 체크리스트

 영국 국가보호보안청(NPSA)의 학계·산업계를 위한 체크리스트('22.3.)

- NPSA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개념을 통해 연구자가 국제협력 시 연구자산과 연구인력, 나아가 영국의 연구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등을 파악해야 함을 강조
- 적대국으로부터의 보안위협을 예방하고 지적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제시



참고

〈영국의 ‘학계·산업계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연구 체크리스트’ 요약〉

학계 체크리스트	산업계 체크리스트
협력 대상(파트너) 정보 - 파트너에 대한 실사(확인)를 통해 적대국 군·경찰 등을 대신하여 연구에 참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 - 당신이나 소속기관의 평판, 윤리, 등에 위협이 있는가? - 협력에 문제가 없는가? 결정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에 보고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가?	제안 관련 정보 - 연구의 기술성숙도(TRL)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협력 과정에서 공유되는 데이터나 지적 재산은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가? - 연구성과가 나온 경우 파트너는 어느 수준의 지식재산권 접근권한을 갖게 되는가?
연구 관계 정보 - 프로젝트에 연구 데이터, 기밀 또는 개인 식별 가능한 데이터가 포함되는가? 보호계획은 있는가? - 지적 재산은 누가 소유하는가? - 협력대상자가 소속기관 IT네트워크에 접근권을 갖는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는가? - 소속기관 이익 보호를 위한 계약 요건이 있는가? - 유사분야 연구에 대해 물리적 분리나 보호가 필요한가?	기관 고려사항 - 프로젝트 간의 네트워크 분리 계획은? - 지적 재산권에 대한 합의 조건은? - 상대 기관의 다른 협력 관계는? - 상대 기관의 유사분야 경쟁자 보호 규정은? - 직원 이탈 시 연구보호 절차는? - 이해 상충 시 통보 의무와 절차는?
기존 협력 대상 관련 정보 - 새로운 프로젝트가 기존 연구 파트너와 이해 상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가? 협의한 적이 있는가? - 비공개 계약 조건을 검토하고 기존 파트너들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이 있는가? - 위 질문의 결과 협업을 진행해도 되는가? 소속 부서·기관에 보고할 필요는 없는가?	프로젝트 내용 관련 정보 - 프로젝트의 데이터 저장서버는 어디 있는가? 데이터의 국외 이전 위험요소가 있는가? - 연구와 연구시설에 대한 물리적·네트워크적 접근을 감시 하거나 제한하는 통제장치가 있는가? - 프로젝트 참여자와 그 데이터 접근권을 알고있는가? - 위 질문의 결과 협업을 진행해도 되는가? 소속 부서·기관에 보고할 필요는 없는가?

 「국가안전보장투자법」을 시행('22.1)하고 과학혁신기술부 산하 국제연구협력자문팀(RCAT)을 신설('21.5)하여 국제연구협력 시 연구안보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 제공

④ 호주 교육부의 외국 간섭 대응 관련 의사결정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호주 교육부(UFIT)는 「호주 대학에 대한 외국 간섭 대응 지침*」 발표 ('22.11.)

- 대학외국간섭TF(UFIT)의 해당 지침을 바탕으로 외국간섭으로부터 기술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학의 외국 파트너 확인(로비스트·제재목록 등재 여부 등) 및 보고의무 강조

* Guidelines to counter foreign interference in the Australian university sector



참고

〈「호주 대학에 대한 외국 간섭 대응 지침」 중 「의사결정자를 위한 체크리스트」주요 내용〉

① 연구 파트너와 인력 관리

- 파트너 또는 후원 주체가 로비스트 등록부 등 관련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가?
- 파트너 또는 후원 주체가 호주 외교통상부 제재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가?
- 외국 연구원들은 연구 세부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는가?
- 외국 기업으로부터 연구 구매 또는 투자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가?
- 이해충돌 보고 및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② 기술 및 연구 평가

- 외국 기관·단체가 연구나 제품을 부적절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가?
- 연구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 당신의 연구가 전략적, 도전적, 창의적 연구에 해당되는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인가?

③ 포괄적 위험관리

- 협력관계와 대학의 평판, 윤리적 가치 등에 위험요인이 있는가?
- 연구 파트너가 IT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연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분리 또는 보호가 필요한가?
- 위험 완화를 유지·장려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할 담당자는 누구인가?
- 사업화 시 지적 재산권, 데이터, 경제적 가치 등의 보호를 고려하고 있는가?

④ 승인, 감사 및 지속적인 평가

- 위험 완화를 포함한 제반 조치들을 검토·승인하는 책임자는 누구인가?
- 연구 특성 등으로 추가적인 감독이 필요한 연구나 계약 파약을 위해 어떠한 정책·지원이 있는가?
- 국제협력의 위험진단을 위한 명확한 요구사항(진단기준)과 지침이 있는가?

 호주 교육부, 국가안보조직, 대학 등으로 구성되어 외국간섭으로부터 대학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조직(UFIT) 신설 ('19.8.)

- 한편, 총리내각부는 핵심기술을 선별·진흥·보호하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핵심기술 보호에 대해서는 UFIT 지침 활용을 권장('21.11.)



참고

〈미국 「원천연구 안보에 관한 JASON 보고서」〉

〈위험성 진단 도구(Tool)〉

원천연구 생태계는 다양한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와 그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구성. 이렇게 넓은 네트워크 속에서 국제협력의 시작 전에, 각각의 구성원들이 일련의 질문과 점검을 통해 스스로 위험성을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

* 대중, 정치적 리더십(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원), 연방정부의 연구지원기관(NSF, NIH, DOD 등), 연구기관(대학, 국립연구소, 싱크탱크 등), 연구계 리더 연구자들, 연구책임자(PI) 등

1. 연구책임자(PI) 점검 리스트

- 계약·협약 내용 등의 내용과 조건이 명확한가? 모든 참여자들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가? 모든 참여연구자들이 연구책임자와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에 알려져 있는가?
- 모든 참여자들의 이해 또는 역할상충 관련 정보가 잘 관리되어 있는가? 협약에 관해 참여자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 불필요하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특이한 계약의 내용이 있는가?
- 협약·계약에 따른 활동 수행을 위한 자금 및 비금전적 지원의 출처는 어디인가? 지원을 제공하는 주체(기관·단체)가 명확한가?
- 연구데이터, 메타데이터, 경제적 이익, 시설·장비 등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산출물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해당 산출물을 공유하는 방식은 어떠한가?
- 참여자가 해당 계약·협약을 마치고자 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협약·계약 내용에 따라 연구자 등은 소속 기관 외의 공간에서 연구 등 활동을 하여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가?
- 소속 기관이나 조직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2. 연구기관·조직의 점검 리스트

- 미국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가?
- 미국의 정치, 사회, 인간적 권리에 해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 미국의 국가 경쟁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가?
-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가?
- 지적재산 관련 위험요인은 무엇인가?
- 데이터 공개, 학술지 게재 및 발표 등과 관련한 지침이 명확한가?
- 조기 종료(중단)에 따른 위험은 무엇인가?
- 계약·협약 내용이 잘못 해석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
- 기관 자체의 핵심 가치에 위배될 위험이 있는가?
- 기관이 해당 계약·협약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위험(손실)은 무엇인가?



참고

〈일본 「연구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위험 대응을 위한 체크리스트」〉

① 대학·연구기관용

① 전반적인 사항

- 소속 연구자·직원이 외국의 기관·대학 등과의 공동연구나 교류 등(자금, 시설·설비·기기 등의 물품, 인력 교류 등 포함)에 따른 위험에 유의하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 기관의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소속 연구자·직원에게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가?
- 소속 연구자·직원을 대상으로 기관 차원에서 ‘위험’에 대한 교육·안내를 하고 있는가?
- 소속 연구자·직원으로부터 연구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경력·연구이력, 현재의 모든 소속기관·직급*, 외부기관의 각종 지원)를 기관의 규정 등에 근거하여 보고 받아 관리하고 있는가?
* 겸업이나 외국 인재등용 프로그램 참여, 고용계약 없는 명예교수 등 포함

② 절차에 관한 사항(외국 기관·대학 등과의 제휴·계약 및 외국의 금전적·물질적 지원 수혜 시)

- 소속 연구자·직원이 외국의 기관·대학 등과 양해각서(MOU) 등 서면계약을 체결할 때, 기관의 규정 등에 근거해 기관 차원에서 검토나 심의를 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실시하고 있는가?
- 소속 연구자·직원이 외국의 기관·대학 등으로부터 금전적*·물질적 지원을 받을 경우 기관 차원에서 보고받는 체계와 상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가?
* 장려금, 겸직·겸무에 따른 급여, 상금, 증정품, 기부금, 출장비, 강연료, 원고료 등
- 소속 연구자·직원이 외국의 기관 등과 장기간에 걸쳐 제휴·계약하고 있는 경우, 상대 기관, 공동연구 내용 등에 변화 발생 시 해당 연구자·직원으로부터 적절히 보고 및 상담을 하고 있는가?
- 서면계약이 없는 제휴·협력이나 금전적·물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에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소속 연구자·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소속 연구자·직원이 특정 국가에 장기간·고빈도로 출장을 가는 경우, 그 내용과 목적을 기관 차원에서 파악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외국기관·대학 등과 공동연구 시 발생하는 연구성과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 등을 주의깊게 살피고, 이에 대한 위험요인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을 소속 연구자·직원에게 교육·안내하고 있는가?
- 외국기관·대학 등과 공동연구 시 소속 연구자·직원은 자국의 안보나 경제·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성과가 개발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보고하는 등 대응할 수 있는가?

③ 상대방(연구자·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외국 기관·대학 등과의 제휴·협력 시)

- 소속 연구자·직원이 외국 기관·대학 등과 제휴·계약을 맺어 협력하는 경우 상대 기관이나 참여 연구원에 대한 정보, 계약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는가?

② 연구자용

① 전반적인 사항

-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담당부서에 상담 등을 하고 있는가?
- 연구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경력·연구이력, 현재의 모든 소속기관·직급*, 외부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각종 지원)에 대해 기관의 규정 등에 근거하여 담당부서에 적절한 보고를 하고 있는가?
* 겸업이나 외국 인재등용 프로그램 참여, 고용계약 없는 명예교수 등 포함

② 절차에 관한 사항(외국 기관·대학 등과의 제휴·계약 및 외국의 금전적·물질적 지원 수혜 시)

- 외국의 기관·대학 등과 양해각서(MOU) 등 서면계약을 체결할 때, 기관의 규정 등에 근거해 담당 부서에 확인이나 판단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가?
- 외국의 기관·대학 등으로부터 금전적·물질적 지원을 받을 경우 소속 기관에 보고 등을 하고 있는가?
* 장려금, 겸직·겸무에 따른 급여, 상금, 증정품, 기부금, 출장비, 강연료, 원고료 등
- 금전적·물질적 지원에 따라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소속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가?
- 외국의 기관·대학 등과 장기간에 걸쳐 제휴·계약 등의 교류·협력하고 있는 경우, 상대 기관 및 공동연구 내용 등에 실질적 변화 발생 시, 그 내용에 대하여 소속 기관에 적절히 보고하고 있는가?
- 소속 연구자·직원이 외국의 기관·대학 등과 장기간에 걸쳐 제휴·계약 등의 교류·협력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담당부서 등에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가?
- 서면계약이 없는 제휴·협력이나 금전적·물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에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가?
- 특정 국가에 장기간·고빈도로 출장을 가는 경우, 필요 시 그 내용과 목적을 적절히 보고하고 있는가?
- 외국기관·대학 등과 공동연구 시 그 과정에서 자국의 안보나 경제·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성과가 개발되거나, 개발된 성과가 목적 외로 사용되는 등 위험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 기술정보 제공 시 사전 검토를 실시하거나 기술정보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 국외출장으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담당부서에 상담 등을 요청하고 있는가?

③ 상대방(연구자·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외국 기관·대학 등과의 제휴·협력 시)

- 외국 기관·대학 등과 제휴·계약을 맺어 협력하는 경우 상대 기관이나 참여 연구원에 대한 정보, 계약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는가?

〈 본 체크리스트에서 위험(Risk)의 정의 〉

①이해충돌·역할상충 등 관리 위험, ②기술·정보유출 위험, ③신뢰 저하 위험* 등을 의미

* (예) 연구자가 국내 연구과제 신청 시 교류·협력 등이 제한된 외국기관과 공동연구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사태가 발생되어 연구자 개인의 신뢰가 저하될 위험



참고

〈영국 학계 및 산업계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연구 체크리스트」〉

: 외국 기관·단체의 연구협력 제안 시 이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위험성 평가 가능

① 학계 체크리스트

(1) 협력 대상(파트너) 정보

- 파트너가 왜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가?
- 그들은 재정적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 영국에 적대적인 국가 또는 조직이거나 영국과 다른 민주주의적·윤리적 가치를 가지는가?
- 파트너에 대한 실사(확인)를 통해 협력 대상이 적대적 국가의 군 또는 경찰 등을 대신하여 연구에 참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
- 위의 질문에 해당한다면, 당신의 연구가 잘못 사용되거나 의도되지 않은 활용(Unintended Use)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 파트너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법적, 규범적, 또는 소속기관의 정책 상 제약이 있는가?
- 연구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가? 아니면 해당 연구에 관한 결정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에 보고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는가?

(2) 연구 관계 정보

- 제안된 양해각서(MoU)의 조건이 소속 학과 및 대학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가?
- 기존 지적 재산(IP), 연구 데이터, 기밀 또는 개인 식별 가능 데이터를 프로젝트에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보호할 계획인가?
- 지적 재산은 누가 소유하게 되는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계획이 있는가?
- 소속 기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계약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가?
- 협력 대상자가 소속 기관의 IT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는가?
- 추진 중인 유사 분야 연구에 대하여 물리적 분리나 보호가 필요한가?

(3) 기존 협력 대상 관련 정보

- 해당 프로젝트를 새롭게 진행하는 것이 기존 연구 파트너들과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기존 연구파트너들과 협의한 적이 있는가?
- 비공개 계약의 조건을 검토해보았는가? 기존 연구 파트너들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해당 연구가 귀하 또는 귀하의 소속 부서, 소속 기관이 이미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는 기존의 계약과 상충하거나 위반할 여지가 있는가?
-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바탕으로 해당 연구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가? 아니면 결정을 위해 소속 부서 또는 기관에 이를 보고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는가?

② 산업계 체크리스트

(1) 제안 관련 정보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기술성숙도(TRL)는 어느 수준인가?
- 응용 연구는 상업화를 고려하게 되는데, 어떤 데이터나 지적 재산이 해당 협력 과정에서 공유되며, 이는 어느 정도 수준(영업비밀 등)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인가?
- 해당 연구가 성공했을 경우, 당사와 귀하의 지적재산에 파트너는 어느 수준의 접근권한을 갖는가?
- 총 연구비에서 당신(또는 당사)이 지원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 해당 내용은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출물과 성과의 활용, 배분과 관련한 계약 내용과 관련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당신과 파트너 모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합의된 조건을 세웠는가?

(2) 기관 고려사항

- 프로젝트 간의 네트워크 분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프로젝트의 민감도에 따라 산출 데이터, 백그라운드 IP, 독점 정보 등은 어떻게 유지·보호할 계획인가?
- 상대 기관은 다른 누구와 협력하고 있는가? 이해충돌에 관해 잠재적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 상대 기관은 동일 분야 경쟁자의 연구 보호를 위해 규정이나 행동강령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
- 연구에 참여한 직원이 프로젝트 도중 이탈(사직, 변경 등)할 경우, 귀하의 연구가 보호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는가?
-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소속 직원들은 해당 협력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업무(유급)를 맡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러한 잠재적 갈등을 논의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한가?
- 공유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도 민감도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다양한 범주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합의된 바가 있는가?
- 해당 연구 파트너는 사이버 보안에 관한 산업 표준을 보유하고 있거나 준수하고 있는가?
- 소속 기관은 귀하의 이익과 잠재적 이해상충에 관하여 통보해야 할 의무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3) 프로젝트 내용 관련 정보

- 데이터, IP 및 독점 정보에 대한 소유권 관련 조건은 어떠한가?
- 어떤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으며, 데이터 보호에 관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 연구의 일환으로 공유되는 데이터와 백그라운드 IP는 어떻게 보호할 계획인가?
- 연구 데이터는 어디에 보관하며, 데이터와 정보를 전송할 때 보호 절차와 장치는 있는가?
- 프로젝트 과정에서 발생한 산출물에 대한 보호조치 계획이나 내용은 어떠한가?
- 연구 프로젝트 간 네트워크 분리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분리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는가?
- 프로젝트 데이터가 저장될 서버는 어디에 있는가? 데이터 국외 이전과 관련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는가?
- 연구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물리적, 네트워크적 접근을 감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있는가?
- 개별 연구원이 귀사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는 활동에 동의를 얻거나 통지할 의무가 있는가?
- 누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인지, 누가 당신의 데이터에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참고

〈호주 대학의 외국간접 대응에 관한 의사결정 지침 중 관련 체크리스트〉

〈연구 파트너와 인력 관리 관련〉

- 연구 파트너 상위 기관의 이해관계(기존 파트너, 협력업체, 부처 등)가 투명한지 판단할 수 있는가?
 - 외국 연구원들이 당신의 연구 세부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관심을 갖는가?
 - 외국 기업으로부터 당신의 연구를 구매하거나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어떤 조건을 제안 받았는가? 조건의 내용이 합리적인가?
 - 이해충돌 보고 및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연구 파트너·후원주체가 외국영향투명성 제도*, 로비스트 등록부 등에 등록되어 있는가?
 - 호주 외교통상부(DFAT) 통합 목록에 파트너 또는 후원 주체가 제재 목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등재되어 있는가?
- * 호주정부·정치에 대한 외국 영향력 정도를 등록·공개하는 제도로, 외국 정부 및 관련 조직을 대표하는 개인과 단체는 의회로비, 커뮤니케이션 등의 정치적 활동을 사전에 등록해야 함

〈기술 및 연구 평가 관련〉

- 외국의 기관·단체가 당신의 연구나 제품을 부적절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가?
- 당신의 연구는 의도와 상관없는 용도로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 귀하의 연구가 전략적, 도전적, 창의적 연구에 해당하는가? 또는 해당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에 해당하는가?

〈포괄적 위험관리 전략 관련〉

- 활동의 이익이 위험에 비해 더 큰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조정해야 할 활동은 무엇인가?
- 연구자들과 그들의 국제 파트너들은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공개·관리하는 것을 포함해 그들이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인지하고 있는가?
- 연구 파트너가 귀하 또는 귀하의 소속 기관 IT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들의 권한은 어떻게 되며, 추가적인 위험요인이 존재하는가?
- 위험 완화를 유지·장려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할 담당자는 누구인가?
- 상용화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는가?
 ① 지적재산에 대한 소유권 관련 조건 ② 기존 IP, 연구 데이터, 기밀 또는 개인 식별 가능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 ③ 호주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업적 가치가 있는 연구의 식별 및 보호

〈승인, 감사 및 지속적인 평가 관련〉

- 협력자들의 행동, 관심사 및 외부 관계가 시간에 따라 대학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되지 않았는가?
- 위험 완화를 포함한 제반 조치들을 검토·승인하는 책임자는 누구인가?
-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위험 진단을 수행하기 위한 명확한 진단기준과 지침이 있는가?



참고

〈연구정보 국외유출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²⁶⁾

- 국제공동연구, 수탁연구* 시

* 해외에서 연구자금을 받는 연구활동과 해외 연구참여도 포함

구분	내용	예	아니오
연구전	Q1. 국가핵심기술 또는 보안과제 해당여부를 점검하였는가? ※ 현재는 기술이 없어도 연구개발 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 보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포함		
국가핵심기술 또는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Q2. 내용, 방법, 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를 받았는가? ※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보유 가능성에 대해 소속기관은 산업통상 자원부에 사전검토 요청 가능 ※ 국가핵심기술의 실질적 이전에 해당할 경우 소속기관은 산업통상 자원부에 승인절차(또는 국가R&D지원이 없었던 국가핵심기술인 경우 신고절차) 진행		
	Q3. 상대방 기관 대상 자료제공과 관련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보안 교육을 받았는가?		
연구 후	Q4. 상대방 기관과의 연구교류 결과를 소속 기관에 보고했는가?		

- 국외 자문제공*, 국제 세미나 발표** 시

* 국내 연구자가 해외 기관 등에 제공하는 자문활동

** 국내연구자의 해외기관 등과의 세미나 활동으로, 해외 출장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학회 발표, 온라인 세미나 발표 등도 포함

구분	내용	예	아니오
자문/발표전	Q1. 국가핵심기술 또는 보안과제 해당여부를 점검하였는가? ※ 국가핵심기술이어도 일반에 공개된 기술은 미대상		
국가핵심기술 또는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Q2. 자문/발표 내용, 방법, 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를 받았는가? ※ 국가핵심기술의 실질적 이전에 해당할 경우 소속기관은 산업통상 자원부에 승인절차 진행		
	Q3. 자문/발표자 대상 보안교육을 이수하였는가?		
자문/발표전 후	Q4. 자문/발표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보고했는가?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국제교류활동 시 유의사항 안내 (2021.2.26.), 별첨 3. 과학기술 국제교류활동 연구자 참고용 자가진단사항

[별첨 3-1] 논문 투고 시 점검 사항(예시)²⁷⁾

	점검사항	O/X	주의사항
1	본인 또는 동료가 아는 학술지입니까?		부실 학술지의 경우 저명한 학술지와 매우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여 연구자들을 혼란시키는 경우가 있음
2	이 학술지는 귀하가 이용하는 논문 검색 서비스에서 색인이 가능합니까?		SCI, KCI, SCOPUS 등 논문 검색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 OA 저널의 경우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 OASPA(Open Access Scholarly Publishers' Association)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3	이전에 이 학술지에서 발표된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해당 학술지에서 발표된 논문을 읽어본 적이 없다면 투고 전 동료·조언자와 상의할 필요가 있음
4	이 학술지는 귀하의 연구성과 발표에 적합한 학술지입니까?		부실 추정 학술지의 경우 특정 학문 분야가 아닌 다양한 학문 분야의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가 있음
5	출판사 연락처 등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부실 추정 학술지의 경우 운영진(편집부 등)의 정보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음
6	이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다양한 학문 분야의 수많은 학술지를 편집하는 편집장이 있는 경우 부실 학술지의 가능성이 있음
7	동료 평가와 그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까?		동료평가와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동료 심사와 절차를 보장하는 경우 부실 학술지의 가능성이 있음
8	귀하의 논문의 빠른 게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게재를 보장(Guarantee)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선전하면 부실 학술지의 가능성이 높음
9	어떤 비용을 청구할 것인지(또는 비용이 면제 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까?		부실 학술지의 경우 논문심사로 및/또는 게재료가 명시되지 않고 논문 투고 후 또는 저작권 이양 후 과도한 논문 게재료 또는 심사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10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에도 해당 학술지가 허위 학술지로 판단되는 경우 '건전학술활동 지원 시스템'에 신고하시겠습니까?		http://safe.koar.kr → 의심신고 항목에 신고 필요

※ 허위학회의 특징, 유형에 대해 더욱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http://safe.koar.kr>) 및 Think/Check/Submit 사이트(<https://thinkchecksubmit.org/>)를 활용

27) 교육부, 대학 교원의 해외 학술대회 참석·학술지 투고 절차 개선 권고안 (2020.3.5.) p.6

[별첨 3-2] 학술대회 참석 시 점검 사항(예시)²⁸⁾

	점검사항	O/X/△	주의사항
1	이 학술대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학회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등록 전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
2	누가 이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본인이 알고 신뢰하는 전문적인 학술 또는 과학기술 단체(협회)에 의해 학회가 운영되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함
3	웹사이트와 이메일 주소는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이메일이 무료계정을 사용했거나, 웹사이트 url이 무료 웹사이트이고 지난 학회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의심스러운 학회일 수 있음
4	본인 또는 동료가 이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본인의 동료, 은사 등이 이 학회에 한 번도 참가하거나 발표한 적이 없다면 참석 결정 전에 한 번 더 재고해볼 것
5	학술대회의 범위와 목적이 당신의 연구분야와 관심사에 적합합니까?		서로 관련이 없는 다양한 학문 분야, 학술 주제를 하나의 세션에서 다루면 허위 학술대회 가능성이 있음
6	대회의 일정, 장소와 의제(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고 있습니까?		대회의 일정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주요 일정이나 개최 장소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부실 학회의 가능성이 있음
7	기조연설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까?		
8	논문 초록에 대한 짧은 심사기간과 학회 논문의 학술지게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논문 초록의 빠른 심사(4주 이내)와 학회 논문의 저널 게재를 보장하는 것은 부실학회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임
9	학회가 관광명소나 리조트에서 열립니까?		학회가 누구나 떠나고 싶어 하는 휴가지에서 열리며, 학술대회가 아닌 휴가처럼 선전되는 경우, 관광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경우 허위 학술대회 가능성이 있음
10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에도 참석하려는 학회가 부실학회라고 판단될 경우 '건전학술활동지원 시스템'에 신고하시겠습니까?		http://safe.koar.kr → 의심신고 항목에 신고 필요
11	연구원 외 가족 등 외부인을 동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지출은 출장비에서 제외됐습니까?		정액이 아닌 실비 지급 방식의 경우 외부인 동반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제외해야 함 (예시) 가족 동반 투숙 시, 객실 크기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출장자가 부담해야 함
12	출장계획이 학술대회 참석 목적에 부합합니까?		

※ 위는 학술대회 참석 시 점검 목록의 예시로, 각 기관에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배포한 「부실 학술활동의 주요 특징과 예방 대책」, Think/Check/Attend(<https://thinkcheckattend.org>) 등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확인 목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8) 교육부, 대학 교원의 해외 학술대회 참석·학술지 투고 절차 개선 권고안 (2020.3.5.) p.5 일부 변형

[별첨 3-3]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신청서(예시)²⁹⁾

학술회의	회의명					
	주관기관					
	개최장소	국가명:	도시명:			
	회의기간	0000.00.00 ~ 0000.00.00 (총 X일)				
	여행기간	출국일자: 귀국일자: ※ 여행기간은 회의기간과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최대 XX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의기간 이외 개인적인 일정으로 추가 체류 발생 시 출장신청서에 명시·제출 필요(여비규정 XX항)				
신청자	성명	소속	직위	출장 시 비상연락처		
참가역할	☐ 논문/포스터발표		☐ 좌장 또는 연설자		☐ 국제학회 임원회 참가	
	☐ 국제학술지 편집위원회 참가		☐ 토론자		☐ 기타	
외부인 동반여부	☐ 가족	☐ 지원기관	☐ 기타		☐ 해당없음	
동반 사유	☐ 공무수행		☐ 여가 활용		☐ 기타 (사유:)	
	※ 공무수행 목적 시 관련 증빙 첨부					
경비 지출 방식	☐ 주최 측 지원		☐ 출장여비		☐ 자비	
참가경비내역	구분	항공료	체재비			등록비
	소요금액		일비	원 x 일 = 원		
			숙박비	원 x 일 = 원		
			식비	원 x 일 = 원		
	신청금액					
※ 외부인 동반에 따른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기관 여비규정에 따름						
타기관지원내역	구분	지원기관명	과제번호	금액	해당없음	
	항공료					
	체재비					
	등록비					

위와 같이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고자 하오니 참가경비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인)

29) 서울대학교,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신청서 양식 일부 변형



제4장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IV

제4장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59
제1절 개요	63
1 이해충돌의 개념	63
2 이해충돌 관련 법·규정	64
3 이해충돌 예방·관리 규정 마련 의무	67
4 이해충돌 예방·관리 길잡이의 기본 원칙과 목적	72
제2절 연구개발 이해충돌의 유형	74
1 연구개발 이해충돌의 유형 구분	74
1) 발생 원인에 따른 구분	74
2) 이해충돌 관련 법령 구조에 따른 구분	75
2 연구자등의 직무 유형별 예시 및 관련 법령	76
제3절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방안	79
1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목적	79
2 연구기관의 책무	79
1) 정책, 제도, 자체 규정의 마련	79
2) 이해충돌 관리	79
3) 연구자 등 대상 교육 실시	81
3 연구자의 책무	80
1) 이해충돌의 예방 및 관련 지침 준수	82
2)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83
제4절 이해충돌 관리·점검 절차 및 체계	84
1 연구수행 시 이해충돌 관리·점검 체계	84
2 연구자의 외부 활동 수행 시 사전 보고 및 관리체계	86
3 연구자 창업 시 직무적 이해충돌 관리	87

부록	공공부문의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 해설	98
제1절	개요	98
제2절	연구자 개인 차원의 이해충돌 유형과 대응	98
1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98
2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103
3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104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105
5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108
6	재산상 이익 목적 직무상 비밀 이용 제한	109
7	민간기관 재직자 공무수행사인 활동시 의무	111
제3절	연구기관 차원의 이해충돌 유형과 대응	113
1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재직자 가족채용 제한	113
2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재직자 관련 수의계약 제한	114
제4절	이해충돌 대응 체계 및 연구자·연구기관의 책무	117
1	이해충돌 예방	117
2	이해충돌 신고 및 처리 절차	119
3	이해충돌담당관의 지정	121
4	이해충돌 관련 규정 등의 위반에 대한 조치	122
5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이해충돌 예방 책무	124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IV

제4장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알림

- 제4장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공공연구기관·연구자 등이 포괄적으로 참고해야 할 내용은 제4장의 [부록]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1절 개요

1. 이해충돌의 개념

 통상적으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利害衝突)³⁰⁾은 개인이 공적(公的)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私的)인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공적인 업무가 훼손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해상충(利害相衝)”으로 표현되기도 함



참고

〈이해충돌에 관한 다양한 정의〉

- 공직자의 공적인 직무와 사익(私益)간 충돌로 인해, 공직자의 개인 자격으로서의 이해관계(private-capacity interest)가 공적인 임무와 책임(offici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³¹⁾ (OECD 2005, p.13)
- 연구자의 1차적 이익(연구의 타당성 등)과 관련한 전문가적 판단이 2차적 이익(개인의 경제적 이익 등)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부당하게 영향받을 수 있는 상황³²⁾ (Thompson 1993, p.573)

 법률상으로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하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4호), 특히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는 상대적으로 재산상 이해관계와 특혜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을 강조함

30) “이해충돌”은 강학상 또는 관련 법령규정에 “이해상충”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본 길잡이에서는 그 작성의 근거가 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상 “이해 충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체적 규정을 소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충돌”의 용어를 사용함

31) OECD 2005.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ctor

32) Thompson, Dennis F. 1993. “Understanding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29: 573-6

📖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제1819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7989호)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개념을 종합해 보면, 연구개발 이해충돌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공적(公的) 업무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적(私的)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정의될 수 있음

2. 이해충돌 관련 법·규정

🗨️ 연구자등의 이해충돌은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주요 주체가 대학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라는 점에서 공직유관단체 및 대학 등의 이해충돌 관련 법령으로 규율되어 왔으며, 다른 한편 대학의 경우 이미 2013년 개정된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연구윤리지침의 제정 의무에 따라 연구윤리지침의 일부로 다루기도 하였음

🗨️ 우리나라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양한 법령이 시행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공직자윤리법」(’81.12.31제정, ’83.1.1.시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08.2.29.폐지제정, ’08.2.29시행) 및 동 법 시행령 「공무원 행동강령」(부패방지법 당시 ’03.2.18제정, ’03.5.19.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방지에 관한 법률」(’15.3.27.제정, ’16.9.28 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21.5.18.제정, ’22.5.19.시행 예정) 등이 있음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등을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은 △등록의무자(제3조), △공직유관단체(제3조의2), △등록대상재산(제4조),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제6조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제14조의4), △주식취득의 제한(제14조의6) 등임
- 상대적으로 임원급 공직자(연구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직접 담당하는 연구자가 「공직자 윤리법」의 대상에 포함되는 비중은 높지 않을 것임

관련 법령

「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798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공직자가 준수할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제5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5조의2),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제5조의3), △가족 채용 제한(제5조의4), △수익계약 체결 제한(제5조의5),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5조의6),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0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0조의2),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1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 △공공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제13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3조의3),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16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7조)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음
- 대부분의 연구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정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중하는 각 기관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함

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38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방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부분의 연구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방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임
-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방지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 중에서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의 상황에 적용되는 의무를 집중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81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이하, 각 호 생략〉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직자 개인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제5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제10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4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제16조) 등의 의무가 발생함
- 공공기관은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등의 의무가 발생함

📖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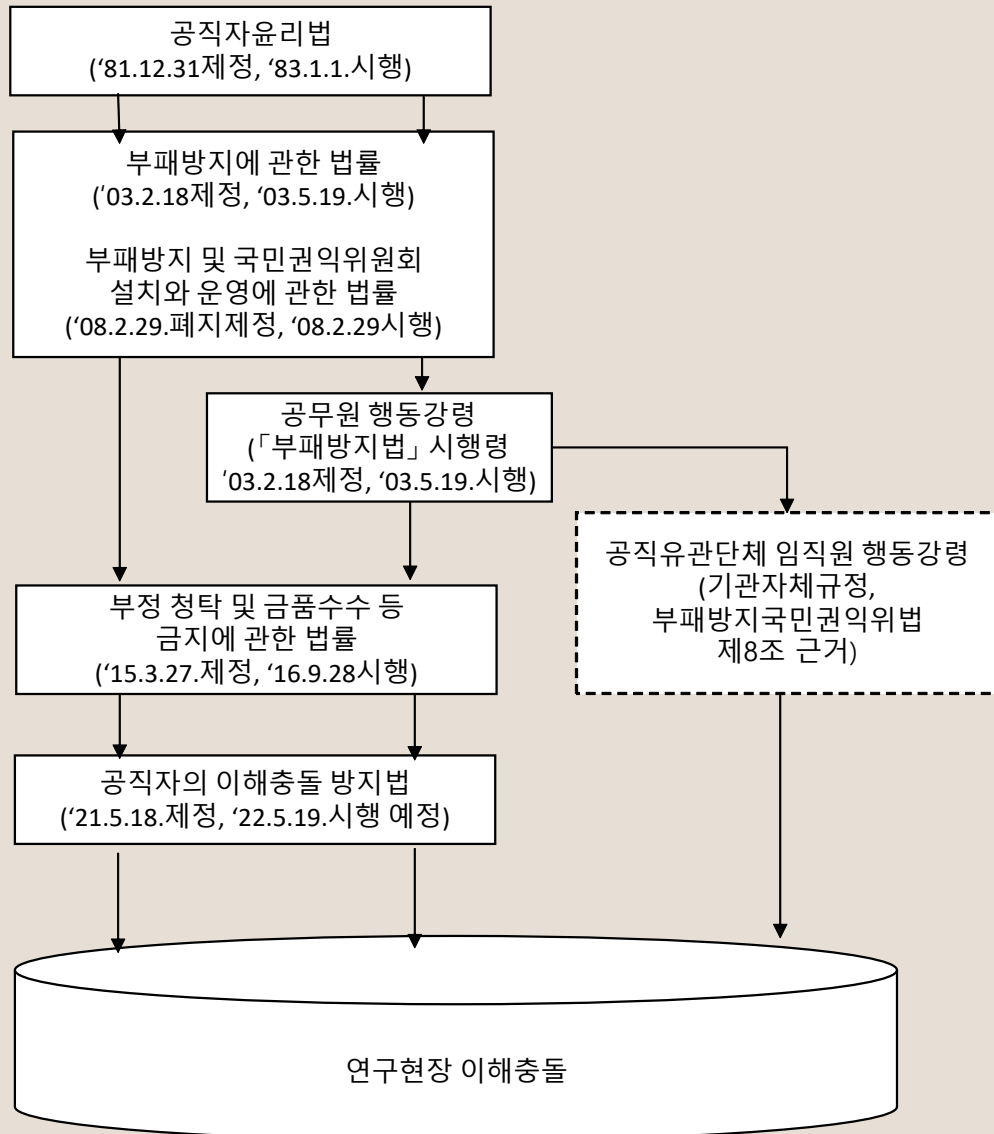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법률 제18191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이해충돌 관련 법령 입법 연혁〉



3. 이해충돌 예방·관리 규정 마련 의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은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이 모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각 기관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8645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28호)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참고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범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포함),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민간기업 모두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수준의 강한 이해충돌 대응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요구사항과 유사함
- (1유형: 공직유관단체와 국·공립대학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이해충돌 대응 규정을 거의 준용하는 수준으로 이해충돌 예방·관리에 관한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각 연구기관별로 기존 연구윤리규정이 있을 것이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윤리규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2유형: 사립대학교) 사립대학교는 이해충돌 관련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국·공립대학교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받는 점은 동일하지만, 새로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음
 - 사립대학교는 이해충돌의 측면에서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방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연구윤리의 측면에서는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을 보유하고 있음
 - 다만, 현재까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의 법령에는 포함되지 않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닐 것임
- (3유형: 민간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민간연구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직자 수준의 이해충돌을 의무화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직접적으로 준용하도록 할 수는 없음

- 다만, 민간기관 재직자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재산상 이익 목적 직무상 비밀 이용 제한 의무 등 공무수행사인 활동시 의무는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임
- 한편, 민간연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강화된 이해충돌 대응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이해충돌 대응 규정을 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임

구분	1유형		2유형	3유형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포함)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민간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윤리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연구개발기관)	○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자체 행동강령을 만들어야 하는 기관)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수준의 이해충돌 대응을 해야 하는 기관)	○	○		

※ 인사혁신처는 2022년 1월에 1,352개의 공직유관단체 명단을 지정·고시하였으며, 이 중에는 기획재정부가 2022년 1월에 지정·고시한 350개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음

※ 각 유형별 예시규정은 본 연구윤리길잡이 제8장을 참조

- ☞ 공공연구기관은 본 이해충돌 길잡이에서 소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된 대부분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이해충돌 이슈를 상당부분 포괄하는 “행동강령” 규정을 운영중임
 - 이해충돌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의무가 있는 공공연구기관·연구자 등이 해당 법령에 따라 참고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4장의 [별첨] 공공부문의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 해설에서 안내함
- ☞ 이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본 길잡이에서 소개된 이해충돌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① 연구윤리규정에는 연구자·연구개발 관련 이해충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② 이미 운영중인 “행동강령” 등 기존의 기관 자체규정·지침등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추가하여 개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
- ☞ 민간연구기관은 대부분 공직유관기관이 아니므로 공무수행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유관단체 및 그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할 의무는 없음
 -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도 받지 않으므로 “행동강령”에 준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필수적인 사항만 내부 규정으로 만드는 방안과 공공연구기관에 준하여 강화된 이해충돌 대응 규정을 만드는 방안이 있을 것임 (제8장의 예시규정-민간연구기관 규정사례 (1), (2) 참조)



참고

〈이해충돌 관련 법령의 소속기관별 연구자 적용 범위〉

-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상 ‘공직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다양한 이해충돌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
 -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들의 상당수는 국·공립연구소 및 공공연구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무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보유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됨
 -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대학의 교직원을 ‘공직자’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게 됨

〈소속기관 및 연구자 직위에 따른 이해충돌 관련 법령 적용 대상 구분〉

구분	적용 대상		소속기관별 연구자 해당 여부
	공공기관	공직자	
공직자 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략) 8.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중략) 12. 제3조의2에 따른 <u>공직유관단체</u>(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u>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u>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u>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u>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국립대학 /사립대학 등의임원급 연구자등만 해당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국립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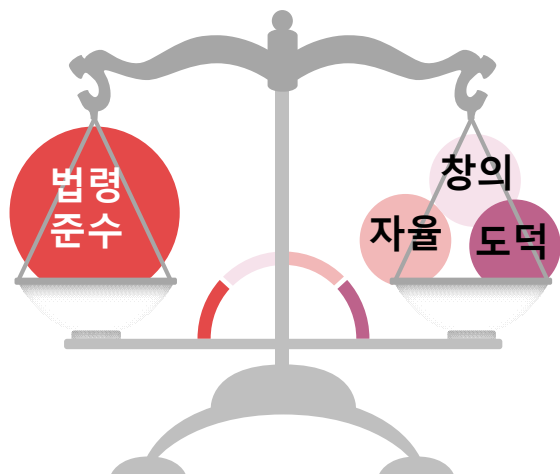
구분	적용 대상		소속기관별 연구자 해당 여부
	공공기관	공직자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 기관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 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제2조제1호)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제2조제3호)	/사립대학 등에 소속된 대부분의 연구자등이 해당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 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제2조제1호)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제2조제2호)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국립대학 /사립대학 등에 소속된 대부분의 연구자등이 해당됨

구분	적용 대상		소속기관별 연구자 해당 여부
	공공기관	공직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 기관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제2조제1호)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제2조제2호)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국공립대학 등에 소속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해당됨 (사립대학 재직자 제외)

4. 이해충돌 예방·관리 길잡이의 기본 원칙과 목적

 우리나라 연구개발 이해충돌 예방·관리 길잡이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음

- 연구개발 이해충돌 길잡이는 공공·민간부문의 현장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에게 관련 법령을 쉽게 소개하는 한편, 이해충돌 예방 노력이 창의적 연구역량과 기술실용화, 실험실창업 활성화, 고급이공계 인력의 민간 고용 확대·공공·민간 연구협력 등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함
- 특히, 관련 법령에 따른 이해충돌 예방·관리 의무는 준수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처벌이 뒤따르므로 연구자가 관련 규정 미숙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를 쉽고 상세하게 소개하되, 그 이상의 추가적인 예방·관리 의무는 가급적 지양함으로써 이해충돌 예방·관리로 인하여 연구현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자 함



이러한 기본 원칙 하에 연구개발 이해충돌 예방·관리 길잡이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등이 연구개발 현장에서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해충돌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연구자등에게 새로운 규제로 인식되어 연구개발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기존 법령 및 자체 연구윤리규정과 조화·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이해충돌 예방·관리의 방안을 제시함
- 연구개발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상황별로 연구자등이 쉽게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길잡이를 제시함
- 연구기관이 이해충돌 규정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각 연구기관별로 이미 마련해 놓은 연구윤리규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
-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함

📖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28호)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제2절 연구개발 이해충돌의 유형

1. 연구개발 이해충돌의 유형 구분

1) 발생 원인에 따른 구분

☞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이해충돌은 기존에 대학의 연구윤리지침(또는 연구윤리규정)에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이 때 이해충돌은 그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인적 이해충돌, 금전적 이해충돌, 직무적 이해충돌, 지적 이해충돌 등으로 구분되어 왔음

- 대학의 경우 이미 2013년 개정된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지침의 제정 의무가 부여되었고 일부 대학의 경우 그 연구윤리지침에 이해충돌의 내용을 포함하였음

☞ 대학 중심의 기존 연구윤리지침의 발생 원인에 따른 이해충돌 중 인적·금전적·직무적 이해충돌은 관련 법령에서 매우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는 반면, 지적 이해충돌은 법령에 따른 규율의 영역이 아님



참고

〈금전적 이해충돌〉

정 의	•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이 연구 등 본연의 임무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예 시	• 특정 기업으로부터 급여 또는 보수를 받거나 출장비, 선물 등을 받는 경우 • 특정 기업과 관련한 주식, 스톡옵션,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 기업 등 영리기관으로부터 고용, 이사직, 자문 등의 역할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특정 영리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자문료, 강의로 등을 받는 경우 • 이사직, 자문 등의 역할을 맡은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여 수행한 연구의 평가/자문을 맡은 경우

〈직무의 충돌〉

정 의	• 연구자로서의 연구활동 등 고유 직무 외 역할(자문, 창업, 봉사, 외부활동 등) 수행이 연구자로서의 고유 임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예 시	• 소속 기관의 사업 범위를 벗어난 외부 파견, 외부 강연, 외부 조직(기업) 자문, 개인적 위탁과제 수행, 창업 등

〈인적 이해충돌〉

정 의	• 연구자의 개인적 친분이나 갈등 등 사적인 인간관계가 연구수행, 평가,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예 시	• 연구자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에 그의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참여하는 경우 • 연구과제의 결과물(논문, 보고서 등)에 그의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저자로 포함하는 경우 • 각종 심사, 평가 등에서 자신의 지도학생, 동료, 가족, 지인 등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

〈지적 이해충돌〉

정 의	• 특정 연구분야나 이론적 확산,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 등으로 인해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심사, 평가 등에 편향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
예 시	• 저널 심사 등에 있어 심사자 개인의 이론적 편향, 특정 결과의 지향 등과 반대되거나 경쟁하는 연구 논문을 심사하게 된 경우

규정사례

〈학술진흥법에 따른 대학 연구윤리지침에 포함된 이해충돌 규정사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18조(이해상충의 내용)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금전적 이해상충: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인간관계적 이해상충: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3. 지적인 이해상충: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역할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5. 기타의 이해상충: 그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39조(금전적 이해상충) ①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연구자는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제43조(사적 상충) ① 연구를 제안, 수행, 보고 및 심사하는데 있어 사적 편견을 피해야 하며, 소속기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46조(지적 상충) 특정한 연구 분야나 연구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한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적 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동연구의 제안, 심사자의 선정 등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과 도덕적 신념을 밝혀야 한다.

2) 이해충돌 관련 법령 구조에 따른 구분

 이해충돌 유형을 적용 법령,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기준으로 재정리하면 크게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연구자등이 개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유형은 ①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③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④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⑥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⑦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임
- 연구기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유형은 ⑧가족 채용 제한, ⑨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임



참고

〈이해충돌 대응 방안〉

구분	내용	이해충돌방지법 조항
연구자등 개인 차원의 대응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및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5조, 제15조
	과학기술 관련 특구 부동산 보유·신고	제6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9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제10조
	재산상 이익 목적 직무상 비밀 이용 제한	제14조
	민간기관 재직자 공무수행사인 활동시 의무	제16조
연구기관 차원의 대응	재직자 가족채용 제한	제11조
	재직자 관련 수의계약 제한	제12조

2. 연구자등의 직무 유형별 예시 및 관련 법령

우리나라 연구자등은 ①연구수행직무뿐만 아니라 ②교육직무 및 ③공공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실험실창업 주체로서의 직무 및 ④ 계약 및 지구 지정 등 연구지원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

- 연구개발 이해충돌 길잡이가 연구자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의 유형별로 제기될 수 있는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하여 자율적인 예방과 관리가 수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직무 유형별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의 문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음

〈구분 기준에 따른 이해충돌 발생 가능 상황과 적용 가능 법령의 예시〉

구분	내용	관련 법령 예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사적관계 신고/ 채용제한 등의 문제	구체적 상황	제5조(사적이해 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5조(사적이해 관계의 신고 등)
	직무 유형별 예시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구분		내용	관련 법령 예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재산보유/ 거래·계약/ 비밀이용/ 사례금수수 등의 문제	구체적 상황	연구자의 직·간접적인 재산상 이해 관계가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유형별 예시	(연구) - 연구자가 사외이사직을 맡은 회사의 제품개발을 위하여 해당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책임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교육) - 배우자의 사업에 금전적 혜택을 준 회사를 위해 자신의 연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알려주는 경우 (자문) - 영리기관으로부터 법령에서 허용하는 수준 이상의 자문료를 지급받고 외부 활동을 하는 경우 (실험실창업·계약) - 실험실창업 후 후속발명으로 발명된 연구개발성과를 소속 연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특구지정 등 연구지원) - 신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예정된 지역의 부동산을 배우자가 소유하도록 한 경우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업무범위 등의 문제	구체적 상황	연구자가 수행하는 개인적 활동이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직무 유형별 예시	(교육·자문) 소속 연구기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무료 외부 자문을 하는 경우			
위원회활동/ 파견 등의 문제	구체적 상황	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무원 상임, 평가를 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의 경우	제16조(공무수행 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11조(공무수행 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직무 유형별 예시	(평가·심사) 기업 소속 연구자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이 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전문분야/소속기업에 유리한 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이 외에도 다양한 연구개발등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 유형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임



참고

〈기타 포괄적 이해충돌 범주에 대한 관련 법령의 적용〉

- 청탁금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제외되어 있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방지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해당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음
-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주식신탁 등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제외되어 있지만 「공직자 윤리법」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해당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음
- 금품의 수수 금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제외되어 있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방지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해당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음
- 인건비와 연구수당의 지급 등에 대한 갈등과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제외되어 있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해당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음



참고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 관련 이해충돌 상황 예시〉³³⁾

- **금전적 이해충돌의 상황**
 - 연구자가 자신이 창업한 기업의 사적 이익 창출을 위해서 특허 출원이 용이한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대학의 연구 과제로 진행하는 경우
 - 연구자가 자신이 창업한 기업의 연구 활동을 위해서 대학 보유의 시설 및 장비를 대학의 허가 없이 활용하는 경우
 - 연구자가 자신이 창업한 기업의 연구 활동을 위해서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한 대학(산학협력단) 소유의 특허를 대학의 허가 없이 활용하는 경우
 - 연구자가 대학이 보유하는 시설, 장비, 특허,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자신이 창업한 기업의 과제를 수행하여 개량 기술을 발명한 뒤, 대학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 없이 해당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창업 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 **직무 충돌의 상황**
 - 연구자의 창업 활동으로 인해 연구자가 소속 대학 및 학과에서의 연구 활동 및 관련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자의 창업 활동으로 인해 연구자가 소속 대학 및 학과에서 담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지도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자가 대학에서 정하는 적절한 절차 및 협의 과정 없이 자신이 창업한 기업의 과제에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을 참여시키는 경우

33) 서울대학교 이해충돌 관리 가이드라인 등 참고

제3절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방안

1.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목적

- ☞ 연구활동에서의 이해충돌은 연구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연구자등과 연구기관의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가 필수적임
- ☞ 연구자등이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과 부적절한 관계, 복잡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비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2. 연구기관의 책무

1) 정책, 제도, 자체 규정의 마련

- ☞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의 공개, 연구수행 시 점검사항, 보고 내용 등 관련 절차 및 기준 등을 제시해야 함
 - 특히, 기업 후원 또는 기업과의 공동연구과제수행, 소속 연구자의 기술창업, 소속 연구자의 창업에 학생참여 등에 대해서 자체 규정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관련 전담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 ☞ 이해충돌 관련 자체 연구윤리규정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가. 이해관계의 공개 범위 및 대상, 절차 등의 제시
 - 나. 이해충돌에 대한 판단, 관리 등의 절차 및 관련 담당자를 명시
 - 다. 소속 연구자는 연구기관의 이해관계 공개 정책 및 관리 절차를 준수할 것을 명시

2) 이해충돌 관리

- ☞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이해충돌 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유형을 정하고 해당 유형의 활동을 하는 연구자 등에게 이해충돌에 대한 신고를 받고 검토, 확인 등 관리하기 위해 조치해야 함
- ☞ 연구기관의 이해충돌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 연구개발 관련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함에 있어 과도한 규제로 연구자등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연구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해충돌 예방 조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의 차원을 넘어, 조직 및 기관 차원의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함
 - ※ 예를 들어, 연구기관에 막대한 기부금을 낸 제약회사가 요구하는 임상연구를 해당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경우 또는 기관장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이슈를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 등이 포함됨
- ☞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연구 후원 및 어떻게 이해충돌이 관리되었는가에 대한 합리적 요구사항에 대응할 것을 권고

규정사례

〈연구 수행 시 이해충돌 관리 명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19조 (이해상충의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제18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연구자는 미성년자(만19세 미만)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 등'이라 함)을 본인의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 사전에 소속 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특수관계인 등과 논문을 공저하고자 할 때 사전에 소속 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39조(금전적 이해상충) ③ 연구자는 상당한 금전적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연구 착수 전에 본교와 다른 연구 참여자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리, 축소 및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자신의 금전적 이익과 연구팀, 연구기관 또는 본교의 금전적 이익이 상호충돌하는 경우에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말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43조(사적 상충) ② 연구자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의 연구 참여에 따라 사적 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 착수 전 또는 연구 수행 중 본교 및 공동 연구자에게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을 통해 보고하고 이를 관리, 축소 및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공저 연구의 발표나 투고 전에 본교 및 해당 학술단체에 특수관계인에 관한 사항을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서[별지 제7호 서식]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사전보고는 본교에서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외부강의 신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임직원 행동기준 제21조의 2(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3.4.>

③ 소관연구기관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각종 대가를 받을 수 없다.

④ 임직원이 외부강의·회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기준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3.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9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회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제13호의 서식에 따라 과기연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2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0. 4. 27.>

④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별표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⑤ 별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과기연에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회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회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2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 ② 교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0호 서식(서울대학교 모바일 앱·포털 신고 가능.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려대학교 교원의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시행세칙 제14조(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① 교원은 사례금을 받는 제13조의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외부강의등 신고서 [별지서식 4]에 따라 대학(원)장 등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원창업 관련 연구윤리 규정〉

고려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 40조(교원창업 및 연구수주시 규정 규정준수의무) ① 본교에 전임으로 소속된 연구자는 금전적 이익과 관련된 창업이나 외부 활동 시에는 이 사실을 본교에 알려야 한다.

② 연구자는 금전적 이익과 관련된 창업이나 외부 활동에 본교의 설비, 인력, 장비 등 본교자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에 불가피하게 본교의 시설이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교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③ 벤처사업과 관련된 연구자는 학생을 직원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하며, 교수로서 학생을 독립적 연구자로 발전시킬 책무가 있다.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19조(업무공백 보완) 교원창업자는 창업활동에 따른 해당 대학 또는 연구소 등에서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활동 등 업무공백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20조(학생지도) 창업교원은 학생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학생을 창업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교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연구자 등 대상 교육 실시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등이 책임있는 연구·직무 수행 및 연구기관의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해야 함

3. 연구자의 책무

1) 이해충돌의 예방 및 관련 지침 준수

- ☞ 연구자들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함
- ☞ 연구자들은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인지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정책 및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등 조치해야 함
 - ※ 이해충돌 관리 대상이 아닌 연구자일지라도 심사평가위원활동, 동료평가활동 등에 참여하는 경우 스스로 관리를 하여 이해충돌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연구자는 이해관계로 인한 금전적 이익 등에 편향되어 연구 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축소하는 등 연구의 진실성 및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지 않도록 소속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의 규정에 따라 이해충돌을 관리하여야 함

☞ 규정사례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연구자의 책무〉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②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략)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39조(금전적 이해상충) ①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연구자는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상당한 금전적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연구 착수 전에 본교와 다른 연구 참여자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리, 축소 및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자신의 금전적 이익과 연구팀, 연구기관 또는 본교의 금전적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말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규정 사례〉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47조(관리의무) ①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자는 이를 보고하고 이해관계가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제거할 의무가 있다.

②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발생할 수 있는 상충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연구자의 연구를 모니터하고, 연구결과와 정확성과 객관성을 점검해야 한다.

④ 이해 상충이 있는 연구자는 연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데이터의 해석과 같은 연구의 중요한 과정이나 특정한 심사결정의 참여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13조(이해상충의 관리 및 보고)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 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대학·학계 등 공적인 집단의 이익과 상충될 때는 이를 본교에 미리 보고하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19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제18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연구자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 등’이라 함)을 본인의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 사전에 소속 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특수관계인 등과 논문을 공저하고자 할 때 사전에 소속 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연구자는 소속 기관의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이해관계의 공개 및 이해충돌 발생,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에 대한 조치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제4절 이해충돌 관리·점검 절차 및 체계

1. 연구수행 시 이해충돌 관리·점검 체계

-  연구기관은 연구관리 체계 내 이해충돌 관리·점검을 위해 소속 연구자가 소속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양식을 제공하고, 이를 접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여야 함
- 특히, 기업 후원 또는 기업과의 공동연구과제수행,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시 필요한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참고

〈연구수행 시 이해충돌 관리·점검(안)〉

- 연구자는 연구 개시 시와 연구 수행 중 ‘이해관계 부존재 확인서(예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 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이해충돌 신고서(예시)’와 필요 시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함
 - 기업 후원 또는 기업과의 공동연구과제수행 시 ‘이해충돌방지서약서(예시)’, ‘이해충돌공개서(예시)’를 기관에 제출
 - 특수관계자의 연구 참여 시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계획서(예시)’를 기관에 제출
- 기관에서는 연구자의 이해관계 신고서와 기타 서식을 바탕으로 이해충돌담당관*이 검토하고 제출한 서류들은 연구의 관련 자료와 함께 보관·관리
 - ※ 연구기관의 장은 이해충돌 관련 교육·상담, 신고 접수·처리, 공정직무수행 점검, 기타 관련 절차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자등 중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
 - 특수관계자의 연구 참여 혹은 전문가 활용의 경우 소속기관장 등이 승인 여부를 결정
- 연구자는 연구결과 발표 시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기관에서는 연구자가 신고한 이해충돌 관계가 공개되었는지 검토

〈연구결과 발표 시 이해관계 공개 표현 (예시)〉³⁴⁾

구분	진술 표현
금전적 이해충돌	• 본 연구를 수행한 이○○과 조○○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본 연구를 수행하였음. 김○○은 (주)대한○○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나 본 연구 수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본 보고서는 (주)○○개발에서 의뢰하여 연구비를 전액 지원받고 수행되었음 • 본 보고서의 연구책임자 박○○은 연구지원기관인 (주)○○기술의 주주이면서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음 • 본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주)○○제약에서 여행경비* 일체를 지원받았음 (* 여행경비:항공권, 숙박비, 식비 등)
인적 이해충돌	• 저자 독고○○과 채○○은 모녀지간으로 채○○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임
직무상 이해충돌	• 본 보고서의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선우○○은 XX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약(무보수) 사외이사로 활동 중임

34) 이효빈, 조진호, 엄창섭. 대학연구자를 위한 이해충돌 예방 길잡이, 한국연구재단 (2022)

주기	구 분 주 체	내 용	비 고
연구개시	연구자	이해관계 부존재 확인서 등을 활용하여 이해충돌 점검 사항 확인 후 이해관계 신고서 등 작성 기업 후원 또는 기업과의 공동연구과제수행 시 이해충돌방지서약서 또는 이해충돌공개서 작성 특수관계자의 연구 참여 신청 시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계획서' 작성	[참고] 이해관계 부존재 확인서 [참고] 이해관계 신고서 [참고] 이해충돌방지서약서 [참고] 이해충돌공개서 [참고] 특수관계인 연구참여 계획서
	연구자 → 기관·대학	연구협약서 제출 시 기관에 이해충돌 관련 서류 제출, 담당부서의 검토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신청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소속 부서장의 공문 등 결재 후 소속기관장(또는 산학협력 단장)이 제출 후 ○일 이내 승인여부를 결정	
연구수행	연구자	이해충돌 발생 시 인지하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해관계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담당관에게 신고	연구개시 시와 동일 서식
	기관·대학	이해충돌담당관의 검토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신청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소속 부서장의 공문 등 결재 후 소속기관장(또는 산학협력 단장)이 제출 후 ○일 이내 승인여부를 결정	
연구결과 발표 시	연구자	학회, 학술지, 학위논문 등에 연구결과 발표 시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를 명시 특수관계인 관련 성과물(논문/학술발표, 지식재산권 발명 등)에 대한 신고서 작성	[참고] 특수관계인과의 논문/학술 발표 공저 시 신고서 [참고] 특수관계인 지식재산권 발명자 참여 신고서
	기관·대학	연구성과 발표 시 이해충돌 관계 공개 여부 검토	

2. 연구자의 외부 활동 수행 시 사전 보고 및 관리체계

연구기관은 연구자의 외부활동이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절차의 마련을 통해 건전한 대외활동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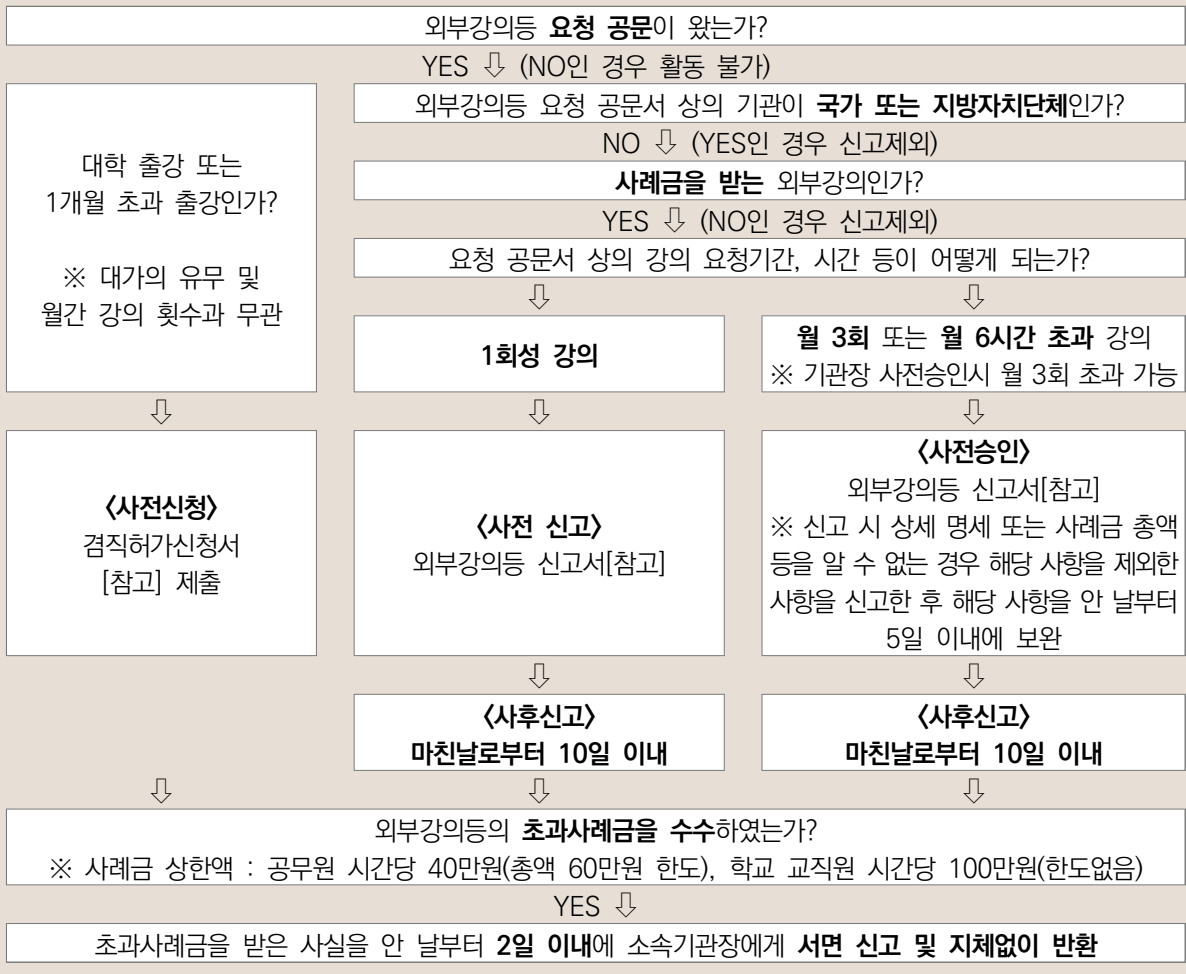
-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법」을 준수하되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절차 마련
- ※ 국가연구개발활동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권익위 유권해석 결과, 법령에 따라 위촉된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평가위원으로서의 활동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

〈연구자 대외활동 수행 시 사전 보고 및 관리 체계(안)〉

- 연구기관은 연구자의 외부활동이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제한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대외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관리
- 연구자에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외부강의등 신고, 사례금 제한, 회수제한 등의 여부를 안내하고 사전 신고 절차 등을 마련
- ※ 필요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활동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제한 가이드라인 (2021) 등의 자료 참고
- 연구자는 개인적인 전화나 이메일 등이 아닌 요청 공문서에 근거하여 외부활동을 수행하고 연구기관이 마련한 신고절차를 준수하며, 외부활동이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복무관리 등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참고할만한 자료 국가연구개발활동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제한 가이드라인 (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연구자 창업 시 직무적 이해충돌 관리

 실험실의 연구활동과 창업기업의 연구활동의 경계가 모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은 관련 규정을 정비

- 대학의 경우, 교원의 창업 등의 활동과 학생의 지도 간 이해충돌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교원이 창업기업의 연구개발이나 사업활동을 위해 대학(원)생을 무단으로 동원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

※ 서울대학교는 학생 및 연구원의 창업기업 참여에 대해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창업기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해야 하며, 창업기업 업무 수행에 따른 정당한 근로계약체결 및 임금 지급과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라고 규정

- 창업 교원은 창업에 참여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에 대해 교육 및 연구 등에 있어서 대학에 대한 지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차별을 해서는 안됨



참고

〈연구자 창업 시 이해충돌 관리 방안(안)〉

- 연구기관은 연구자 창업 승인 신청 시 연구실과 창업기업과의 분리 방안, 학생·연구원의 창업기업 참여 시 관리 방안 등을 반드시 작성한 신청서([참고] 창업 승인 신청서(예시))를 제출받고, 필요 시 기관의 산학협력 및 관련 조직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실시, 회의록 등을 포함하여 기관에 보고 및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함
- 특히, 학생·연구원이 창업기업에 참여 시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창업 기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창업 기업 업무 수행에 따른 정당한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지급·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권고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교원 창업을 위한 가이드북 (2021.8)」

〈학생·연구원의 창업기업 참여〉

-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창업 기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창업 기업 업무 수행에 따른 정당한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지급·4대보험 가입 필요
- 서울대학교와 전속 근로계약을 체결한 총장 발령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겸직 금지되므로 창업기업 참여 불가
- 학내외 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계산할 때 해당 학생·연구원의 창업소득은 포함하지 않음

〈금지 사례〉

- 연구 내용이 유사하거나 논문지도를 이유로 학생의 요청 없이 창업기업 연구업무에 참여시키고 이에 대한 급여 미지급
-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창업 기업에 채용시키는 경우



참고

〈이해관계부존재 확인서(예시)〉³⁵⁾

이해관계부존재 확인서

다음 내용에 해당한다면 ‘그렇다’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니다’란에 ✓로 표시하십시오.

종류	내용	그렇다 (존재)	아니다 (부존재)
금전적	-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으로 인해 연구에 부적절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타 기관의 업무에 관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금전적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기술이전, 창업, 이직 등으로 인해 연구 결과물의 귀속과 관련하여 대학 혹은 소속 기관과 논의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인적	- 사적 인간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연구 및 업무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 -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의 입시 및 각종 평가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음.		
직무적	- 대학에서 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간이나 연구 자원을 외부 활동에 사용하여 본인 및 타 구성원의 고유 업무에 부적절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으로 인해 본인 및 타 구성원의 고유 업무에 부적절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지적	- 이론적 혁신, 종교적·도덕적·철학적 신념이 연구 및 교육 업무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본인의 이론적 입장, 신념과 반대 혹은 경쟁하는 연구 및 연구자를 평가할 가능성이 있음.		

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이며, 허위가 입증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것을 확인합니다.

2022. 00. 00.

성 명 : (서명)

35) 서울대학교 이해충돌 관리 가이드라인 등 참고



참고

〈이해관계 신고서 양식(예시)〉³⁶⁾

이해충돌 신고서			
신청인		소속부서	
신고일자		직위	
1. 이해충돌 발생 기간(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간) 2022.00.00 ~ 2022.00.00			
2. 이해충돌의 종류 (해당 항목에 표시, 중복표시 가능)			
금전적 이해관계	직무적 이해관계	인적 이해관계	지적 이해관계
☐	☐	☐	☐
3. 이해충돌의 내용			
이해충돌 대상자 혹은 대상기관			
대상자의 직무			
대상자와의 관계			
이해충돌 내용	※ 이해충돌의 내용의 경우 최대한 상세히 작성해주세요.		
4. 업무배제신청 여부 (O / X)			
귀하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혹은 발생하여) 업무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배제를 신청할 경우 소속기관은 신청인을 해당 업무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이며, 허위가 입증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것을 확인합니다.			
2022. 00. 00.			
성 명 : (서명)			

36) 서울대학교 이해충돌 관리 가이드라인 등 참고



참고

〈이해충돌방지서약서(예시)〉³⁷⁾

이해충돌방지서약서

지원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 및 성명	(소속) (성명)
연구과제명	

〈이해충돌의 원칙〉

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분석, 해석, 출판, 결과이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연구에는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학문 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이해충돌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적 이해충돌: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인간관계적 이해충돌: 개인적인 친분이거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3. 지적인 이해충돌: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역할충돌에 의한 이해충돌: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5. 기타의 이해충돌: 그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 연구의 진실성과 인류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원칙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다.

• 이해충돌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 이해충돌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지체없이 연구를 중단하거나, 계속할 때에는 이해충돌과 독립된 전문가집단에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한다.

• 이해충돌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 이해충돌의 원칙을 미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며, 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해당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OO 기관장 귀하

37) 서울대학교 이해충돌방지서약서(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참고 일부 변형



참고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계획서(예시)〉³⁹⁾

특수관계인 연구참여 신청서

1. 연구과제 일반사항 (연구계획서 기준)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			
지원기관			연구비	

2. 신청목적(해당란에 √ 표시) : ① 과제 참여연구원 ☐ ② 과제 전문가활용 ☐

3. 특수관계인 등의 유형 (해당하는 모든 란에 √ 표시)

가족(4촌 이내)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기타	지인 자녀	R&E 프로그램 참여자	기타

4. 특수관계인 등의 연구과제 참여 목적 (해당하는 < > 란에 √ 표시하고 간략히 기술)

단순히 연구에 참관하고 배우기 위한 것 (논문 작성과 무관) < >	2. 연구에 참여하여 본인의 아이디어 구현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 참여) < >

5.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특수관계인 등의 역할 및 활동 계획

※ 필요 시 연구계획서 등 상세계획 첨부

상기 특수관계인은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서 전공지식과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 본인의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활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참여연구원 신청 시)

상기 특수관계인은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공지식과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 본인의 연구과제 전문가로 활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과제 전문가활용 신청 시)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소속부서(학과)장: (직인)

- 붙임 1. 학위증명서 1부.
2.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연구실적 목록(해당자에 한함) 1부. 끝.

OO 기관장 귀하

39)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양식 참고 일부 변형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 예시〉⁴⁰⁾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서				
연구과제 개요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지원기관명)	(지원액)	원
	※ 별도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가 아니면 기재하지 않음			
참여연구원	- 참여연구원 A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참여연구원 B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특수관계인의 유형	가족(4촌 이내)		미성년자	
	☐ 배우자 ☐ 기타	☐ 자녀	☐ 지인 자녀 ☐ 기타	☐ R&E 프로그램 참여자
특수관계인과의 공저 논문 발표 계획	학술대회 (Conference)		학술지 (Journal)	
	☐ 국내 ☐ 국외	☐ 국내 ☐ 국외	☐ 국내 ☐ 국외	☐ 국내 ☐ 국외
	<발표 예정 학술대회 개요> - 학술대회명: - 발표논문명: - 개최지 및 개최기간: - 참여저자:		<게재 예정 학술지 개요> - 학술지명: - 논문명: - 논문 투고 예정일: - 참여저자:	
특수관계인 저자포함 사유	※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 성과 창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위주로 기술			
위와 같이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를 위한 관련 사항을 공개하오니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인)

40) 한국연구재단,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판), (2020.04.10)의 양식 일부 변형



〈특수관계인 지식재산권 발명자 참여 신고서(예시)〉⁴¹⁾

특수관계인의 지식재산권 발명자 참여 신고서

1. 발명의 개요

발명의 명칭				
연구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공동출원인	※ 기관내부 외 외부발명자가 있을 경우, 외부발명자의 소속 기재			
발명자정보	발명자명	소속(기관명/부서)	지분(%)	연구책임자와의 특수관계여부
				(Y / N)
				(Y / N)
				(Y / N)
				(Y / N)
※ 특허출원시 출원서에 기재될 발명자 기재				

2. 발명의 요약

※ 발명의 내용을 간략히 확인할 수 있도록 발명의 컨셉을 간략히 기재

3. 특수관계인이 상기 발명의 발명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 특수관계인이 상기 발명의 창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위주로 기술(증빙자료 필수)

4. 발명자 별 지식재산권 지분 산출 및 확인 내역 (발명자 간 합의 사항)

작성기준(%)				
발명자명	연구기획(A)	연구수행(B)	발명자별 총 기여도 (A+B)	서명
각 항목별 합계	100%	100%	100%	

※ 해당 건의 지식재산권에 특수관계가 있음을 특수관계자 외 공동발명자들에게도 인지 필요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오며,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이 일

신청인: (인)

00 기관장 귀하

41) 한양대학교 특수관계인의 지식재산권 발명자 참여 신고서 참고 일부 변형



〈외부강의 등 신고서(예시)〉⁴³⁾

외부강의 등 신고서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활동 유형	[] 강의, [] 강연 [] 기고, [] 발표, [] 토론, [] 심사, [] 평가, [] 자문, [] 의결 [] 기타		
직무관련성	☐ 직무관련성 있음 ☐ 직무관련성 없음 ※ 직무관련성에 대해 간략히 기술		
근무상황 처리	☐ 출장 ☐ 연차(업무시간 외) ☐ 기타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이
이
이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43) 서울대학교 외부강의등 신고서 참고 일부 변형



참고

〈창업 승인 신청서(예시)〉⁴⁴⁾

창업 승인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임용일자
창업(예정) 회사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예정)일자		자본금 천원
	창업분야	업종/업태	고용인력 명
창업신청 사유			
창업기간 추진계획	(강의 및 학생지도, 연구계획 등) ※ 유의사항: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반드시 작성 1. 연구실과 창업기업과의 분리 방안 2. 교육 및 연구의 누수 방지 방안, 학생·연구원의 창업기업 참여 시 관리 방안 3. 창업기업으로서의 학교 자산 장비 사용 시 장비소관 기관(부서)로의 사용료 납부 및 관리 방안		
추천사유	(기관장 추천)		
위와 같이 창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소속 부서장 : (인)			
OO 기관장 귀하			

44) 서울대학교 창업 승인 신청서 참고 일부 변형

IV

부록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 해설

제1절 개요

 새롭게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을 기존 규정 등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개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연구개발 현장에서 관련 주체의 법적 지위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본 길잡이는 관련 법령 및 처벌규정을 쉽게 소개하여 연구자 등을 법적으로 보호하되, 법령 규정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가 연구개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이해충돌방지법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이 시행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공공연구부문에서는 임직원 행동강령(기준)을 제정 운영하였는바⁴⁵⁾, 이해충돌방지법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공공연구부문은 이해충돌방지법에 포함된 대부분의 법령규정을 이미 준수하고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각 기관별로 아직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규정만을 신설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연구부문의 연구자등이 겪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함

제2절 연구자 개인 차원의 이해충돌 유형과 대응

1.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자등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것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고 회피⁴⁶⁾를 신청하여야 함

- 신고 및 회피 신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자 등이 해당 연구자등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 소속기관장은 연구자등이 이해충돌로 인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 수행의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45) 본 가이드라인은 공공연구기관의 임직원 행동강령(기준) 중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임직원 행동기준(개정 2016. 3.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개정 2022. 1. 1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직원행동강령 실천요령(개정 2022. 3.29.)」을 참고 규정사례로 제시함

46) 회피(回避)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직무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기피(忌避)는 당사자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 등이 당사자 본인을 직무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함



참고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사례 예시〉

- Q)** 정부출연연구기관인 A연구원에 재직하는 B연구위원은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B연구위원은 제안서 심사·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제안서가 본인의 아들이 부서장으로 근무하는 C회사에서 작성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 아들이 부서장(관리자)으로 근무하는 회사(사적이해관계자)라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평가위원 회피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대상 직무는 연구개발 현장에서 개인적 친분이나 갈등 등 사적인 인간관계가 연구수행, 평가, 심사, 채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포함함
- 연구자등이 감사, 평가, 판정, 예산배분 등의 직무를 하는 경우
 - 연구자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에 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참여하는 경우
 - 각종 심사, 평가 등에서 자신의 지도학생, 동료, 가족, 지인 등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 등이 있음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제18191호)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 ☞ 연구자들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서 사적이해관계자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함
- 직무관련자는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하는 상대방을 의미함
 - 사적이해관계자는 연구자들의 자신, 가족 등 사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함

📖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제1819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⁴⁷⁾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⁴⁸⁾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⁴⁹⁾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⁵⁰⁾

47)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4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② 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자는 소속기관장에게 해당 연구자등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 연구자등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연구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자등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소속기관장은 적절한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자등을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 소속기관장은 해당 연구자등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또는 전보 중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그러나 해당 연구자등을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연구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 확인·점검을 전제로 해당 연구자등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법률 제18191호)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5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③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등에 관한 규정은 여러 연구기관의 연구윤리규정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임

규정사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임직원 행동기준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급 상급자 또는 행동기준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신설 2016.3.4.>
5.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신설 2016.3.4.>
6. 소속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6.3.4.>
7.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6.3.4.>

8. 최근 2년 이내에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6.3.4.>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16.3.4.>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급 상급자 또는 행동기준책임자는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급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표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8. 과기연의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1.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별표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표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9.>
-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장에게 별표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4.>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⑥ 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표 9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2.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연구자등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2년 이내 퇴직자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소속 기관의 2년 이내 퇴직자가 외부 이해관계자의 청탁 등을 받고 연구자등과 직무관련 사적 접촉을 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자등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함임



참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사례 예시>

- Q) 정부출연연구기관인 A연구원에 재직하는 B연구위원은 C회사의 기계장비 시험·인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C회사에는 1년 전에 A연구원을 퇴직한 D박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날 D박사로부터 다음 주말에 골프를 함께 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 B연구위원이 D박사와 함께 골프를 치기로 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제18191호)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기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택지 개발, 지구 지정가 같은 부동산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은 본인, 배우자, 자신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이 해당 개발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해당 기관이 직접 개발 및 지구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개발 업무를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해당 법인에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은 해당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봄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에 규정된 부동산 보유·신고 대상 업무 중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은 대표적으로 연구개발특구 및 로봇랜드 등을 담당하는 기관임
- 단, 이 규정은 모든 연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에 규정된 부동산 보유·신고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연구개발특구 및 로봇랜드 등의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은 본인이 직접 부동산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된 것 만으로도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대상에 포함됨



참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사례 예시〉

Q)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A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관한 제반 실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재단에 재직하는 B본부장은 재단에서 지구 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B본부장은 자신과 함께 거주하는 장모님께서 연구개발특구 지정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보유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제18191호)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08호)

제7조(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서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란 별표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별표]

부동산 개발 업무(제7조 관련)

2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3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0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신청 및 지정,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작성 및 승인
3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및 승인
36. 「국가재정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한다)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한다)

비고

1.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해당 법인에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은 해당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2. 제36호 및 제37호는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연구자들은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또는 특수관계사업자⁵¹⁾가 연구자들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⁵²⁾는 제외)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전적 거래, 부동산 거래, 물품·용역의 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거래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51)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 또는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52)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함
-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함
-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함



참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사례 예시〉

- Q)** 정부출연연구기관인 A연구원에 재직하는 B연구원은 작년부터 신형반도체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C회사(B연구원의 직무관련자)의 D상무는 최근 음식점을 경영하는 B연구원의 아내에게 5천만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 직무관련자와의 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투자(금전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투자하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제18191호)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 신고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기관들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중에서 금전을 빌려주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규정사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임직원 행동기준 제22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30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표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표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5.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연구자등은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기관의 직무와 통제 범위를 벗어난 외부활동, 영리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됨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소속 연구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함
 - 소속 연구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소속 연구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함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함



참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사례 예시〉

- Q) 정부출연연구기관인 A연구원에 재직하는 B연구위원은 작년부터 신형반도체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C회사(B연구위원의 직무관련자)의 D상무는 B연구위원에게 '반도체 성능 및 생산 효율성 개선'에 관한 소정의 자문비를 포함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 C회사는 B연구위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며 자문 역시 소속기관의 직무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해당 자문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법률 제18191호)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됨

관련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1호)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6. 재산상 이익 목적 직무상 비밀 이용 제한

연구자등(퇴직 후 3년 이내 포함)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연구기관의 미공개정보⁵³⁾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밖에 사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되며,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밖에 사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됨



참고

〈부동산 신고 사례 예시〉

Q) 정부출연연구기관인 A연구원에 재직하는 B연구위원은 백신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B연구위원의 대학 동기를 통해 연락을 받은 C컨설팅의 D이사는 백신개발 정보를 알려주면 고급 승용차 한 대를 제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백신개발 정보는 미공개정보에 해당하며, 그 정보를 미리 확보한 제약회사는 향후 백신공급에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어서 이해충돌 우려가 큼니다. 따라서 이를 민간기업 등에 제공하여 재물을 얻는 것은 금지됩니다.

53)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제18191호)

-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재산상 이익 목적 직무상 비밀 이용 제한 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여러 연구기관의 연구윤리규정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관련 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32172호)

-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규정사례

〈직무상 비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임직원 행동기준 제16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3.4.〉

1. 연구회 소관 정책의 검토·수립 및 집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회계, 재정 및 연구개발사업 등의 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관한 직무〈신설 2016.3.4.〉
2.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 관련 정보〈신설 2016.3.4.〉
3. 기타 연구회와 소관연구기관 직제와 관련된 직무〈신설 2016.3.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단, 「출자회사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임직원의 주식취득은 본 조의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 2. 19.>

② 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임직원이 재직기간 중에 알게 된 특정업체의 연구개발, 자금 및 경영여건 등과 관련한 중요 정보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반에 공개되기 이전의 정보를 말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직원행동강령 실천요령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원 창업기업(EVA, 연구소기업)에 창업참여자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연구원 창업기업(EVA, 연구소기업)의 공개모집의 경우에 있어서의 주식취득은 예외로 한다.

7. 민간기관 재직자 공무수행사인 활동시 의무

- ☞ 민간기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에게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재산상 이익 목적 직무상 비밀 이용 제한 의무가 부과됨
- 공무수행사인은 그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참고

<민간기관 재직자 공무수행사인 활동시 신고 사례 예시>

- Q) A사립대학교 B교수는 최근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민간위원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R&D사업의 추진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합니다. B교수는 첫 회의 심의안건에 A대학과 관련 사업이 포함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 B교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A사립대학교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직무관련자이고 동시에 사적이해관계자가 됩니다. 따라서 B교수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에게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B교수가 해당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법률 제18191호)

제16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 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임

관련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81호)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3절 연구기관 차원의 이해충돌 유형과 대응

1.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재직자 가족채용 제한

-  연구기관은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소속 고위직 재직자의 가족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 등을 채용하여서는 안 됨
- 이 때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하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해당됨
-  그러나 연구기관은 재직자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한 경우 재직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이 이해충돌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음
-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등의 경우에는 가족채용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연구기관은 우수한 인력에 대하여 재직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꺼릴 필요는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한 채용절차를 준수하여 채용이 가능할 것임



참고

〈연구기관의 재직자 가족 채용 사례 예시〉

- Q) 정부출연연구기관인 A연구원에서는 경력직 연구자를 공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 때 A연구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여 재직 중인 연구자의 자녀는 응시하지 말도록 공고를 내려고 합니다. 적절한 것일까요?
- A) 아닙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원칙적으로 기관 재직자의 직계혈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제18191호)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나.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다.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2.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재직자 관련 수의계약 제한

-  연구기관은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소속 고위직의 재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재직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그러나 연구기관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관련 법령에서 이를 허용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체결이 가능함
 - 예를 들어,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험실창업 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할 수 있음



참고

〈연구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사례 예시〉

- Q) 정부출연연구기관인 A연구원에서는 휴직상태인 소속기관 고위직 연구자B가 실험실기업으로 창업한 B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B기업은 공동연구대상 기술력은 높으나 기업 규모는 매우 영세하여 공개경쟁시 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체결은 가능할까요?
- A) 아닙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원칙적으로 기관 소속 고위 재직자가 창업한 기업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제18191호)

제12조(수익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익계약(이하 “수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익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08호)

제14조(수익계약 체결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익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57호)

제26조(수익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557호)

제25조(수익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계약을 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라.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 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제4절 이해충돌 대응 체계 및 연구자·연구기관의 책무

1. 이해충돌 예방

-  이해충돌 예방을 위해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들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가 책임있는 연구 수행 및 연구기관의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해야 함
 - 연구자는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이해관계의 공개 및 이해충돌 발생,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에 대한 조치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제18191호)

-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규정사례

〈연구윤리 교육〉

-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30조(서울대학교의 책무)** ① 서울대학교는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윤리를 교육하여야 한다.
- ② 서울대학교는 연구윤리 교육을 위하여 연구윤리 강사진의 확보,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1조(연구자의 책무)** ① 모든 연구자는 연구윤리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연구자는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원 및 학생으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32조(연구윤리교육의 내용)** 연구윤리교육은 본 연구윤리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전공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구체적 사례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이해충돌 방지 교육 이외에도 이해충돌에 대한 신고와 처벌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이해충돌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노력을 강화할 수 있음
- 앞서 살펴본 연구자 개인 차원의 이해충돌 대응, 연구기관 차원의 이해충돌 대응뿐만 아니라 제3자 등의 이해충돌 신고, 연구기관 내에서 이해충돌 대응을 전담하는 이해충돌담당관의 지정, 이해충돌 규정 및 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벌·과태료 등을 통해서 연구자의 이해충돌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음



참고

〈이해충돌 신고, 대응, 처벌 체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제시된 이해충돌 신고, 대응, 처벌 체계는 다음과 같음

신고 및 제한		대응	위반시 처벌
연구자등 개인 차원의 대응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법 제5조)	14일 이내 신고·신청 → 직무 계속수행, 정지, 대리 등 조치(법 제7조)	시정명령·직무중지(법 제21조) 부당이득 환수(법 제22조) 징계(법 제26조) 과태료(법 제28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	신고	시정명령·직무중지(법 제21조) 징계(법 제26조) 과태료(법 제28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법 제6조)	14일 이내 신고 → 직무 계속수행, 정지, 대리 등 조치(법 제7조)	시정명령·직무중지(법 제21조) 부당이득 환수(법 제22조) 징계(제26조) 과태료(법 제28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법 제9조)	14일 이내 신고 → 직무 계속수행, 정지, 대리 등 조치(법 제7조)	시정명령·직무중지(법 제21조) 징계(법 제26조) 과태료(법 제28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법 제10조)	금지 (단, 소속기관장 허가시 예외적 허용)	시정명령·직무중지(법 제21조) 징계(법 제26조) 과태료(법 제28조)
	재산상 이익 목적 직무상 비밀 이용 제한(법 제14조)	금지	시정명령·직무중지(법 제21조) 징계(법 제26조) 징역 또는 벌금, 몰수(법 제27조)
	민간기관 재직자 공무수행사인 활동시 의무(법 제16조)	법 제5조, 제7조, 제14조 준용	시정명령·직무중지(법 제21조) 부당이득 환수(법 제22조) 징계(법 제26조)
연구기관 차원의 대응	재직자 가족채용 제한 (법 제11조)	금지 (단, 예외적 허용)	시정명령·직무중지(법 제21조) 과태료(법 제28조)
	재직자 관련 수의계약 제한 (법 제12조)	금지 (단, 예외적 허용)	시정명령·직무중지(법 제21조) 과태료(법 제28조)
제3자 등의 이해충돌 신고(법 제18조)		신고 → 조사·감사·수사	공소·징계 등(법 제19조)
이해충돌 신고자 등의 보호(법 제20조)			징역 또는 벌금(법 제27조) 과태료(법 제28조)
연구기관의 이해충돌담당관 지정(법 제25조)			

2. 이해충돌 신고 및 처리 절차

-  누구든지 이해충돌 발생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 연구기관은 이해충돌 신고 등을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됨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제18191호)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제1호에 따른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연구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라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등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연구자율성과 이해충돌의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규정을 위반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장은 해당 연구자등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외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등이 이루어짐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제18191호)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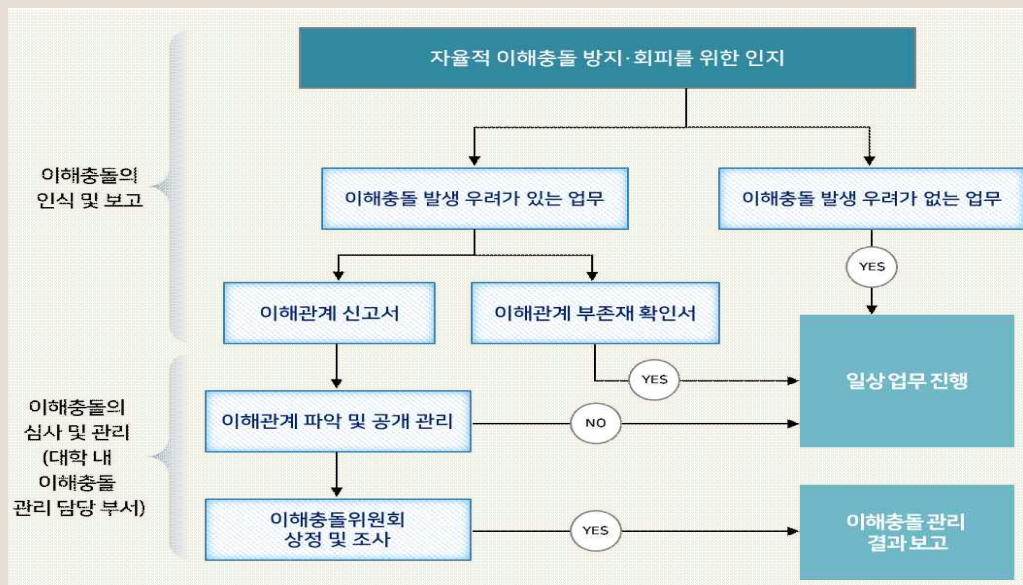
〈이해충돌의 관리 절차 예시〉⁵⁴⁾

□ 이해충돌의 인식 및 보고

- 구성원은 연구와 관련한 유의미한 이해관계를 대학 및 관련 기관의 정책에 따라 공개 또는 신고해야 함
- 이해관계에 특별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 및 이해충돌 관리 담당 부서가 정한 기간 안에 알리고, 해당 직무를 회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이해관계에 특별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 및 이해충돌 관리 담당 부서가 정한 기간 안에 알리고, 해당 직무를 회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이해충돌의 심사 및 관리

- 구성원과 대학은 다양한 유형의 이해관계로 인해 연구에 부적절한 영향 또는 편향이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를 회피, 축소,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구성원은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에서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해관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충돌의 주체(구성원 이름, 상대 기관명), 충돌내용에 대한 설명, 완화 및 해소 방법에 대한 설명
- 이해관계 신고가 이루어지면 대학 내 이해충돌 관리 담당 부서 및 담당자는 의사결정자로서 공개된 사안에 대해 이해충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사안에 적합한 관리 방법을 제시해야 함
- 대학 내 이해충돌 관리 담당 부서 및 담당자는 필요 시 이해충돌위원회 등을 통해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고 자세한 심사 결과를 구성원에게 통보해야 함
- 대학 내 담당자는 구성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해충돌 발생 시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함
-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조사, 심사 및 관리 방법은 기관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검증 절차에 따라야 함



출처: 서울대학교 연구진 작성

〈서울대학교 이해충돌 관리 절차〉

54) 서울대학교 이해충돌 관리 가이드라인 등 참고



참고

〈이해충돌 심사의 원칙〉

- 이해충돌 심사 기준은 과학 연구의 창의성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의 객관성과 진실성, 나아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등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는 과학적 창의성과 혁신을 저해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축소, 협력연구나 자금 지원을 지연시키는 등 과학연구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이해충돌 심사 시 고려사항
 - 이해관계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해관계가 사고 과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적절한 체계와 절차가 갖추어져 있는가? 이해충돌 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금전적, 인적 자원이 있는가?
 - 이해충돌 심사 결과에 따른 과학이나 사회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부정적·긍정적인가?

3. 이해충돌담당관의 지정

- 연구기관의 장은 이해충돌 관련 교육·상담, 신고 접수·처리, 공정직무수행 점검, 기타 관련 절차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자등 중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함
-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이 이해충돌담당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음
 - 민간 기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충돌담당관을 지정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해충돌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담당관에 준하는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제18191호)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6.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7.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②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32172호)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대하여 행동강령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참고

〈이해충돌 담당 부서의 업무 예시〉⁵⁵⁾

- 이해충돌위원회에 대한 행정지원(회의준비, 안건작성, 심의결과 통보 등)
- 이해충돌 심사 대상이 되는 구성원의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관리
- 임원, 보직자 및 연구자에 대한 이해충돌 검토 및 심의안 작성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제8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서 규정하는 신고에 대한 접수 및 처리
- 구성원에 대한 이해충돌 교육 및 상담 실시
- 특정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대해 외부적 질문에 대한 답변(공개)
- 연구기관의 이해충돌 사례조사, 통계조사 및 자료 보관
- 기타 이해충돌위원회에서 처리하라고 결정한 사항

4. 이해충돌 관련 규정 등의 위반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연구자등이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신고 등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등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소속기관장은 연구자등이 이해충돌 예방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해당 연구자등이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연구자등이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함

55) 서울대학교 이해충돌 관리 가이드라인 등 참고

📖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제18191호)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부당이익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소속기관장이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벌칙 이외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징역, 벌금,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

📖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제18191호)

제2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제16조에 따라 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같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⑤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제1항의 경우 그 정을 아는 제3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이해충돌 예방 책무

-  연구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함
 - 연구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연구자등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함
-  연구기관은 연구자등이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연구기관은 연구자등이 위반행위 신고와 같은 이해충돌 예방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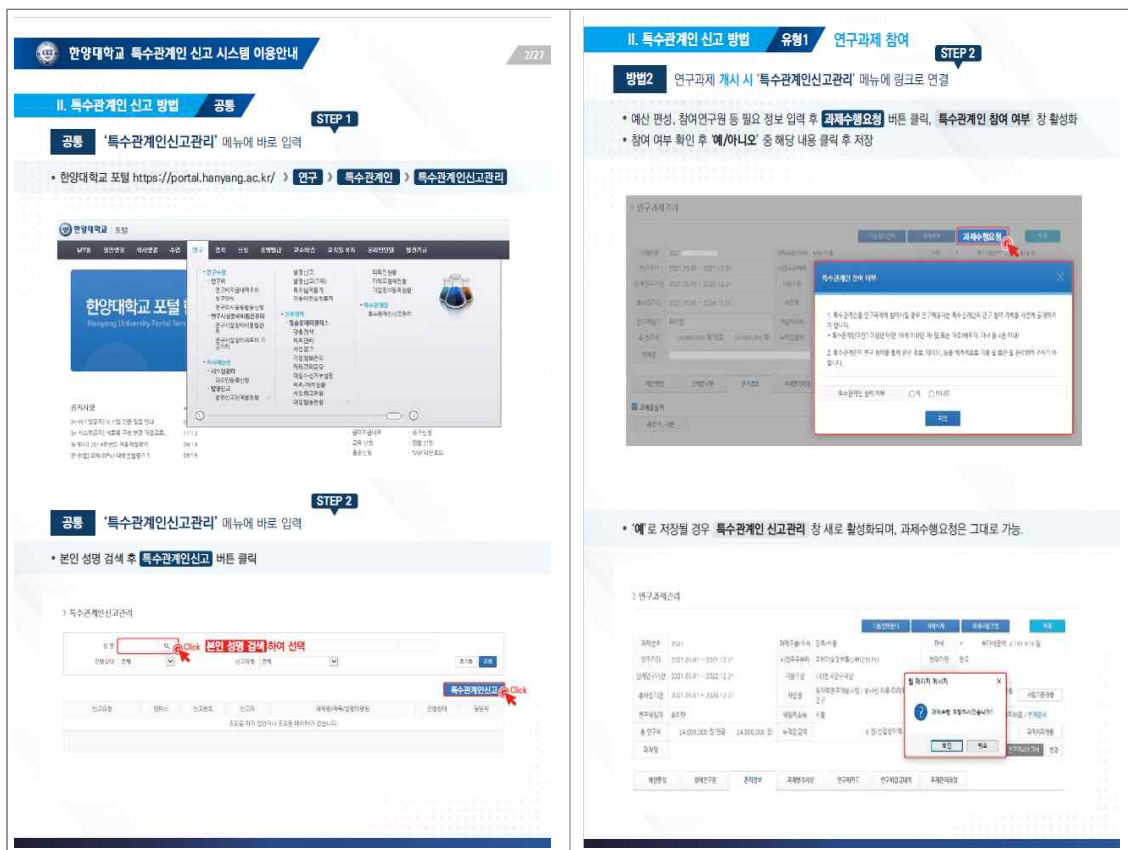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제18191호)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에 대한 윤리 확립을 위해 참여유형별로 특수관계인 신고 절차 확립 및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고 시스템 구축

연구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의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에 대해 쉽게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교내 연구 시스템 간 연동을 통해 1) 성과물 참여, 2) 연구과제 참여, 3) 지식재산권 발명 참여 시에 안내 문구와 더불어 바로 신고 메뉴인 ‘특수관계인 신고 관리’로 이동할 수 있게 구축



3. 특수관계인 신고 매뉴얼 제작·배포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신고에 대한 근거, 대상, 절차 등에 대해 정리한 연구자용 ‘특수관계인 신고 시스템 이용 안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

특수관계인 신고시스템 이용안내

2021.08

한양대학교

HANYANG UNIVERSITY

I. 특수관계인 신고 개요

특수관계인 신고 : 관련근거

구분	근거 규정
유형별 연구과제 참여	고대연구자평가인용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신고) 고대연구자평가인용특수관계인(연구자 또는 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친족) 참여 시 보고 및 승인요령 제24호 참조. (본소실보 2020. 12.31.)
유형별 논문/학술발표 등 성과물 참여	연구과제규정 제41조의 2 사칙 관계로 인한 감형 - 연구를 제안, 수행, 보고 및 심사하는 당사 사칙 관계를 지체하여, 소속기관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이다. - 연구자는 미승인자 또는 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친족(이하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 자문 또는 연구 조야자를 둘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기피대상이다.
유형별 지식재산권 발명 참여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금지 규정 제41조 제2항, 특수관계로 인해 연구 참여 (논문, 학술지, 연구보고서, 특허출원 등)의 연구자(공동)를 불허하고 있는 경우 본교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동연구자 및 학술단체 (연구자)가 이를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제3항과 관련하여 국가 및 관련기관에서 정한 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야 하며, 본교의 보고 및 승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본소실보 2020. 12.31.)

※ 고대 연구자 평가인용의 부합한 자치 의사 제정을 위한 연구자평가제정(연구자평가위원회, 2020.4.)

※ 관련규정 제24호 관련자료 홈페이지에서 확인 : hanyang.ac.kr/특수관계인/제41조 규정 (특정)

특수관계인 신고 : 신고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고대 모든 연구자

※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연구자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 연구자의 연구과제에 특수관계인을 참여시키는 경우
- 연구자의 논문/학술발표 등의 성과물에 특수관계인을 참여시키는 경우
- 연구자의 지식재산권 발명(특허)에 특수관계인을 참여시키는 경우

특수관계인명?: 미상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친족

특수관계인 신고 : 신고절차

```

graph TD
    A[발명  
신고자] -- "제출서류 보완" --> B[발명  
신고자]
    B -- "특수관계인 신고" --> C{담당자  
검토  
YES}
    C -- "NO" --> B
    C -- "YES" --> D[위원회  
회의  
YES  
(8인/가결)]
    D -- "내부검토  
YES  
(8인/가결)" --> E[신단장  
결지]
    D -- "위원회 개최" --> F[위원회  
회의  
NO]
    F -- "결재필요 (위원회 결의)" --> E
          
```

제출서류 보완

제출서류 보완 NO

위원회 개최 NO

내부검토 YES (8인/가결)

위원회 회의 YES (8인/가결)

위원회 회의 NO

결재필요 (위원회 결의)

구분	현행 대비 차이점
유형별 연구과제 참여	특수관계인 신고 미흡의 무관하게 연구과제 참여 및 성과를 일괄 가능
유형별 논문/학술발표 등 성과물 참여	현, 특수관계인이 존재하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리를 연구자에게 있음
유형별 지식재산권 발명 참여	특수관계인 신고를 사전에 문명하여야 발명신고서 작성(발명 참여) 가능

4. 신고 프로세스 홍보 및 안내

 특수관계인 이외에도 연구의 전주기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신고 유형에 대한 절차를 목록화하고, 연구자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연구자 대상의 각종 교육, 교원 연수회, 공문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프로세스를 안내

제5장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

V

제5장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 127

제1절 개요 129

- 1 인간 대상 연구의 개념 129
- 2 인간 대상 연구 관련 법·규정 131
- 3 동물실험의 개념 131
- 4 동물실험 관련 법·규정 132
- 5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실험 관련 길잡이의 목적 133

제2절 인간 대상 연구 134

- 1 인간 대상 연구의 원칙 134
- 2 연구개발기관의 책무 136
- 3 위원회의 책무 138
- 4 연구자의 책무 140

제3절 동물실험 143

- 1 동물실험의 원칙 143
- 2 연구개발기관의 책무 144
- 3 위원회의 책무 147
- 4 연구자의 책무 149



제5장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

제1절 개요

1. 인간 대상 연구의 개념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인체를 이용한 연구, 인체에서 유래한 혈액, 체액, 조직 등을 이용한 연구, 의생명과학연구, 행동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교육학 연구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서는 인간 대상 연구를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 정의하고 있음
- ※ 약사법에서는 따로 ‘인간 대상 연구’를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임상시험’으로 정의

관련 법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83호)

제2조(인간대상연구의 범위)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간대상 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2. “연구대상자”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52호)

제2조(인간대상연구의 범위)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란 다음 각 호의 연구를 말한다.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약사법」(법률 제18307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약력(藥力)·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제외한다.

- 각 기관의 특성별로, 혹은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인간 대상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인간 대상 연구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생명윤리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의료기기임상시험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등



참고

〈인간대상연구의 종류〉⁵⁶⁾

구분	내용	해당 연구
중재 (intervention) 연구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어떤 침습적 행위(식품, 의약품 등의 섭취, 혈액채취 등)를 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시각, 청각 등에 자극 또는 스트레스 유발) 물리적 개입이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얻어 이용하는 연구	「약사법 시행규칙」 내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승인된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수행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임상시험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수행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그 밖에 화장품·건강기능식품·생의약제·생물학적 제제 등에 대한 안전성·효능·효과를 보기 위해 해당 물질을 직접 연구대상자에게 적용한 후 그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상호작용 (interaction)을 통한 연구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란,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를 선정하고 연구대상자의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나 행동관찰 등으로 자료를 얻어 그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등을 수행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를 대면하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자료를 얻는 연구
		그 밖에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를 접촉하고 조사 및 관찰 등을 수행하는 연구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한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연구대상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집하지는 않지만, 연구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	실험적 연구와 조사 등을 통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가 복합적으로 수행되거나, 관찰 연구가 포함된 연구 등 위의 연구유형들이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	

규정사례

〈인간 대상 연구의 범위 명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20조(원칙)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임상시험, 의생명과학, 행동과학 등을 포함한다)의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건강 및 복지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고려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48조(사전허가취득 의무) 인간 피험자* 및 조직을 이용한 연구(이하 ‘임상시험’이라 한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 및 복지보호를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한양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43조(임상시험과 임상연구의 원칙) ① 임상시험(인체를 이용한 연구)과 임상연구(인체에서 유래한 혈액, 체액, 조직 등을 이용한 연구)는 본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피험자(subject)는 생명윤리법에서는 연구대상자, 약사법에서는 임상시험대상자라고 명시하고 있음

56) “인간대상연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2021.11.25. 접속), <https://www.irb.or.kr/menu01/RegulationTarget01.aspx>

2. 인간 대상 연구 관련 법·규정

-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은 관련 법·규정 및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지침이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연구대상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함. 이러한 지침이나 규정들은 연구대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고려하였을 때 위험 수준이 적절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함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 관련 부처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법·규정이 상이할 수 있어 연구자는 인간 대상 연구의 계획 및 연구수행 시 해당하는 법·규정을 파악·숙지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개발기관들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 지침이나 규정, 절차를 수립하고 연구자를 지원해야 함



참고

〈인간 대상 연구 관련 법률〉

법률명	소관 부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약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 동물실험의 개념

-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의미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하 실험동물법) 제2조(정의)제1호)
-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의미함 (「실험동물법」제2조(정의)제1호)
 - 「동물보호법」에서의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포유류, 조류, 그리고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척추동물로 정의하고 있음
 - 「실험동물법」의 적용 대상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생물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 마약의 안전관리·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과 그 동물실험시설의 관리 등에 적용하며, 그 외 목적으로 수행하는 동물실험과 동물실험시설은 「동물보호법」에 따름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4.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실험동물법」 (법률 제15944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2.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그 동물실험시설의 관리 등에 적용한다.

1.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생물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
2. 마약의 안전관리·품질관리

규정사례

〈동물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정의 명시〉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57조(사전허가취득 의무) 살아있는 척추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을 이용한 연구(이하 ‘동물실험’이라 한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험동물의 권리와 안전 및 복지보호를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교 주관 위원회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한양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46조(동물 실험 연구의 원칙) ① 인간 외 살아있는 척추동물을 연구와 교육에 사용할 경우, 연구자는 동물의 윤리적 사용,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동물을 사용하는 실험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동물실험 관련 법·규정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관련 법·규정 및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관련된 지침이나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동물실험과 관련된 주요 법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하 실험동물법)」 등이 있으며,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법」에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동물실험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법」의 주요 차이점에 대한 내용은 [별첨 4-1]을 참고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 관련 부처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법·규정이 상이할 수 있어 연구자는 동물실험의 계획 및 연구수행 시 해당하는 법·규정을 파악·숙지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개발기관들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 지침이나 규정, 절차를 수립하고 연구자를 지원해야 함



참고

〈동물실험 관련 법률〉

법률명	소관 부처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5.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실험 관련 길잡이의 목적

- 📖 연구자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인간 대상 연구와 동물실험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역할과 책임의 기본적인 원칙 및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위원회 이용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과학기술의 발달이 생명에 대한 이해 및 생명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부작용과 위험 및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연구자는 과학기술 발달의 윤리적 함의에 대하여 고찰하고 사회적 책임의식과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 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와 관련한 내용을 자체 연구윤리 규정에 포함해야 함에 따라 자체규정 마련 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함
 - 본 길잡이에서는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실험 관련 법·규정을 연구개발기관이 갖춰야 하는 연구윤리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관련 법·규정에 따라 기관연구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위원회 등의 규정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제·개정이 필요치 않음
 - ※ 연구 관련 부처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법률이 다를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연구를 수행해야 함
 - 길잡이를 참고하되 구체적인 세부규정은 각 기관별로 기관의 특성과 수준에 맞게 제·개정함

제2절 인간 대상 연구

1. 인간 대상 연구의 원칙

- ☞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존엄 및 복지, 이익을 항상 보호해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편견 없이 공정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음
 -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목적이 연구대상자의 개인의 권리와 이익보다 우선될 수는 없음. 연구 참여로 인해 연구대상자가 감수해야 하는 손상이나 불편, 비용 등 건강, 심리, 복지, 사회적인 측면의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에는 연구대상자 또는 사회에 미치는 위험에 상응하는 기대되는 이익이 있어야 함⁵⁷⁾
 -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편익을 최대화시키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부터 연구대상자를 보호해야 하며, 연구 설계 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위험과 이익을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가급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를 공정하게 선발·배치해야 하고 충분히 의학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집단에게도 적절한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함. 또한, 정신지체자, 장애인이나 특정 민족, 성별 등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차별하거나 불공정하게 대우해서는 안 됨



참고

〈의·생명과학 연구에서 성별과 젠더 요소의 고려〉⁵⁸⁾

- 개인마다 다른 특성 중에서도 성별과 젠더는 특히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며, 개개인의 성별과 젠더를 고려해야만 남녀 모두를 위한 예방법 및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음. 미국에서는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3단계의 경우 소수 인종과 여성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여 신약의 효능을 조사하고 있으나 기초 연구(basic research)나 전임상시험 연구(preclinical research)의 경우 아직 성별이 중요한 생물학적 변수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연구에 사용된 실험동물이나 세포의 성별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은 2014년에 의·생명과학 연구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척추동물과 인간에 대한 연구 설계 및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실험동물이나 세포를 사용하는 전임상연구에서도 성별을 중요한 생물학적 변수로 연구 계획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정책에 따라 2016년 1월 이후 미국 NIH에 연구비를 신청하는 모든 연구계획서는 척추동물 이상을 대상으로 동물연구를 수행할 때 성별을 생물학적 변수로 고려하여 암, 수를 모두 포함시키거나 그럴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함

- ☞ 연구대상자는 연구자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강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참여를 거부할 권리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57)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자를 위한 윤리 지침 (2019) p.26

58) 이혜숙, 이숙경, 김영미, 여의주, 백희영, 성별과 젠더를 고려한 연구 가이드라인: 의·생명과학 분야, 젠더혁신연구센터, 한국여성과학(20)

- ❏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연구대상자는 다른 연구대상자들과 동일한 연구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취약성으로 인해 더 높은 위험에 처하거나 더 많은 부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며, 동의과정이나 위험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해야 함
- 특히, 임산부, 인간 태아 및 신생아, 아동 등을 연구대상자로 하는 생명의학 및 행동과학 연구에서는 부가적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련 법령

「생명윤리법」(법률 제17783호)

- 제3조(기본 원칙)** ① 이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들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② 연구대상자들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들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 ③ 연구대상자들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④ 연구대상자들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 ⑤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 ⑥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고,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650호)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內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Vulnerable Subjects)란 임상시험 참여와 관련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의과대학·한의학대학·약학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의 학생, 의료기관·연구소의 근무자, 제약회사의 직원, 군인 등을 말한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 제27조에 따른 집단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실업자, 빈곤자,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소수 인종, 부랑인, 노숙자, 난민, 미성년자 및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말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규정사례

-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20조 (원칙)**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임상시험, 의생명과학, 행동과학 등을 포함한다)의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건강 및 복지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 공인된 기구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연구대상자의 건강과 복지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연구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연구대상자는 동의과정이나 위험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 ⑤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고려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49조(기본원칙) ① 임상시험은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임상시험관리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피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연구가 피험자의 신체적·정신적 존엄성 및 그들의 인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③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불필요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과 상해없이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피험자는 실험을 중단할 자유가 있다.
- ④ 연구자는 피험자가 연구자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강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연구자는 피험자의 편익을 최대화시키고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 ⑥ 연구자는 정신지체자나 특정 민족, 성별 등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편견 없이 편익과 위험을 공정하게 분배할 의무가 있다.
- ⑦ 임산부, 인간 태아 및 신생아, 아동 및 수감자 등을 피험자로 사용하는 생명의학 및 행과학 연구에서는 부가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기관의 책무

 연구개발기관은 연구 대상자의 안전과 권리 및 복지 보호를 위하여 지원할 책임을 갖고 있으며, 지원 사항은 인간 대상 연구 관련 규정, 지침 및 절차의 수립,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설치, 담당부서 지정 및 운영, 연구윤리교육 제공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기관별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생명윤리심사위원회,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임상연구심사위원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관의 상황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및 명명함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에 따라 인간 대상 연구에 관한 윤리와 관련한 내용을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포함해야 하며, 관련 법·규정에 따라 규정 또는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함

 IRB는 연구에 참여하는 인간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한 중요 보호 수단의 하나로, 연구개발기관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 IRB를 설치하고 독립적인 심의 활동을 보장해야 함

- 위원회의 독립성은 그 운영에 있어 기관 내 다른 조직·부서나 다른 위원회, 연구자와 연구의뢰자 등으로부터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위원회가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그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음

관련 법령

「생명윤리법」(법률 제17783호)

제11조(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기관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은 인간 대상 연구 윤리 관련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함

- ※ 연구개발기관의 환경에 따라 담당부서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담당자를 배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 지정 시 업무 상의 이해충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기관 내 연구자 IRB 교육, IRB위원의 교육 및 평가
- 인간 대상 연구 관련 규정 마련
- 연구대상자/연구자 헬프데스크 운영
- IRB심의를 위한 제반 행정업무 지원 (과제 접수, 심사, 통보, 과제 관리)
- 규제 기관(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의 IRB실사 또는 인증·평가 업무



참고

〈임상시험 및 대상자보호프로그램〉

- 식약처에서는 2014년에 “임상시험 및 대상자보호프로그램(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이하 ‘HRPP’라 한다)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이후, 2017년부터는 식약처가 정한 기준에 따라 HRPP*를 운영하는 기관에게 연구자임상시험, 교육,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⁵⁹⁾

* HRPP은 임상시험실시 기관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안전과 권리의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립한 포괄적인 정책 및 모든 규정,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및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적으로 말함

- HRPP은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권리의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며, 수행하여야 할 기본 업무는 다음과 같음⁶⁰⁾
 1. 자체 점검
 2. 헬프데스크(Helpdesk) 운영
 3. 이해상충 관리
 4. 규정 제·개정 관리
 5. 규정 준수 및 위반 관리
 6. 교육

⁵⁹⁾ 김인순, 최수완, 정성직, 최윤정. 임상시험 및 대상자보호프로그램(HRPP)의 효과적 운영 방안. 생명윤리정책연구, 13(2), (2020) p.59-87

⁶⁰⁾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및 대상자보호프로그램(HRPP) 운영 가이드라인 (2017.05.30.) p.3-4

3. 위원회의 책무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과 연구대상자 보호에 대한 심의를 주요 업무로 하며, 조사·감독과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한 활동을 담당함⁶¹⁾

* 위원회 명은 예시이며, 관련 법·규정 및 기관의 사정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및 명명함



참고

〈IRB의 정의 및 명명〉

법·규정	「생명윤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관련조항	제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30조제1항 관련)
위원회명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정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윤리법 제10조1항 각 호의 기관이 설치한 위원회	계획서(변경계획서를 포함한다)나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위하여 시험기관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
기능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의 심의 -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연구자를 위한 윤리 지침 마련 등의 활동	-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하고,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의 임상시험 참여 이유가 타당한지 검토 - 시험책임자가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제출한 문서 심사 - 시험책임자가 해당 임상시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검토 등
관리	-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 - 기관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0만원 이하)	-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임상시험을 할 경우(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 만원 이하, 약사법 제94조) ※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을 위해서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약사법 제34조의2제5호) - 임상시험등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과태료 100만원 이하, 약사법 제98조)

 「생명윤리법」에서는 위원회가 심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 ①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②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③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④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⑤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61)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자를 위한 윤리 지침 (2019) p.11

☞ 위원회는 해당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 진행과정에 대한 조사·감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조사 방법, 절차 및 조사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기관 내 표준운영지침 등에 마련하여 운용하는 것이 적절함⁶²⁾

- 연구자가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지, 해당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안전대책,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하는지, 관련 문서 및 동의서 등을 적절하게 보관 및 관리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음
- 기관위원회는 조사·감독 전에 기관위원회 명의 공문으로 연구자에게 일시·장소·목적·점검자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조사결과는 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감독 결과 연구계획서와 상이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 재심의, 시정조치, 연구 보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연구 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제3호에서는 위원회가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활동으로서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취약한 연구대상자들의 보호 대책 수립 및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취약한 연구대상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므로 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관련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함
- 위원회는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의 자질 및 해당 분야 경험을 심의하고 해당 연구자에게 적절한 윤리교육 등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음
- ※ 생명윤리법 상에서는 연구자 교육, 윤리지침 수립 등을 'IRB의 업무'로 지정하고 있으나, 식약처 HRPP 가이드라인은 '기관장의 임무'로 구분하고 있음. 이는 IRB의 행정업무 부담 감소 및 심의업무 집중에 대한 차이이므로 이해충돌을 고려하여 기관 사정에 맞도록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련 법령

「생명윤리법」(법률 제17783호)

제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③ 기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나.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다.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라.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마.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 가.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 나.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 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6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주요업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2021.11.25. 접속), <https://www.irb.or.kr/menu01/Business.aspx>

규정사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21조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③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연구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세부적인 절차 등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연구윤리규정보다는 관련 법·규정을 참고하여 규정 또는 지침 등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함

참고할만한 자료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202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 매뉴얼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3.12),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운영지침』
- 국가생명윤리정책원(2019),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규정사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22조 (관계법령의 준수)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14조(인간대상 연구의 윤리) ① 연구자가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본교 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승인에 대하여는 본교 ‘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4. 연구자의 책무

☞ 연구자는 반드시 연구대상자 보호와 인간 대상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원칙과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

-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최근 이력서나 기타 관련 문서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를 IRB의 승인이나 심의 면제 확인 없이 개시 및 수행할 수 없으며, IRB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를 준수할 책임이 있음
- 위원회는 승인한 연구 활동에 대해 연구 진행보고(지속심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IRB의 요구에 따른 지속심의/결과보고 심의를 준수해야 함

※ 위원회가 연구대상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따라 판단하여 1년에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지속심의 주기는 1년을 넘을 수 없음

☞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내용 및 절차, 연구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 및 그에 대한 보상, 법적으로 보장된 연구대상자의 권리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를 해야 하며,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구득하여야 함

- 연구자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강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연구나 시험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연구대상자의 질문에 알기 쉬운 말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함
- 또한, 비교대조연구의 경우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정한 수의 연구대상자는 위약 등을 배정받아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 치료약 성분을 투여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연구대상자의 건강상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비교대조연구에 참가하는 연구대상자에게 자신이 위약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 연구대상자의 동의*는 생명윤리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문서화하여야 하며, 생명윤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 참여 전 연구대상자가 제공받아야 하는 동의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인간대상연구의 목적
 2. 연구대상자의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3.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6.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단, 이해능력, 의사표현 능력의 결여로 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상자의 친권자, 배우자 등 적법하게 대상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구득하여야 함

※ 인간대상연구 동의서는 연구자가 연구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관별 위원회에서 연구에 따라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음
-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동의가 연구자와의 종속관계나 강압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당해 연구와 무관하거나 완전히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 고지된 정보에 따른 동의를 얻거나 연구대상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

📖 규정사례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50조(고지 동의 의무)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피험자에게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1조(고지 동의 내용 및 문서화) ① 연구책임자는 피험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유의사에 의한 임상시험 참가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피험자의 이해능력, 의사표현 능력의 결여로 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피험자의 친권자, 배우자 등 적법하게 피험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의 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 임상시험이 연구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사실
2. 예상 참여기간과 예상 피험자 수
3. 임상시험의 목적, 내용 및 방법
4. 피험자가 받게 될 검사 또는 시술
5. 예측 효능, 효과, 부작용 및 위험성
6. 임상시험의 안전대책
7. 환자를 피험자로 할 경우에 해당 질환에 대한 여타 치료 지원 방법 및 그 내용

8. 피험자가 시험참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9. 피험자가 시험참가에 동의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유의사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
10. 신분의 비밀보장
11. 기타 피험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2. 피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② 피험자 동의서는 책임자 및 피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서 사본과 기타 피험자에게 준 문서정보의 사본을 피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한양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44조(충분한 고지와 서면동의)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연구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피험자의 권리, 있을수 있는 위험과 이익 등에 대하여 사전에 피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 피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참가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험자의 동의는 생명윤리심의 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나 시험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피험자의 질문에 알기 쉬운 말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고 비밀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은 연구데이터의 비밀유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 중 또는 연구 종료 이후에도 연구와 관련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연구대상자가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가 알게 된 연구대상자의 병발 질환이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자 보호 준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책무를 짐

규정사례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54조(개인신상정보 보호) 피험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제55조(데이터의 비밀유지) 연구자는 피험자에 관한 데이터의 비밀유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56조(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의무) 비밀보장에 대한 연구자의 법적 또는 기타의 한계와 비밀유지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피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한양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45조(인간 피험자 보호)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나 새로운 정보를 피험자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양자로부터 새로운 동의서와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 ② 장애인, 임산부, 태아, 신생아, 아동, 수감자 등을 피험자로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이에 상응하는 부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연구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피험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④ 연구자는 피험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⑤ 연구자는 피험자로부터 얻은 연구데이터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밀유지가 어려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및 결과를 피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⑥ 연구책임자는 연구자가 피험자 보호 준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책무를 진다.

제3절 동물실험

1. 동물실험의 원칙

- 최근 과학 및 산업의 발전과 함께 실험동물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억제하고 실험동물의 복지 향상과 과학적 이용 및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의 노력이 필요함
-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의 설계 및 수행 시 인간 또는 동물 보건과의 관련성, 지식의 진보 또는 사회의 공익을 고려하여야 하며, 동물실험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인 3R 원칙(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을 준수하고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존중하여야 함



참고

3R 원칙⁶³⁾

- **Replacement(대체):** 동물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으로 동물실험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조직배양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모의실험기법이 발달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할 방법이 증가하고 있음
 - 직접적/완전 대체방안(Direct/Absolute Replacement): 척추 동물의 세포, 조직, 기관 등을 채취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나 물리 화학적 기법을 이용하는 연구 방법
 - 간접적/상대적 대체방안(Indirect/Relative Replacement): 미생물, 식물, 배양 세포와 같이 동물이 아니거나 무척추 동물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파충류, 양서류 등 지각·감각이 낮은 동물로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대체 방법임
- **Reduction(감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와 결과를 얻을 만큼의 최소한의 동물 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함
 - 과학적인 동물실험 설계*를 통한 실험군당 동물수량 산정
 - * 과학적인 동물실험 설계란 가설에 대한 실험을 어떻게 수행하고,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를 얻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소의 실험 횟수에서 최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를 계획하는 것
 - 합리적인 실험동물의 종과 실험군의 크기를 선택
 - 동물사용에 대한 과학적,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실험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
 - 최소한의 동물 수를 산정하는 방법 이외에도 실험동물의 건강 관리 및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 요인을 줄여 실험 중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감소방법임
- **Refinement(환경개선 및 고통완화):** 동물에게 가해지는 비인도적 처치(inhumane procedures)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수의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해주거나, 실험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고려하여 거주 환경을 개선시키는 방법 등을 의미함
 - 통증과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동물의 복지를 개선시켜 주는 것
 - 실험방법 및 기술 등을 개선하여 동물에 가해지는 통증이나 고통을 감소시키는 환경 풍부화 방법을 제공
 - 적절한 진통제와 마취제를 사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를 시키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위생적인 환경과 동물이 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
 - 숙련된 실험동물수의사, 연구자, 동물실험담당자에 의한 처치방법도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음

63) 농림축산검역본부,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IACUC 동물보호 민간단체 추천위원 길라잡이(2020.11) p.36-37

-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의 원칙(3R원칙)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실험이 종료된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윤리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규정사례

〈동물실험의 원칙 명시〉

고려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59조(실험동물복지의 원칙)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대체원칙: 비동물 모형을 사용하거나 가급적 하등동물을 사용함
- 2. 축소원칙: 실험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함
- 3. 개량원칙: 불필요한 통증과 고통을 제거하거나 축소함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23조 (원칙)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존중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원칙들을 준수하여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1. 대체원칙: 非동물모형을 사용하거나 가급적 하등동물을 사용한다.
- 2. 축소원칙: 실험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 3. 개량원칙: 동물의 고통 및 불안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한다.

2. 연구개발기관의 책무

📖 연구개발기관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으며, 이는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수립, 동물실험 대체 방법 고려, 동물실험의 폐기물 등의 적절한 처리 및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함

* 동물실험시설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실험동물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자 할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환경에 따라 「실험동물법」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적용대상 여부 및 관련 법률의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실험동물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여야 하는 동물실험시설이 아닌 그 외의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관리자,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하며, 「실험동물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관련 법령

「실험동물법」(법률 제15944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실험동물생산시설”이란 실험동물을 생산 및 사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수립
2.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3.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우선적 고려
4. 동물실험의 폐기물 등의 적절한 처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제8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 ①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 ①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로 등록 또는 우수동물실험 시설로 지정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참고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의 수의학적 관리〉⁶⁴⁾

-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고 동물실험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의학적 관리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수의사 또는 실험동물에 대한 지식과 동물실험에 숙련된 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관장은 모든 동물이 적절한 훈련을 받아 숙련된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 의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1) 권한과 책임

-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여부
- 동물 구입 및 반입, 순응 및 검역기간의 설정, 격리와 검역 등에 대한 절차
-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인: 미생물 모니터링 실시 여부
- 연구계획 입안 시 연구자의 상담 및 조언
- 연구자 교육 및 훈련 제공
- 연구자의 실험에 과학적 기술지원
- 연구자의 실험환경에 대한 안전 확보 및 확인: 산업보건 및 안전 책임
- 최신 실험동물의학 및 복지관련 정보 수집과 제공

2) 수의사의 집중 관리 분야

- 마취 및 진정제, 안락사 시점 및 방법 결정
- 연구에 적절한 동물의 선택
- 수술 전 처치 및 수술 후 관리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수의사를 포함해야 하며, 실험동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실험동물전담 수의사(전임 수의사)를 두어야 함

64)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2020.12) p142

☞ 연구개발기관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를 설치·운영** 및 지원해야 함

* 관련 위원회를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실험동물법」에서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로 명명하고 있으며, 두 법률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통합위원회 하나로 운영이 가능함. 본 길잡이에서는 관련 위원회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예시로서 기관에서는 관련 법·규정 및 기관의 사정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및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당 기관의 동물실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인력이 5명 이하이거나 연간 동물실험계획 심의 건수 등을 고려하여, IACUC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기관은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IACUC를 설치할 수 있음(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

-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실험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실험동물법」에서도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 관련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은 [별첨 4-2]를 참고하기 바람

- 연구개발기관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장소·비용 등에 관하여 적절히 지원하여, 위원들이 과제심의나 시설 실사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위원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필요한 연구교육을 제공해야 함⁶⁵⁾

☞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법률 제16977호)

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실험시행 기관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실험동물법」(법률 제18969호)

제7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동물보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동물보호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실험동물운영위원회로 본다.(23.04.27 시행)

☞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과 연구자의 건강과 안전은 기관장이 특히 책임지고 배려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동물실험 시의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예방함으로써 직업병 또는 연구 시의 상해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용하여야 하며, 예방과 더불어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⁶⁶⁾

65) 농림축산검역본부,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IACUC 동물보호 민간단체 추천위원 길라잡이(2020.11) p.11

66)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2020.12) p.143

- ☞ 실험동물의 사체 등은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며, 연구개발기관은 동물실험의 폐기물 등의 적절한 보관·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동물 사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분리 또는 구획된 공간과 장비 또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 관련 법령

「실험동물법」 (법률 제15944호)

제20조(사체 등 폐기물) ②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및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는 동물실험시설과 실험동물생산 시설에서 배출된 실험동물의 사체 등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실험동물자원은행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785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동물실험시설 관리자, 동물실험 연구자의 실험동물 관련 법정교육 이수는 의무사항으로 연구개발기관은 관련 교육을 제공하거나 지원해야 함

3. 위원회의 책무

- ☞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을 포함한 사항에 대해 지도·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필요 시 기관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①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동물실험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이를 심의하는 것으로, 계획된 동물실험이 과학적·윤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인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될 때에만 승인함
- ②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 ③ 실험동물 또는 동물실험 및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내부규정 마련
 - 기관에서 운영하는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 및 관련 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을 동물실험시행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 ④ 동물실험시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
- ⑤ 동물실험시설 종사자 및 연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확인 및 평가
- ⑥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71호)

제1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의 방법)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을 지도·감독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2.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복지 수준 및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 및 평가

「실험동물법」 (법률 제15944호)

제7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실험시설의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3.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또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복지 및 정확한 실험결과의 보장을 위하여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의 점검(Post Approval Monitoring; PAM)을 실시할 수 있음

-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서의 내용대로 연구자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승인 후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동물실험의 중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변경요청 혹은 보류결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
- 승인 후 점검은 연구자와 함께 점검을 통해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실험 결과의 신뢰성 향상과 동물실험 관련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 협력과 건강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시설의 담당수의사가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는 방식도 인정될 수 있으며, 동물실험시설의 사육관리자가 사육 중 발견한 문제를 기관에 보고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어 기관의 상황에 맞게 점검일자 및 점검방법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⁶⁷⁾

📖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세부적인 절차 등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연구윤리규정보다는 관련 법·규정을 참고하여 규정 또는 지침 등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함

참고할만한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2020.12), 농림축산검역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동물실험 및/또는 실험동물 관련 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
- 농림축산검역본부,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2020.11), IACUC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및 심의평가 길라잡이
-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2013),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위한 가이드라인
- 식품의약품안전처(2021.06), 동물실험 관련 법령·제도 종합안내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2020.11), IACUC 동물보호 민간단체 추천 위원 길라잡이
- 농림축산검역본부,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2020.11), IACUC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및 심의평가 길라잡이

67)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2020.12) p.101

규정사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26조 (관계법령의 준수)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서울대학교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15조 (실험동물대상 연구의 윤리) ① 연구자가 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과학적·윤리적 이용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동물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전에 본교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승인에 대하여는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4. 연구자의 책무

-  동물실험은 과학적이면서도 윤리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자는 실험동물을 인도적으로 취급하며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수행해야 함
- 실험동물을 이용한 연구의 설계와 수행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계획 단계부터 동물복지를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설계해야 함



참고

〈동물복지의 개념〉

- 미국수의학협회(AVME)에서는 동물복지를 동물에게 적절한 주거환경의 제공, 관리, 영양제공, 질병예방 및 치료, 책임감 있는 관리, 인도적인 안락사(필요시) 등 동물의 복지와 관련한 모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동물의 5대 자유〉⁶⁸⁾

- 영국의 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에서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5대 자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상동물로 농장동물, 전시동물, 반려동물, 실험동물을 지정하고 있음
- 1) 배고픔과 갈증, 영양불량으로부터의 자유
 - 2) 불안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 3)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 4) 통증과 상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 5)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 동물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험동물의 권리와 안전 및 복지보호를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사전 심의와 승인을 받고 연구를 시작해야 함. 또한, 승인 후 점검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책임이 있음
-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계획을 수립·작성하고, 동물을 다루는 연구자들이 실험절차들을 인도적으로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필요한 보조요법을 제공하도록 적절하게 훈련받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음
-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완화될 수 없는 고통이나 만성적이며 심각한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을 고통 없이 안락사를 적용해야 함

68) 황은성, 조은희, 김영목, 박기범, 손화철, 윤태웅, 임정묵,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한국과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14) p.108

- 연구자는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해야 하며,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 시켜야 하며, 대상 동물이 공포, 불안, 혼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숙련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함

규정사례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60조(통증과 고통의 최소화) 실험동물의 고통과 괴로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정제 및 진통제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하며, 완화될 수 없는 고통이나 만성적이며 심각한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을 고통 없이 도살하여야 한다.

제61조(실험동물의 권리보호)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을 적절하게 사육·관리하고, 유해 물질을 실험동물에 사용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험과정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25조 (동물대상 연구의 종료) 동물대상 연구를 종료한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험이 종료된 동물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 시켜야 한다.
2. 실험동물의 사체는 각 실험동물시설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실험동물에 유해물질을 사용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고 실험과정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참고

〈동물실험 시 유해물질 및 병원성 생물체 등의 이용〉

-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실험물질 중 생물학적·화학적 유해물질 등이 포함되는 경우, 연구자와 사육관리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하고, 생물안전위원회(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IBC)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함⁶⁹⁾

- 유해물질은 인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화학적 물질을 의미하며, 실험자는 유해물질 취급시 실험동물의 효과적인 관리와 생물위해 방지를 위하여 지정된 동물시설(유해물질 실험동)에서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동물실험을 행해야 함.

- 생물학적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은 「생명공학육성법」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른 제3위험군 및 제4위험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을 유발하는 병원체 등이 포함됨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해유발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실적보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관련사항을 확인해야 함

*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및 각 호에 부합하는 유해화학물질, 병원체를 포함한 미생물, 유전자변형생물체, 방사선 핵종, 인체 혹은 동물에서 유래한 물질 등

69) 농림축산검역본부,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IACUC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및 심의평가 길라잡이(2020.11) p.34

☞ 연구자는 동물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특징, 민감한 동물원성 감염질환,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전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함

- 실험동물 관리자는 실험동물이 사람과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연구자는 실험 중 실험동물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실험동물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실험자는 충분한 훈련을 거친 후 실험을 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연구자는 동물 대상 실험과 관련된 규정, 인도적 취급, 안전관리, 건강 위험요소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음

📖 관련 법령

「실험동물법」(법률 제15944호)

제17조(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2.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
3. 제12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
4. 그 밖에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 규정사례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62조(안전관리) ① 연구과정에서 실험동물을 보호하고 다루는 책임자의 자격 및 기술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② 실험동물 관리자는 실험동물이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③ 실험과정에서 실험동물에 의해 실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며, 실험동물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실험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훈련을 거친 후 실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
- ④ 실험이 끝난 뒤 실험동물의 사체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규정 제15조(동물실험 교육) ① 원장은 「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 규정」 제4조 제4항제4호에 따라 동물실험 교육을 주관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 교육 대상자는 동물실험실시자,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는 교직원으로 한다.
- ③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제2항의 동물실험 교육 대상자가 동물실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실험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별첨 5-1]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주요 차이점⁷⁰⁾

구분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목적		동물의 생명보호, 학대 행위 방지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 확보 (실험동물 감염 등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병원체등으로부터 사람보호)
대상실험		모든 동물실험 유실·유기동물, 보조견 등 제외, 단 동물종의 건강, 질병관리 연구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득한 후 가능 (동물보호법 제24조)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등의 개발을 위한 동물실험
대상동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 (우선사용대상 실험동물: 마우스, 랫드, 햄스터, 저빌, 기니피그, 토끼, 개, 돼지, 원숭이)
동물실험원칙		• 인류의 복지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 고려 •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고려하여 실험 최소화 •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이 낮은 동물 사용, 진통·마취제 등 사용 • 실험이 끝난 후 해당동물이 회복할 수 없는 경우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동물보호법 제23조)	
동물 실험 심의	기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역할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 도모	동물실험의 윤리성 및 신뢰성 등 확보
관리	지도·감독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식약처에 등록된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공급자
	무등록	•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벌금 500만원 이하) • 동물실험 금지대상 동물 (사람을 위해 사육한 동물, 유기견 등)을 이용하여 실험(벌금 300만원 이하) •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경우(과태료 300만원 이하) •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과태료 300만원 이하) • 개선명령 불이행한 동물실험시행기관(과태료 300만원 이하)	• 의약품·식품 등 개발, 안전관리, 품질관리를 위한 동물실험을 하였음에도 식약처 등록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100만원이하) • 의약품·식품 등 개발, 안전관리, 품질관리를 위한 동물실험으로 우선사용대상실험동물을 식약처에 등록(변경)하지 안하고 공급한 경우(벌금: 500만원 이하) •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동물실험시설(과태료 300만원 이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과태료 300만원 이하) •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 받은 동물실험시설(벌금 200만원 이하)

70)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2020.12) p.13

[별첨 5-2]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⁷¹⁾

구분	위원회 구성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제27조)	실험동물법(제7조)
인원	4~15명	3~15명	4~15명
필수 구성 인원	수의사	1명 이상	1명 이상
	(동물보호)민간단체 추천자	1명 이상	1명 이상
	동물실험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	1명 이상
선택 구성 위원	동물실험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0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철학·법학 담당 교수	0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복지 담당 교수	0	-
	그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0
	그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0	-
특수 구성 요건	해당 기관(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총 위원수의 1/3 이상	- 수의사 및 동물실험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중 1명 이상 - 민간단체 추천자

71)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2020.12) p.24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제6장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VI

제6장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155
제1절	개요	157
1	건전한 연구실 문화의 개념	157
2	건전한 연구실 문화조성 관련 길잡이의 목적	158
제2절	연구자 권익보호	158
1	권익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	158
2	차별 금지	161
제3절	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및 갈등 관리	162
1	상호 신뢰 조성	162
2	연구실 내 갈등 관리	163
제4절	연구실 내 소통 강화	164
1	목표지향적 소통	164
2	주기적 개방형 소통	164
제5절	연구자 안전 및 건강 보호	165
1	안전환경 조성	165
2	건강검진	167
3	안전문화 인식 확립 및 실행	167

VI

제6장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제1절 개요

1. 건전한 연구실⁷²⁾ 문화의 개념

 건전한 연구실 문화란 연구실 구성원*간 상호 존중하고 배려 속에 개방형 소통을 통해 활기가 있는 공동체 지향의 문화를 의미하며, 나아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지속 가능한 연구성과 창출**을 지향하는 연구실 문화를 포함함

* 연구책임자, 박사후연구원, 연구원, 학생연구원, 보조연구원, 행정지원인력 등이 포함

** 연구실의 기본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공동체 지향의 문화 뿐만 아니라 연구성과 창출(대학연구실의 경우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포함)도 고려가 필요함

 연구는 개인보다 연구실 단위의 집단연구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집단연구 수행 시 인권 침해, 부당한 위력 행사, 소통의 어려움 등 다양한 갈등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전한 연구실 문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은 연구자 인권 및 권익 보호, 연구자간 상호존중 및 갈등관리, 개방적인 소통문화, 안전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 등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함



참고

〈건전한 연구실 관련 정책〉

-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 연구행정 정착방안(19.2)
 - 건강한 연구문화를 촉진하고 선진 연구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도, 규정, 거버넌스, 인식 측면에서 각각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연구실 문화와 관련된 연구윤리위반사항 구분으로 연구 또는 공적 업무와 무관한 사적업무 전가, 폭언, 고압적 태도 등의 연구자 간의 부당한 위력행사와 연구 또는 연구윤리 관련 멘토링을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 등의 지도교수 학생 간 의무태만을 포함하고 있음
- 건강한 연구실 포상 시행
 - 건강한 연구문화 확산 및 벤치마킹 유도를 위하여 2020년부터 건강한 연구실 포상을 시행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 연구실 문화(혁신, 조직문화), 연구실 관리(성과관리, 안전), 연구성과(성과, 인력양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으며, 평가는 정성적으로 이루어짐

72) 연구실 문화와 관련하여 '건전한', '건강한' 등이 혼용되고 있으나, 혁신법 상 '건전한' 연구실 문화조성으로 표현하고 있어 길잡이에서는 '건전한'이라는 용어를 택하여 사용함

2. 건전한 연구실 문화조성 관련 길잡이의 목적

- 이 길잡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31조 제4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58조 제1항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원 조치로,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을 통하여 연구자들의 개인적 삶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과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 연구성과 제고와 미래 학문세대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연구자의 권익보호, 연구실 내 전체 구성원들의 상호관계 및 갈등관리, 개방형, 자율형 소통을 통하여 활기 있는 공동체 지향의 연구실 문화 조성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함
- 또한, 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윤리 자체 규정에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에 따라 연구자 안전 및 건강관리, 전체 연구실 구성원 대상 교육 등을 지원하는 관리체계 및 자체규정 마련 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함

제2절 연구자 권익보호

1. 권익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

- 모든 연구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어느 누구도 연구를 이유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따라서 인권, 건강과 혼인 및 모성보호, 가족생활 등을 비롯한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관계된 사항은 연구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연구자는 인격체로서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가지며, 이를 보호받아야 함.
- 연구자의 권익침해 행위로는 성희롱·성폭력, 연구실 생활에서 연구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야기하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부당한 위력행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써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함
 1.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
 2. 성 차이를 이유로 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희롱의 가해자 및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뜻함
 - “부당한 위력행사”라 함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부당한 지시 또는 폭언, 연구원에 대한 불공정·부당한 요구 또는 지시 등의 갑질⁷³⁾ 행위를 말함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그 밖의 권익침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 등을 참고할 수 있음

73)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乙)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함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7.5.))



참고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⁷⁴⁾

1. 폭행 및 협박 행위
 -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에 폭력을 가하는 등 직·간접의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폭행이나 협박 행위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인정 가능
2. 폭언, 욕설, 헐담 등 언어적 행위
 -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인 것으로 판단되면 인정 가능
 -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인정 가능
3. 사적 용무 지시
 -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인정 가능
4.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5.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6. 과도한 업무 부여
 -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그 행위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7.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대학의 경우, 교원의 창업 등으로 인해 창업 등의 활동과 학생의 지도 간 이해충돌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창업에 참여한 학생의 학생으로서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학생에 대한 지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교육과 연구활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교원윤리 및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교원의 본분을 다해야 함

규정사례

〈교원창업 및 외부활동 시 기본의무 명시〉

고려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41조(교원의 기본의무) ① 연구자는 연구와 강의를 동시에 담당할 때 한 직무의 수행이 다른 직무의 수행과 충돌하지 않도록 시간과 노력을 조정해야 한다.

② 교수로서의 의무이행과 외부활동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교수의 시간과 지적 에너지는 교육, 연구, 학술활동, 학생지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고려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42조(과도한 외부활동 금지) 교수로서의 기본의무인 교육 및 학생지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외부활동이나 연구수주를 피하여야 한다.

74)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2019.2.22.)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위력행사 및 그 밖의 권익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책무가 있으며, 연구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윤리규정 및 이를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함

* 지원체계에는 연구자 권익 관련 자료 제공, 권익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 및 신고처리,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면 해당 내용을 차용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고등교육법의 개정(2021.3.23.)으로 대학은 의무적으로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고,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가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조사자는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혐의로 판명 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본조신설: 2021.3.23., 시행: 2022.3.24.]

제19조의3(인권센터) ①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4.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연구책임자는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위력행사 및 그 밖의 권익침해를 포함한 연구원의 인권, 권익보호,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연구자의 연구 활동 보장, 처우,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 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구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해야 함.

☞ 특히, 학생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제7항에 따라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며, 학생연구자 참여 시 연구책임자는 인건비 부담회수 금지 등을 포함한 연구 참여 확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2조(학생인건비부담회수에 대한 조치)에서는 학생인건비부담 회수를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인건비부담 회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제재처분 대상 부정행위에 포함됨



참고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안)〉⁷⁵⁾

1.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가.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나.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계정
 - 다.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 마.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바.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 사.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가.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 나.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 다.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3. (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가.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 나.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 다.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2. 차별 금지

-  모든 연구원은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전체 참여연구원들은 모든 연구수행 과정에서 성별, 나이, 종교, 출신 지역, 성적 취향 등으로 다른 참여연구원을 차별해서는 안 됨
-  또한, 출산 및 육아 등 모성보호, 가족생활 등을 비롯한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관계된 사항 이유로 연구과정 및 성과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함
-  특히, 저자 자격,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을 포함한 연구성과와 연구비 및 실험재료 등과 같은 연구자원의 배분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함. 연구수행 및 종료 시 갈등이 없도록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책임자와 전체 참여연구원들의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구책임자는 성과배분 시 공정한 성과 기여도에 의거하여 성과를 배분토록 노력해야 함

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 (2021.3.16.)

규정사례

〈연구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명시〉

고려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20조(연구 환경 조성·유지 의무) ② 지도교수는 연구원의 인종, 성, 나이, 민족, 성적 취향 등에 따른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고, 모든 연구원이 차별 없이 지도 및 감독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8조(기본 의무) ③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원의 인종, 성, 나이 등에 따라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모든 연구원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연구 성과 및 자원 배분의 공정성 명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2조(지도자로서의 책임) ③ 교수는 연구원 및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그들을 정당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고려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23조(연구책임자의 책임범위)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의 권리와 인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당하게 대우해야 하며, 연구기여도에 따라 연구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 연구책임자 뿐만 아니라 연구실 내 연구원들은 선후배 관계 등을 이용하여 연구 또는 공적 업무와 무관한 사적 업무 전가, 폭언, 고압적 태도 등의 부당한 위력행사를 하지 않고, 동료들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해야 함

제3절 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및 갈등 관리

1. 상호 신뢰 조성

☞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간의 역할 및 권리 등에 대한 서로의 기대치가 다를 수 있어 상호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상호신뢰 조성이 필요하며, 상호 관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연구실 문화*에 대한 설명과 소통을 연구책임자가 주도적으로 시도해야 하며, 연구실에 지원하고자 하는 예비연구원 시기부터 소통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에 투자하는 시간, 성과 판단 등에 사용될 기준, 연구에서 책임을 공유하거나 나누는 방법 등

☞ 또한, 상호 존중하는 사고 하에 개방형, 자율형 소통을 통하여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가 조성된 공동체 지향의 연구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수평적 관계중심의 문화’를 추구해야 함

☞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간, 그리고 연구원 상호 간 존중과 배려가 중요하며, 연구실 내 연구성과와 함께 조화로운 인간관계 생성이 장기적 측면에서의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하므로, 연구책임자는 개별 연구원 특성에 기반을 둔 연구성과와 인간관계의 균형적 지도를 추진토록 함

2. 연구실 내 갈등 관리

연구실 내 갈등은 연구원들 간의 과도한 경쟁의식, 선배 연구자의 권위의식 및 강압적인 위계질서, 연구원들 간의 성격 차이와 공동체 인식 부재 및 정서적 배려 부족, 연구 외의 과도한 잡무 등으로 인한 비합리적인 연구실 분위기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연구자 서로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해결될 여지가 있음

연구실 내에서 연구원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 단순히 해당 연구원들의 정서적인 문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실 전체의 연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 전 연구 목표 및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의 각자의 역할, 연구데이터 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성과 배분 기준 등에 대하여 연구원들과 합의하여 연구원들의 역할과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체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연구자 단독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2인 이상 다수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연구를 ‘공동연구’라 할 때, [별첨 6-1]와 같은 ‘공동연구를 시작하기 전 점검할 사항’을 참고하여 연구실 내에서도 적용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는 필요 시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연구데이터 수집·저장·공유의 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실 지침을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실 지침(LAB Philosophy)은 연구실 세미나, 실험노트 작성법, 연구실 공동업무, 안전관리 요령, 폐기물 처리, 선후배들 사이의 존대어 사용, 지켜야 할 예의 등 연구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원들 간의 합의로 만들면서 연구실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이상적임⁷⁶⁾

규정사례

〈공동 연구 시 상호관계 명확화 및 문서화 관련 규정〉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9조(공동연구) ③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산대학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9조(공동연구) ①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역할과 관계를 명백히 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분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업무분장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76) 손화철, 윤태웅, 이상욱, 이인재, 조은희,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 연구윤리정보센터 (2010) p.84

제4절 연구실 내 소통 강화

1. 목표지향적 소통

-  연구실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소통으로, 연구책임자-연구원 간 뿐만 아니라 연구원 간 소통도 연구실 및 연구결과 품질관리를 위해 중요함
-  연구실 내 소통에 있어 연구 지도는 중요한 역할을 함. 연구책임자는 경험이 적은 연구자들에게 귀감이 되며, 연구수행 시 연구원을 지도할 의무가 있음
 - 연구책임자는 원활한 지도를 위하여 연구책임자의 연구철학, 연구 방향, 연구목표, 지향하고자 하는 연구자상, 연구전망 등에 대하여 연구실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숙지시키고 공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목표를 장기적 관점에서 설정하고 주제별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새로운 연구과제 수행 시에 연구목표 등을 정확하게 공유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지속적 연구도전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실패와 시행착오 경험을 고려하여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창의적 아이디어 기반 연구를 권장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도출토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함

규정사례

〈연구책임자의 지도 의무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2조(지도자로서의 책임) ① 교수는 연구원 및 학생들의 연구가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고려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19조(지도교수의 기본 책무) ①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연구자는 지도교수로서 학부생,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등 연구 참여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2. 주기적 개방형 소통

-  연구실 내의 연구 성과 점검, 연구 방향 조정 등을 위하여 연구실 내 정기적·비정기적 미팅의 개최가 필요하며, 수시로 연구원-연구책임자 간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실 내 주기적 랩 미팅을 통하여 개별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방향을 조정하며 우수 연구를 수행하도록 동기 부여, 격려 등을 추진토록 하며, 연구목표와 진행을 점검할 시에는 연구실 내 연구원 선배 경험 등을 활용함.
 - 또한, 참여연구원이 다수인 연구실 내 추진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랩미팅 시 전체가 공유토록 하여 집단지성이 발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실 내 연구원 간 연구성과 중심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상호 협력적으로 연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책임자는 미팅 시 연구실 전체 공동체 중심 공동목표를 제시하고 협력연구, 공동연구, 융합연구 등을 강조하고 협력을 유도토록 함
-  ‘연구실 내 개방적인 소통문화’란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업무보고 형식이 아닌 연구원 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 및 소통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개방형 문화를 뜻하며, 소통강화를 위하여 랩미팅의 형식은 연구자 주도형으로 진행하고 연구책임자는 같은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함



참고

〈연구실 소통강화를 위한 연구책임자의 구체적 역할 제고 방안⁷⁷⁾〉

1. 연구책임자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비전에 대하여 언급 시 많은 말로 이야기하지 말고 간결하고 핵심적 메시지로 전달
 - 핵심 메시지는 반복적으로 강조, 구체적 사례 제시
2. 긍정적 피드백을 적절히 사용하여 연구원과 소통
 - 부정적 피드백은 연구원을 직접 비판하거나 공격하지 말고 문제 자체에 집중
 - 사실 기술적 의사소통의 3단계 접근 방법론에 의거 접근
 - (1단계) 평가하기보다는 상황을 기술
 - (2단계)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관련된 객관적인 결과나 개인적인 느낌 강조
 - (3단계)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 논하기보다 양자가 수용할 만한 대안 제시
3. 연구실 내 연구원 간 연구성과 중심 이기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연구실 전체 공동체 중심 공동목표를 제시, 협력 유도
 - 연구원 간 이기주의 타파를 위하여 협력연구, 공동연구, 융합연구를 강조
4. 연구원들의 연구제안, 연구발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끝까지 경청하고 신중하게 판단
5. 연구원들의 고충을 먼저 파악하고 이해
6.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긍정적인 감성을 연구원들에게 전파
 - 연구책임자의 감성 전염(연구책임자의 칭찬과 격려는 연구원들에게 전염)
 - 연구원들은 연구책임자의 표정, 감정표현, 작은 행동에도 영향을 받음

제5절 연구자 안전 및 건강 보호

1. 안전환경 조성

☞ 연구실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기계 기구들과 다양한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연구실 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어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따른 연구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관리하는 등의 안전환경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 마련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법·규정을 준수해야 함

☞ 관련 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74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77) 이범훈, 기초, 원천연구성과 향상을 위한 건강한 연구실 문화 조성방안 기획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2019.4.25.) p.177

- 특히, 대학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행하고 매년 대학정보 공시에 안전관리현황을 포함하게 되어 있어 각 대학과 각 연구실 상황에 맞게 안전체계가 세워지고 안전활동이 이루어지는 안전관리문화가 형성되어야 효과적일 것임.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가 연구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 구비, 연구자들이 연구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 제공하는 등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을 포함함

규정사례

〈안전관리 관련 기관의 의무 명시〉

부산대학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4조(대학의 의무) ③ 대학은 연구자가 연구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27조(연구실 안전관리) ③ 서울대학교는 연구자들이 연구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의 제공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7910호)

-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연구기관등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 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이하 이 조에서 “학생연구자”라 한다)는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신고·납부, 보험료나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⑤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학생연구자에게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54조, 제56조 제2항, 제67조 및 제6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학생·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민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중대 연구실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민간보험만으로는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학생연구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로 산재재해보상보험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2. 건강검진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원들의 신체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실시해야 함
- 「연구실안전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관련 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50호)

제21조(건강검진) ①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특정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임시건강검진의 실시나 연구장소의 변경, 연구시간의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임시건강검진 등을 받아야 한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임시건강검진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건강검진·임시건강검진의 대상, 실시기준, 검진 항목 및 예외 사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안전문화 인식 확립 및 실행

-  연구실책임자의 안전문화 인식은 연구실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연구수행 시 연구원들을 지도, 관리, 감독함에 있어 연구실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함. 특히, 연구수행 시 사용되는 유해인자 등을 미리 분석하고 이에 대한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⁷⁸⁾

※ 단, 연구책임자가 연구실 대표 책임자가 아닐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과 관련된’ 연구실 안전 업무만을 총괄하며 연구실 전체의 안전 관리 책임자는 따로 둘 수 있음

- ‘연구실 안전 업무’에는 연구실 안전 점검, 안전 보호 장치의 관리와 운영, 연구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응급 상황을 대비한 구급품 및 비상 연락망의 구비 등을 포함함
-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사항’은 화재, 가스폭발, 감전 및 유해 화학물질·실험폐기물·방사능·미생물 누출 등을 포함함

규정사례

〈안전관리 관련 연구책임자의 의무 명시〉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24조(안전관리의무) ① 연구책임자는 안전 업무를 총괄하며,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안전 점검·진단·훈련, 안전 보호 장치·시설의 관리와 운용, 연구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응급 상황을 대비한 구급품 및 비상 연락망의 구비 등에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78) 배선영, 대학 연구실 안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 과학기술정책 제27권 제10호 (2017.10) p.46-49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 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폭발, 감전, 유해 화학물질·실험폐기물·방사능·미생물 누출 등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수주 여부를 결정할 때 연구수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 및 시설의 존재 유무와 그 설치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27조(연구실 안전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실사고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원들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안전교육 이수를 독려하는 등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학교 당국에 신고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연구자 전체는 연구자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에게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가능성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인식하고 실행해야 함

- 각 연구실에 구비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독성여부, 누출 방지 및 개인보호구 등 정보를 확인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에는 연구자의 실행 의지 및 생활화가 중요함.

- 또한, 연구수행 과정 중 일부 실험은 연구진 구성원은 물론 주변 환경과 일반인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경 안전의 문제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전 예방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연구원은 해당 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연구대상'은 임상 및 비임상연구에서 직·간접적인 대상이 되는 사람 및 동물 등을 뜻함

[별첨 6-1] 공동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예시)⁷⁹⁾

미국 국립보건원 옴부즈맨 오피스에서는 공동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을 제시

- 연구과제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 핵심적인 부분은 비슷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점을 공통으로 점검

내용	점검여부
공동연구의 목적	
Q1. 공동연구의 과학적 쟁점, 목적, 예상되는 성과는 무엇인가?	☐
Q2. 언제 공동연구를 끝마치게 되는가?	☐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Who Will Do what?)	
Q3. 각 공동연구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
Q4.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는 누가 작성할 것인가?	☐
Q5. 연구원과 관련된 결정은 누가 어떻게 내릴 것인가? 누가 어떻게 연구 인력을 관리할 것인가?	☐
Q6. 누가 어떻게 자료를 관리할 것인가? 자료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과제가 종료된 후 자료의 장기 보관과 접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저자 결정과 공로배분(Authorship & Credit)	
Q7. 저자 자격과 공로배분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결정되는가?	☐
Q8. 일반에게 공표할 때, 초록이나 논문에서 각 공동연구자 소속기관의 기여는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
Q9. 공공 발표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
Q10. 언론의 질문은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Q11. 지적재산권과 특허는 언제 어떻게 신청할 것인가?	☐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와 의사소통(Contingencies & Communicating)	
Q12. 사업단 소속 연구자들 사이의 정기적인 의견교환 통로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Q13.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연구 과제의 방향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	☐
Q14. 새로운 공동연구나 연구 결과 파생되는 과제가 생기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
Q15. 사업단의 연구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과제를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 자료, 시료, 연구노트, 저자 자격, 공로배분 등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79) 좋은 연구를 꿈꾸는 연구자들의 온라인 공동체, 좋은연구 웹진 (2010.01): 원문 NIH OFFICE OF THE OMBUDSMAN, Questions for Scientific Collaborators에서 변형 재인용

우수사례

[학생연구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캠페인 진행(UNIST)]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활동 및 권익 보장을 위한 자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분석을 통하여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에 관한 연구윤리 의식개선 캠페인 진행

1. 온라인 설문조사

 주요 내용: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및 공동관리 금지, 유용금지에 관한 인식도 및 애로사항, 기타의견

2. 개별심층 면접

- 대상: 전 학기 대비 지급금액이 약 500만 원 이상 증가한 대학원생
- 주요 질의 내용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실태조사부문]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공동관리, 랩비 조성)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심각한 부정행위임을 알고 있는지?
- 연구실 내부적으로 혹은 공동관리가 이루어지는 연구실을 목격하였는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에 대한 인식조사부문]

- 학생연구자 본인이 지급받은 학생인건비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메뉴에 대해 알고 있는가?
-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를 위하여 우리 기관에서 공동관리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중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고르면?
-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신고창구를 알고 있는가?

3. 결과분석

- 설문에 응답한 학생연구원 92%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가 연구부정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연구비 환수, 연구 참여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부정행위라는 사실까지 인지하지 못함.
 -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를 위하여 기관에서 진행중인 워닝 메일링, 포털 팝업 알림 등 여러 조치들이 있지만, 학생연구원 일부만 해당 내용을 인식하고 있음. 공동관리 금지에 관한 윤리의식개선 및 주요내용 등을 학생연구원에게 자주 노출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
 - 랩비조성을 강요받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신고 채널 중 청렴우체통은 알고 있으나, 다른 신고채널은 잘 인지하지 못함. 신고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안내 필요
- ※ UNIST공식신고채널
클린신고센터(clean.unist.ac.kr), 연구처 신문고(research.unist.ac.kr), 청렴우체통(원내 주요시설 비치)

4. 사후조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금지에 관한 연구윤리 의식개선 캠페인 진행

- 주요시설에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홍보배너 비치 완료(출입구, 인원 밀집 공간에 집중비치)
-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문화정착을 위하여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전파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를 통한 공동관리(렘비조성)금지 관련 세부내용 및 공식신고채널 홍보 등 주요자료를 제작 및 배포(연구처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에 게시, 전구성원 공문 전파)



참고

〈연구관리부서에서 진행중인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를 위한 조치〉

1. 메일링 서비스: 학생인건비 과다 등록 시 공동관리 금지를 위한 자동 안내 메일 발송
2. 포털 메뉴에서 학생인건비 지급내역 조회 및 학생인건비 승인시 공동관리 금지사항 팝업 안내
3. 참여확약서 상에 공동관리 금지에 관한 확약사항 명기
4.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및 공포
5.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면담 실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제7장

연구윤리 교육

VII	제7장 연구윤리 교육	173
	제1절 개요	175
	1 연구윤리 교육의 목적	175
	2 관련 근거	175
	제2절 연구윤리 교육 내용	177
	1 개요	177
	2 공통 주제	177
	3 선택 주제	178
	4 연구윤리 범주 관련 주요 교육 내용	178
	제3절 연구윤리 교육 방법	180
	1 교육의 실시	180
	2 교육프로그램	181
	3 교육자료	182
	4 교육인력	183

VII

제7장 연구윤리 교육

제1절 개요

1. 연구윤리 교육의 목적

- 연구윤리 교육은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며, 특히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지속적인 연구윤리 교육 참여 및 연구기관의 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 실시 등이 요구됨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등은 연구개발기관 등에서 마련한 연구윤리 교육에 참여하고,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이 연구윤리 교육에 참여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음

규정사례

〈연구윤리 교육 관련 대학의 의무 명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30조(서울대학교의 책무) ① 서울대학교는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윤리를 교육하여야 한다. ② 서울대학교는 연구윤리 교육을 위하여 연구윤리 강사진의 확보,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연구윤리 교육 관련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의무 명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31조(연구자의 책무) ① 모든 연구자는 연구윤리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연구자는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원 및 학생으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부산대학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7조(연구윤리 지도) ① 지도교수는 연구원에게 연구윤리의 기준을 지도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연구원이 연구윤리교육과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관련 근거

- 정부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윤리를 포함한 교육·훈련 과정을 기획·시행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해당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 연구자는 지속적으로 연구윤리교육에 참여할 책임이 있고, 대학등은 정기적인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부와 전문기관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17호)

제53조(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2. 28.>

1. 연구 기획·관리·평가
2. 연구개발성과 창출의 지원 및 연구개발성과 보호·활용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기록 및 관리
4. 연구윤리
5. 연구실 안전 및 연구 보안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

제26조(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과정을 기획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⑤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② 전문기관의 장은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윤리교육 및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절 연구윤리 교육 내용

1. 개요

- ☞ 연구윤리 교육은 교육대상자와 교육 필요성,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 교육에 일반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공통 주제와 보다 심도 있는 교육이나 특수한 상황에서 실시할 수 있는 선택 주제로 구분 가능함
- 또한, 혁신법 시행령 제58조의 각 항목의 연구윤리 범주에 따라 교육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음

2. 공통 주제

☞ 연구윤리의 이해

- 연구윤리의 정의, 개념, 범위, 과학 활동의 윤리적 원칙, 연구진실성, 연구공동체와 연구실문화 등 주요 연구윤리 개념,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등을 포함

☞ 연구윤리 관련 법령과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학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기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관리기관의 연구윤리규정, 각 연구기관의 자체 연구윤리 규정

☞ 연구 활동의 종류와 바람직한 연구수행

-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적절행위, 바람직한 연구수행의 구분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연구수행 예시〉

관련 연구부정행위	바람직한 연구수행
위조/변조	• 올바른 데이터 처리 - 데이터의 처리, 선정, 보관, 분석의 원칙 준수 - 데이터 공유 • 바른 이미지 처리 원칙 • 논문철회와 위/변조 • 연구데이터의 기록과 보관: 연구노트
표절/부당한 중복게재(자기표절)	• 올바른 인용법 • 유사도 검사의 개념과 실제 • 표절과 중복게재의 예외
부당한 저자 표시	• 저자 자격과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공정한 기여도
기타 연구부정행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 • 기타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출판과 관련된 사항: 완성되지 않은 연구 결과의 발표, 연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부른 결론, 연구의 일부만 잘라서 보고하는 등의 행위	

☞ 연구부정행위 제보

-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처리 원칙, 연구부정행위 제보창구

3. 선택 주제

공통 주제에 대한 사례 제시 등 심도 있는 교육

-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원칙과 실제, IRB와 IACUC, 학술교류와 관련된 이슈 (공동연구 포함), 연구비 관리, 이해충돌,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 연구보안, 실험실 안전 (생물학안전 포함), 기타

학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 학문 분야별로 독특하게 존재하는 특성과 관행을 반영한 주제
예) 의학에서의 임상연구와 진료의 관계, 공학에서의 디자인과 제품화 문제⁸⁰⁾, 체육학분야의 연구윤리 교육⁸¹⁾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

- 과학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거나 중요성이 강조되는 윤리적 이슈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
예) 첨단과학과 관련한 연구윤리 이슈(예: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사용), 연구와 젠더 (gender as a biological variable), 연구재현성 문제, 공동교신저자, 부실학술활동, 자녀 공저자 등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데이터 관리, 저장 및 보안, 데이터 분석을 위한 올바른 통계기법의 사용, 엄격한 과학적 기준(scientific rigor) 등

기타

- 연구자간 갈등 해소 기법과 절차 (의사소통기법, 기관의 규정 처리절차 등)

4. 연구윤리 범주 관련 주요 교육 내용

① 연구진실성 관련 교육

- 연구의 제안, 수행, 연구자료의 기록 및 연구결과의 도출, 성과 활용에 이르는 연구의 전과정에서 진실성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원칙 등을 포함한 교육을 제공
- 연구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상담 등의 기능을 설치하는 경우 담당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 연구책임자, 지도교수 등은 책임 있는 연구수행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후속 연구 세대에 대한 교육·훈련의 책임을 지니며 멘토링, 교육, 감독 등을 통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② 학문교류의 연구윤리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가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정확하고 진실한 내용 및 결과를 발표하는 등 학문교류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을 포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저자표시, 저자의 소속기관 표시, 특수관계자의 저자표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 연구발표 시 공개해야 할 이해관계 등 이해충돌의 예방 및 관리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교육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보안과제 관련 보안대책 시행에 따른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훈련 제공

⁸⁰⁾ 김지인, 서인숙. (2014) 디자인 대학원의 연구윤리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conference, 429-432.에서는 작품으로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는 디자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윤리 교육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

⁸¹⁾ 권재윤, 남상백, 변현. (2021) 체육학분야의 바람직한 연구윤리교육방법 탐색을 위한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85:9-23.에서는 체육학분야 연구자에게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윤리교육 내용을 연구하여 제시하고 있음.

③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 연구기관은 연구자등 구성원에 대한 이해충돌 교육 및 상담을 실시(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관련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연구자등 구성원이 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 연구자등은 이해충돌 관련 소속 기관 및 관련 기관등의 규정, 지침 등을 숙지하고 소속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음

④ 인간대상 연구 및 동물실험

- 연구자는 반드시 연구대상자 보호와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최근 이력서나 기타 관련 문서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연구개발기관은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자는 동물 대상 실험과 관련된 규정, 인도적 취급, 안전관리, 건강 위험요소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음

📖 관련 법령

「실험동물법」(법률 제15944호)

제17조(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2.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
3. 제12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
4. 그 밖에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동물실험시설 관리자, 동물실험 연구자의 실험동물 관련 법정교육 이수 의무사항으로 연구개발기관은 관련 교육을 제공하거나 지원해야 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 종사자 및 연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확인 및 평가

⑤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 연구현장의 연구윤리의식 정착에 기여하고 연구자의 연구윤리의식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연구윤리 교육은 필수적이며, 연구자의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에 대한 내용 등 교육 범위가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 교육 내용에 '건전한 연구실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연구실 구성원 간 상호 존중, 개방형 소통, 연구자 인권 및 권익 보호 등을 포함

제3절 연구윤리 교육 방법

1. 교육의 실시

- 📖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진실성을 포함한 연구윤리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 교육 프로그램 운영, 타기관 교육 프로그램 소개·안내, 연구자의 교육시간의 확보 지원 등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용 가능
- 📖 연구윤리 교육은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주제, 연구에 관여하는 사람의 조건 등을 고려한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전문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혹은 외부 전문가를 통한 교육도 가능
- 📖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1) 교육 프로그램, (2) 교육 자료, (3)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필수적임
- 📖 연구수행과 관련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연구윤리 교육은 전문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서도 가능
예)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윤리 교육, 인간대상연구 등의 수행을 위한 생명윤리 교육



참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윤리 관련 교육 목록〉⁸²⁾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는 경력단계, 직무 및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이러닝으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구분	과정명	과정설명
집합교육 (수탁교육)	연구윤리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 확산과 책임있는 연구문화를 조성한다.
이러닝	Robot·AI 윤리를 말하다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야기되는 윤리적 이슈를 실제 사례와 윤리적 실천원칙을 통해 학습한다.
	과학기술인 공감탐구생활	과학기술인에게 필요한 공감역량과 타 분야 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등을 학습한다.
	올바른 연구수행을 위한 R&D 길잡이	연구개발 수행 단계에서 일어나는 연구실 안전, 연구 보안, 연구 윤리, 연구비 관리 등 주요 이슈를 학습한다.
	대학생을 위한 학습윤리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절, 위조와 변조,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등 학습윤리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학습한다.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이공계, 인문사회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수행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연구윤리에 대한 다양한 현장사례를 학습한다.
	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 (이공계, 인문사회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수행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연구윤리에 대한 다양한 현장사례를 학습한다.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 (이공계, 인문사회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연구수행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연구윤리에 대한 다양한 현장사례를 학습한다.
	연구윤리 심화콘텐츠 (이공계,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올바른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연구자가 지켜야할 연구윤리를 전공 관련 이론과 심화 사례 등을 통해 학습한다.
	갑질예방교육	갑질의 개념과 유형별 사례에 대해 이해하고, 갑질 행위에 대한 대응방법을 학습한다.

구분	과정명	과정설명
	성별특성인식교육	양성평등에 대한 기본개념과 젠더 감수성에 대해 이해하고 양성평등 R&D 정책과 제도를 학습한다.
	손수호 변호사의 현장 속으로 _4대 폭력 예방	4대 폭력에 대한 사례와 예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기반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사례를 학습한다.
	카드뉴스로 보는 청탁금지 교육	'부정청탁금지법'을 기반으로 청탁금지법의 기본 개념과 공직자 행위규범 등을 주요 이슈와 사례 중심으로 학습한다.

2. 교육프로그램

 연구윤리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고 효과적인 교육 효과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음

① 전문 교육프로그램 (Stand-alone courses)

-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연구윤리실무자, 연구윤리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한 직무 교육
예) (사)대학연구윤리협회의 연구윤리세미나, 연구윤리워크숍, 연구윤리검증전문가 양성프로그램,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연구윤리실무자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연구윤리강사 양성 프로그램 등
-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연구자에게 요구하는 필수 연구윤리 교육
예)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 이공계와 인문사회계로 구분하고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② 세미나/워크숍/콜로키움

-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연수회, 강습회, 학술토론회 등으로 특히 긴급하게 문제가 되는 주제에 대한 교육이나 실무교육에 효과적

③ 정식 교과목 개설

- 학부 혹은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필수 혹은 선택 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장단점을 고려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

구분	내용
장점	아직 연구 환경에 본격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분하고 심도있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연구윤리 확립에 도움이 됨
단점	학생들에게 연구윤리 이슈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고착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과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형식적인 학습으로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들이 있음
보완점	정식 교과목에 포함시킬 경우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전문강사를 확보하고, 강사에 대한 보수 교육이 필요함. 아울러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수강생에 대한 멘토링을 하는 등 보완이 필요

82) “교육과정”, KIRD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2021.11.29. 접속),
<https://www.kird.re.kr/portal/guide/systemViewAction.do?pageTitle=01&pageSubTitle=01>

- 교과과정에 포함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교육기법으로는 강의, 토론, 전문가 패널, 사례 토의, 역할극, 전공과목 내용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이슈를 제기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한 학습 방법 등이 있음

학습 방법	과정설명
강의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 등 특정 주제에 맞춘 강의
토론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 (연구윤리 개념, 범주, 원칙 등)
전문가 패널	특정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
사례 토의	연구부정행위, 검증 등과 관련한 사례 중심 혹은 소집단 중심의 문제해결, 모범사례의 제시 및 토론
역할극	참가자들이 역할을 맡아 연극형식으로 윤리적 견해 등을 표현
전공 관련 이슈	공학윤리, 생명의료윤리 등 전공분야의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윤리적 책임의식 고취
봉사활동을 통한 학습	연구윤리와 봉사학습을 연계하여 사회참여를 통한 윤리의식 및 사회적 책임의식 배양

④ 온라인 교육 모듈

- 필요할 때마다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교육 콘텐츠를 탑재
예) 최근 BK21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강의를 녹화 온라인에서 제공
- 다만, 온라인 교육의 단점으로 교육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으며 대표적 한계점으로 (1) 강사와의 개인 차원에서의 상호작용이 불가능하고, (2) 윤리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인 태도, 행동, 술기(術技) 등 관련 요소를 포함한 교육자료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음

⑤ 현장 실습 교육

- 실험실 혹은 연구실에서의 실습을 통한 교육
- 연구윤리 주제에 대한 보편적인 교육은 어려우나 실험실 안전, 연구실 문화 등에 대한 교육에 적절

⑥ 혼성프로그램

- 위에 제시한 방법들을 혼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구성

3. 교육자료

-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연구윤리협의회 등에서 연구윤리 관련 교육 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연구윤리정보포털(<https://www.cre.re.kr>)에서 다양한 정보 및 자료를 열람 가능함
-  신문, 방송,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을 검색하여 주요 사례에 대한 내용을 구할 수 있음
예) 'Q&A로 알아보는 연구윤리: 중복게재와 자기표절 문제'(연구윤리정보포털), '표절-일반적 지식 또는 확인된 사실의 오용'(명지대학교 도서관) 등
-  각 대학교 등에서 자체적으로 수준에 맞추어 연구윤리 교재를 발간
예) 고려대학교는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교재를 자체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는 자체 연구윤리 가이드(https://libguide.snu.ac.kr/research_ethics)를 운영

4. 교육인력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전문강사를 채용 혹은 외부교육을 통해 연구윤리 전문 인력을 양성

예)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연구윤리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 활용

- 연구기관 소속 연구윤리 전문 인력의 담당 업무 예시: 연구윤리의 기본 필수교육 담당, 교과과정 연계 교육이나 웹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자체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다양한 수요에 대응 등을 위한 경우, 외부 강사 위촉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 가능

예)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방문형 연구윤리 교육 활용

- 연구윤리 최근 이슈 등 특수 주제를 대상으로 하거나 심도 있는 교육에 활용

[연구자의 연구윤리 Master제도 운영(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관의 특징인 지역분산체계에 따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연구소·본부별 연구윤리 가교(연결) 역할을 담당할 연구윤리 Master제도 운영

1. 연구윤리 Master제도 개요

📌 (목적) 내부 연구윤리 전문가(연구윤리 Master) 양성을 통해, 기관 연구윤리 역량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사전 예방

2. 추진 체계 및 역할

[사업운영평가실]

📌 전체 연구원 연구윤리를 총괄하며, 연구윤리 관련 전반적인 계획·제도 수립, 연구윤리 Master의 육성 담당

[연구윤리 Master]

📌 연구소/본부 중 대표 연구책임자(1~2명)가 연구윤리 Master가 되어 Contact Point가 되며, 지역별 소규모 연구윤리 교육·상담 등을 수행

3. Master의 지위 및 주요 임무

📌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일선 연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연구자들의 Master를 순환 담당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참여 및 저변 확대

📌 (보수교육) 매년 1회 연구윤리 Master 대상 워크숍 형태의 보수교육 실시

[연구윤리 Master 양성교육 개요]

- 대상 : 기관 소속 연구윤리 Master
- 기간 : 1박2일(13시간)
- 주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과 생기원 공동주관
- 주요 내용 : 연구부정행위 사례, 생명윤리(IRB) 심의 이해 등

4. 주요 활동 및 지원현황

- 📌 (주요활동) 매 분기마다 3~5명 인원을 모아서 연구윤리 교육하는 '삼삼오오(三三五五) 프로젝트' 추진
- 연구윤리 Master는 매 분기마다 3~5명의 동료들을 모아서 연구윤리 교육·상담 진행 (연 4회)
 - 해당 시간에는 연구윤리 교육을 포함하여, 연구윤리 관련 고민사항/궁금점 등을 자유롭게 나누고 이야기하는 캐주얼한 시간으로 진행
 - 교육자료는 사업운영평가실에서 제공하며, Master는 교육 완료 후 간단한 교육 결과보고 작성 후, 사업운영평가실 담당자에게 송부

 (기관에서의 지원) '삼삼오오(三三五五) 프로젝트'추진시 회의비(다과비포함) 지원

[삼삼오오(三三五五) 프로젝트 교육내용(예시)]

- 중복게재 및 출판윤리, 연구윤리관련 출처 표기방법, 학위논문의 전문학술지 게재 혹은 기 게재논문을 활용한 학위논문 작성 시 중복성 검토, 유사한 내용의 국문 및 영문 논문 게재시 중복성 검토 등

우수사례 ②

[연구윤리교육 필수 이수를 위한 연구윤리교육시스템 마련(고려대학교)]

졸업요건을 강화하여 대학원생들이 연구윤리교육을 필수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고 모든 신입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 신설 및 비교과 한국어, 외국어 상시 온라인 연구윤리교육 시스템 마련

1. 학칙개정

 연구윤리교육 강화를 위해 학칙 개정하고 모든 대학원생이 연구윤리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하여 졸업요건도 강화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인권과 성평등 및 연구윤리교육)

③ 인권과 성평등 및 연구윤리 교육은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제43조(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켜야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7. 연구윤리 교육을 수강한 자

제44조(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켜야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8. 연구윤리 교육을 수강한 자

제83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켜야 통합과정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8. 연구윤리 교육을 수강한 자

2. 교과·비교과 연구윤리교육

 모든 신입생들을 위한 정규 교과목 개설하여 이공계열, 의학계열, 인문계열 등 세분화된 연구윤리교육을 강화함. 또한 비교과 온라인 연구윤리교육도 제공

구분	주요 내용
이공계열	연구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연구 각 단계별 연구윤리 이슈, 연구환경의 변화, 과학활동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행위의 원칙, 과학자와 사회적 책임, 과학기술인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이유, 이공계 연구윤리의 특수성과 자주 발생하는 부적절한 사례, 이공계 연구윤리의 주요 이슈
의학계열	연구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연구 각 단계별 연구윤리 이슈, 연구환경의 변화, 과학활동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행위의 원칙, 의학계 연구윤리의 특수성과 자주 발생하는 부적절한 사례, 의학계 연구윤리의 주요 이슈
인문계열	연구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연구 각 단계별 연구윤리 이슈, 연구환경의 변화, 과학활동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행위의 원칙, 인문계 연구윤리의 특수성과 자주 발생하는 부적절한 사례, 인문계 연구윤리의 주요 이슈

3. 비대면 상시 온라인 연구윤리교육

 비대면 상시 온라인 연구윤리교육을 통해 연구에 필요한 연구윤리교육을 장소와 시간의 제한 없이 제공

4. 외국어 연구윤리교육

 타국적의 외국학생들을 위한 영어 연구윤리교육 제공

우수사례 ③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제작(한국기계연구원)]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22.05. 개정본)의 주요 내용을 발췌 및 재구성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연구원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 '연구윤리 문제발생 사전예방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1.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22.05. 개정본)」 적극 활용

- ☞ 정부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게시판 단순 게시를 지양하고 가이드라인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22.05. 개정본)」의 주요 내용을 발췌·편집
- 혁신법의 연구윤리 개념, 연구진실성 보호,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등 주요 내용 중심

2. 기계(연)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 추가 (연구윤리관련 규정, 제도)

- ☞ 바람직한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 원칙들인 연구원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연구자의 이해도 제고
-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 ('연구윤리규정'),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 ('임직원 행동 강령 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제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 연구원에서 연구윤리 관련 중점 추진/시행 중인 사항도 포함하여 안내 (연구윤리 추진계획(2021~2023))

〈연구윤리 문제발생 사전예방 가이드라인(예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길잡이에서 반영한 내용	기계(연)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내용
• 총 8장 중 주요 5개 부분 (연구윤리 개요,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반영 • 연구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본개념, 관련 법령, 예시(체크리스트 등) 중심으로 재편집	• 연구원 규정 중 연구윤리와 관련성이 높은 3개 규정 ('연구윤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반영 • 추가적으로 연구원 '2021~2023 연구윤리 추진계획' 수립 내용 반영하여 연구윤리 관련 연구원 제도 총망라

연구윤리 문제발생 사전예방 가이드라인 표지 및 목차

연구윤리 문제발생 사전예방 가이드라인 2022. 10. 한 국 기 계 연 구 원	순 서 I. 연구윤리 개요 1 II.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3 III.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14 IV.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37 V.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47 〈참고〉 연구원 관련 규정 57 1. 연구윤리규정 57 2.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66 3.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108 〈참고〉 2021~2023 연구윤리 추진계획 134
---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제8장

예시규정

VIII

제8장 예시규정

해당 예시규정은 연구개발기관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예시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윤리 규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음

- 각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예시규정을 참고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게 제정할 것을 권고
 - ※ 각 조문의 내용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의 연구윤리 규정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으며, 연구개발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절한 형식(규정, 지침, 세칙 등)과 내용을 포함한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제4장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따른 예시규정의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준수 의무가 있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적용 가능한 예시규정과 함께 해당 법령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민간연구기관에서 적용 가능한 예시규정을 각각 제시하였으므로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활용 가능함

OOOOO 연구윤리규정

담당부서: 000 000

제1장 총 칙

제00조(목적) 이 규정은 OOOOO(이하 ‘OO’이라 한다)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연구개발 과제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 OO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 및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 연구원(방문연구원, 학생연구원, 위촉연구원 등 포함), 행정지원인력 등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

제0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특정 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구의 진실성 보호 및 관리

제00조(원칙)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이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연구결과 발표 이후 연구윤리의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OO(대학, 연구원, 기업)은 연구자가 연구수행에서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00조(연구자료의 기록 및 연구결과의 도출) ① 연구자는 정확하고 검증된 연구자료(실험의 재료·과정·결과, 관찰·현장조사·설문조사 결과 등 원자료인 연구데이터와 이를 처리한 2차 자료)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연구자료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③ 연구자는 적절한 실험설계와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OO(대학, 연구원, 기업)은 연구자료, 연구노트 등의 소유, 관리 등의 책임, 보존, 폐기, 보안 및 공개 등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

제00조(연구성과의 사용) ①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연구문헌 등을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연구저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 및 인용 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조(연구결과 활용)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외부의 평판 제고나 연구비 확보 등을 위해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학문교류

제00조(연구결과 발표의 원칙)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를 발표하기 전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00조(저자) ① 연구자는 연구 계획, 개념 정립, 연구수행, 결과 분석 및 작성 등 연구활동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한 연구자들만을 저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③ 저자표시 순서는 참여한 모든 저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 및 해당 전공분야의 특성과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저자 이외에 연구데이터·자료의 수집, 입력 또는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주체에 대하여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00조(저자의 소속기관 표시) 연구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00조(특수관계인의 저자표시) ① 특수관계인(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의 공동 연구 발표 및 논문 공저 시 연구자는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저자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② 연구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소속 기관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기관은 소속 연구자와 특수관계인 간의 공저 논문들에 대한 서지사항과 논문 원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제00조(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①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자료, 연구 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 나.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
 -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 ② OO(대학, 연구원, 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조(국제교류에서 정보의 보호) ① 연구자는 해외연구자 또는 해외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상호 업무를 통한 결과 발표, 자문 등을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연구자는 해외연구자와 해외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나 상호 업무협조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관련 과제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연구진행과정에서 해외기관에 제공되는 연구자료 및 산출물 등 대해 검토와 승인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② OO(대학, 연구원, 기업)은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에 규정된 사항과 “산업기술보호법” 등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공공연구기관 규정사례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방법(예시)

제00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0. “이해충돌”이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공적(公的) 업무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적(私的)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제00조(연구기관의 책무) ① 연구기관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자등”이라 한다)이 연구개발 이해충돌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함에 있어 연구, 교육, 실험실창업, 외부활동 및 각종 연구개발 지원업무 등 연구자등의 다양한 직무 수행을 위축시키거나 과도한 규제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자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연구기관은 연구자등이 위반행위 신고와 같은 이해충돌 예방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조(연구자의 책무) ① 연구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연구자등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00조(이해충돌의 예방 및 관리) ① 연구기관 및 연구자등은 연구개발 이해충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방지에 관한 법률」 등 이해충돌 관련 법령의 제반 사항을 준용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에 대한 제1항의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의 이해충돌담당관으로 본다.

공공연구기관 규정사례 (2) 기존 연구윤리규정에 선택적으로 삽입될 이해충돌 규정(예시)

제1장 총칙

제00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0. “이해충돌”이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공적(公的) 업무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적(私的)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제00장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제00조(연구기관의 책무) ① 연구기관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자등”이라 한다)이 연구개발 이해충돌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함에 있어 연구, 교육, 실험실창업, 외부활동 및 각종 연구개발 지원업무 등 연구자등의 다양한 직무 수행을 위축시키거나 과도한 규제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자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연구자등이 위반행위 신고와 같은 이해충돌 예방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조(연구자의 책무) ① 연구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자등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00조(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①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자등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것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고 및 회피 신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등이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자 등이 연구기관의 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이 이해충돌로 인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 수행의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연구자등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2년 이내 퇴직자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을 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00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연구기관이 부동산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연구자등은 본인, 배우자, 자신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이 연구기관의 000 개발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00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연구자등은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연구자등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금전적 거래, 부동산 거래, 물품·용역의 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거래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함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함
3.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함

제00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연구자등은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기관의 직무와 통제 범위를 벗어난 다음 각 호의 외부활동, 영리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연구자등의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연구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함
3. 연구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연구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연구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함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연구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함

제00조(재산상 이익 목적 직무상 비밀 이용 제한) 연구자등(퇴직 후 3년 이내 포함)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연구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밖에 사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되며,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밖에 사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조(재직자 가족채용 제한 등) ① 연구기관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직의 재직자,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기관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직의 재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재직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00조(이해충돌 예방 교육 등)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연구자는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이해관계의 공개 및 이해충돌 발생,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에 대한 조치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00조(위반행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연구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이해충돌 신고 등을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기관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등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연구자율성과 이해충돌의 균형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연구기관의 장은 이해충돌 관련 교육·상담, 신고 접수·처리, 공정직무 수행 점검, 기타 관련 절차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자등 중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제정된 행동강령을 담당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이해충돌담당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민간연구기관 규정사례 (1) 법률이 정하는 필수적인 사항만 포함하는 연구윤리규정(예시)

제00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0. “이해충돌”이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우리기관의 공적(公的) 업무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적(私的)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제00조(연구기관의 책무) ① 연구기관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자등”이라 한다)이 연구개발 이해충돌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함에 있어 연구, 교육, 실험실창업, 외부활동 및 각종 연구개발 지원업무 등 연구자등의 다양한 직무 수행을 위축시키거나 과도한 규제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자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연구자등이 위반행위 신고와 같은 이해충돌 예방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조(연구자의 책무) ① 연구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자등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00조(민간기관 재직자 공무수행사인 활동시 의무) ① 우리기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에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제14조의 재산상 이익 목적 직무상 비밀 이용 제한 의무가 부과된다.

② 공무수행사인은 제1항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민간연구기관 규정사례 (2) 별도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 규정 제정(예시)

제1장 총칙

제00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0. “이해충돌”이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공적(公的) 업무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적(私的)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제00장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제00조(연구기관의 책무) ① 연구기관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자등”이라 한다)이 연구개발 이해충돌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함에 있어 연구, 교육, 실험실창업, 외부활동 및 각종 연구개발 지원업무 등 연구자등의 다양한 직무 수행을 위축시키거나 과도한 규제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자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연구자등이 위반행위 신고와 같은 이해충돌 예방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조(연구자의 책무) ① 연구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자등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00조(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①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자등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것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고 및 회피 신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등이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자 등이 연구기관의 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이 이해충돌로 인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 수행의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연구자등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2년 이내 퇴직자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을 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00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연구기관이 부동산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연구자등은 본인, 배우자, 자신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이 연구기관의 000 개발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00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연구자등은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연구자등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금전적 거래, 부동산 거래, 물품·용역의 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거래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함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함
3.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함

제00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연구자등은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기관의 직무와 통제 범위를 벗어난 다음 각 호의 외부활동, 영리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연구자등의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연구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함
3. 연구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연구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연구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함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연구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함

제00조(재산상 이익 목적 직무상 비밀 이용 제한) 연구자등(퇴직 후 3년 이내 포함)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연구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밖에 사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되며,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밖에 사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조(민간기관 재직자 공무수행사인 활동시 의무) ① 우리기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에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의 사적이익관계자 신고·회피, 제14조의 재산상 이익 목적 직무상 비밀 이용 제한 의무가 부과된다.

② 공무수행사인은 제1항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00조(재직자 가족채용 제한 등) ① 연구기관은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직의 재직자,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기관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직의 재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재직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00조(이해충돌 예방 교육 등)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연구자는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이해관계의 공개 및 이해충돌 발생,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에 대한 조치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00조(위반행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연구기관, 감사실,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이해충돌 신고 등을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기관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등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연구자율성과 이해충돌의 균형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연구기관의 장은 이해충돌 관련 교육·상담, 신고 접수·처리, 공정직무 수행 점검, 기타 관련 절차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자등 중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제정된 행동강령을 담당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이해충돌담당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제5장 인간 대상 연구

제00조(인간 대상 연구의 원칙)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임상시험관리기준, 관련 법률 및 OO(대학, 연구원, 기업)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인격적 존엄성을 항상 보호해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편견 없이 공정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

③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연구대상자는 거부할 권리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중단할 권리를 갖는다.

④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편익을 최대화시키고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가 자율적인 의사 결정에 부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⑥ 연구자는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연구대상자의 동의과정이나 위험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00조(고지 동의 의무)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연구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피험자의 권리, 있을 수 있는 위험과 이익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연구대상자의 동의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단, 이해능력, 의사표현 능력의 결여로 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연구대상자의 친권자, 배우자 등 적법하게 연구대상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의 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연구자는 연구나 시험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연구대상자의 질문에 알기 쉬운 말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00조(연구대상자 보호) ① 연구대상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은 연구데이터의 비밀유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밀유지가 어려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및 결과를 연구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 과정에서 새로운 위험 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대상자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양자로부터 새로운 동의서와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자 보호 준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책무를 진다.

제00조(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OO(대학, 연구원, 기업)은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과 연구대상자 보호에 대한 심의, 조사·감독과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한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00조(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① 인간 대상 연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OO(대학, 연구원, 기업) 생명윤리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

② OO(대학, 연구원, 기업) 생명윤리위원회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연구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00조(관련 법규 준수 의무) 그 밖에 인간 대상 연구에 관한 사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동물실험

제00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옹호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원칙들을 준수하여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1. 대체원칙: 비동물 모형을 사용하거나 가급적 하등동물을 사용함
2. 감소원칙: 실험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함
3. 고통완화 및 환경 개선원칙: 불필요한 통증과 고통을 제거하거나 축소함
- ②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운송, 보호 및 사용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③ 연구의 설계와 수행은 인간 또는 동물 보건과의 관련성, 지식의 진보 또는 사회의 공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00조(윤리적인 동물 실험) ①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괴로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정제 및 진통제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하며, 완화될 수 없는 고통이나 만성적이며 심각한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을 고통 없이 안락사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실험동물을 적절하게 사육·관리하는 등 실험동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유해 물질을 실험동물에 사용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고 실험과정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00조(안전관리) ① 연구과정에서 실험동물을 보호하고 다루는 책임자의 자격 및 기술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② 실험동물 관리자는 실험동물이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③ OO(대학, 연구원, 기업)은 실험과정에서 실험동물에 의해 실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며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실험동물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실험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훈련을 거친 후 실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
- ④ 실험이 종료된 동물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안락사 시켜야 하며, 실험동물의 사체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 ⑤ OO(대학, 연구원, 기업)은 동물실험의 폐기물 등의 적절한 처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⑥ OO(대학, 연구원, 기업)은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건강과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조(기록)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실험동물의 종류, 사용량, 수행된 연구의 절차, 연구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00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OO(대학, 연구원, 기업)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 및 지원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②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에 관한 심의 및 지도·감독,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한 필요한 조치 요청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00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① 동물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OO(대학, 연구원, 기업)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

② OO(대학, 연구원, 기업)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연구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00조(관련 법규 준수 의무)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장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제00조(연구자 권익보호) ①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보장하며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권 보호, 권익향상 및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성별, 나이, 종교, 출신 지역, 성적 취향 등에 따른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들에게 공정하게 연구성과 및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④ OO(대학, 연구원, 기업)은 연구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위력행사 및 그 밖에 권익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을 통하여 연구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00조(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및 갈등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원 상호 간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하며, 필요 시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실 지침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00조(연구실 내 소통 및 자율성 강화)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참여연구원의 연구가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자의 연구 수행기간동안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의견 개진을 보장하여 연구실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00조(연구자 안전 및 건강 보호)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과 관련된 연구실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 수행 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OO(대학, 연구원, 기업)은 연구자가 연구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8장 연구윤리 교육

제00조(연구윤리 교육) ① OO(대학, 연구원, 기업)은 소속 연구자 및 관련 직무 담당자등의 연구윤리 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OO(대학, 연구원, 기업)은 연구윤리 교육을 위하여 연구윤리 강사진의 확보, 연구윤리 교육자료의 개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조(연구자의 책무) ① 연구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OO(대학, 연구원, 기업)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원 및 학생으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00조(연구윤리교육의 내용) 연구윤리교육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전공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구체적 사례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부 록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조사·검증 및
처리절차

부록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조사·검증 및 처리절차

본 부록은 혁신법 시행령(제57조제1항) 및 시행규칙(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제규정의 제정 및 운영 시 참고할 사항을 수록한 것입니다.

제1절 개요

1. 부정행위의 개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요조사/사전기획/제안/수행/결과 보고 및 발표 등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임

- R&D와 연관된 모든 부정행위 (위조·변조·표절·부당저자표시 + 연구비 부정 + 기타(개인명의 특허출원 등, 보안과제의 보안사항 유출, 생명윤리법 등 R&D 관계법률 위반 등))가 포함됨(혁신법 제31조 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는 연구진실성 확립을 위해 규제하는 연구부정행위(혁신법 제31조제1항 제1호)와 연구개발 수행의 책무성 확립을 위해 규제하는 일반부정행위(혁신법 제31조제1항제2~6호)로 구분할 수 있음.

〈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범위〉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		세부 기준	비고	일반부정행위
제1호	위조·변조·표절·부당저자표시	혁신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연구부정행위	
제2호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	혁신법(제13조)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연구비 부정 또는 연구개발 용도 외 사용	
제3호	성과소유위반	혁신법(제16조 제1~3항)	개인 또는 제3자 명의 특허출원 등	
제4호	보안대책위반	혁신법(제21조 제1~2항)	국가 R&D 보안대책 위반 또는 보안사항 외부 유출	
제5호	연구개발과제 부정 신청·수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신청 또는 수행 부정	
제6호	연구개발활동 건전성 저해행위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혁신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으로 정하는 행위	제1호 : 조사방해 제2호 : 연구비 사용 건전성 저해 제3호 : 생명윤리 위반 제4호 : 연구실 안전 위반	

〈부정행위 개념 정의 관련 법규〉

구분	내용	비고
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2조 8호) “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수요조사에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라.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평가단,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행위	과제의 수요조사/사전 기획/제안/수행/결과 보고 및 발표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2. 22.> 1.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과제의 제안/수행/결과 보고 및 발표 전반에 적용됨을 명시
연구윤리지침 ⁵⁾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 부정행위의 세부 유형

● 연구부정행위 (혁신법 제31조 제1항 1호에 따른 부정행위)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통상 위조·변조·표절·부당저자표시 등을 연구부정행위라 부르며, 이러한 행위들의 예방 활동은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 할 수 있음

〈위조·변조·표절·부당저자표시의 세부기준〉

구분	혁신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학술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교육부 훈령)

〈연구부정행위의 세부 유형에 대한 혁신법과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의 비교〉

구분	혁신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제12조 제1항)	비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 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실질적으로 동일 의미
변조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실질적으로 동일 의미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 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 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 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 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약간 다른 (혁신법은 자기표절 개념을 도입함)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 의미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혁신법의 자기표절과 유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6호와 연계됨
기타	-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5호와 연계됨

● 일반부정행위 (혁신법 제3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부정행위)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 성과소유위반, 보안대책위반, 연구개발과제 부정 신청·수행, 연구개발 활동 건전성 저해행위 등을 연구부정행위라 부르며, 이러한 행위들의 예방 활동은 국가연구개발 수행의 책무성 확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 할 수 있음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 (혁신법 제31조제1항제2호)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둘 다를 위반한 경우를 말함
- 단순히 사용기준만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고, 부적절행위로 보고 관련 연구개발비를 정산 불인정금액으로 처리(해당 금액 회수)하게 됨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 (사용용도) 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사용용도는 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상세하게 제시됨.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혁신법 제13조제3항 :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 (사용기준) 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상세하게 제시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혁신법 제13조제4항 :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성과소유 위반] (혁신법 제31조제1항3호)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  국가연구개발 성과물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연구개발기관이 성과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기관은 내부 직무발명규정 등에 직무발명 등의 권리 승계 및 포기의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함.

관련 법령 : 연구개발성과 소유

「혁신법 제16조제1~3항」

-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안대책 위반] (혁신법 제31조제1항제4호)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  이 조항은 혁신법(제21조 제1~2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혁신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과 보안과제 분류〉

구분	보안대책	보안과제 분류
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혁신법 시행령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보안대책”이라 한다)을 수립·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구분	보안대책	보안과제 분류
	시행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6.> 1. 소속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 2.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3.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 제정·운영 방안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연구개발과제 부정 신청·수행] (혁신법 제31조제1항제5호)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이 조항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신청이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짓이나 부정행위에 적용되는 것임

- 연구개발 부정 신청(예시) :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과제를 신청한 경우, 연구계획서에 연구책임자 대표실적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
- 연구개발 부정 수행(예시) : 연구과제 수행자격 없는 자의 연구과제 수행, 연구 활동이나 성과물의 허위 기재 등

[연구개발활동 건전성 저해행위] (혁신법 제31조제1항제6호)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 조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아래 표와 같음.

〈관련법령 : 대통령령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건전성 저해행위〉

구분	혁신법 시행령(제56조제1항각호)	비고
조사방해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위협·협박	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방해 행위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와 유사함)
연구비 사용 건전성 저해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연구비의 사용 증명자료 및 사용 내역 보고 관련 부정행위
생명윤리 위반(*)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벌칙 규정 위반자(동 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 처분을 받은 자) (동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해당하지 않음)
연구실안전 위반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연구실 안전 소홀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2절 부정행위의 조사·검증 절차

1. 조사·검증의 책임 주체

● (원칙) 연구자 소속기관이 검증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검증 책임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될 당시의 연구자 소속기관에 있음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 관련 부정행위의 조사·검증 책임 주체〉

혁신법(제31조제2항)	연구윤리지침(제16조제1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 (예외) 소관 중앙행정기관(연구관리 전문기관)이 검증

 혁신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연구관리 전문기관)이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검증을 실시할 수도 있음

〈관련 법령 : 중앙행정기관이 조사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부정행위〉

혁신법(제31조제3항)	연구윤리지침(제27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이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등의 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혁신법 시행령(제57조제5항)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에 따른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2. 조사·검증 절차의 운영

(1) 총괄

☞ 혁신법 시행령(제57조 제1항)에 따라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은 부정행위의 조사·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기존 자체규정(예시 : ○○대학교 연구윤리규정)을 개정하여 혁신법에 따른 부정행위의 조사·검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참고로 연구부정행위는 기존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일반부정행위의 조사·검증 절차와 기준의 마련은 해당 기관의 내부 감사 절차와 기준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학술진흥법에 따르면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어,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 규정된 연구부정행위와 동일한 조사검증 절차를 거쳐야 함

〈국가연구개발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포함할 사항〉

혁신법 시행령(제57조제1항)	혁신법 시행규칙(제4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보고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를 받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부정행위 검증을 시작해야 하는 기한 2. 부정행위 검증 기간 3. 부정행위 검증 결과 및 판단 이유를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한 4. 부정행위 검증 결과에 대한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절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조사·검증 세부 절차 구성(안) 〈예시〉〉



(2) 부정행위의 조사·검증

1) 공통 부문

● 부정행위 신고 및 접수

- ☞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은 자체규정에 부정행위의 신고(익명신고 포함) 및 접수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혁신법 시행규칙(제3조)

- ① 누구든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익명으로 제보(이하 “익명제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제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의 내용
 2. 부정행위로 제보한 사유 및 증거자료
 3. 부정행위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5. 부정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6. 제보한 부정행위 검증·조치의 결과를 통보받을 연락처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의 제보를 접수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제보를 접수하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부정행위 발생 당시 그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보 등을 이관해야 한다.

- ☞ (부정행위 신고처리 담당부서 지정 등)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은 내부 구성원들이나 외부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행위 신고서를 적절하게 접수할 수 있는 체계(온/오프라인 신고센터 운영 등)를 구축하고 이들 신고서를 처리하는 담당부서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함.

- ☞ (부정행위 신고서 사전 검토 등)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은 접수된 부정행위 신고서에 대한 요건 검토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함.



참고

〈부정행위 신고서 요건검토 기준(예시)〉

- ① 제보된 부정행위 의혹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② 제보된 증거가 의혹을 뒷받침할 만큼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가?

※ 제보된 내용과 증거물이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고, 충분히 보완된 경우에 한해 정식 제보로 접수
- ③ 제보된 의혹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1항각호)」에 따른 부정행위의 범위에 해당하는가?

※ 제보된 의혹이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식 제보로 접수하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④ 제보된 의혹은 정부 지원 과제와 관련된 사항인가?

※ 출처 : 「연구부정 의심행위 세부 처리절차 확립(2022, 한국연구재단 내부자료)」를 재구성

● 제보자의 권리보호

- ① 대학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개발기관은 자체규정에 부정행위 제보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 ② (신변 보호) 연구개발기관은 제보자의 신원노출, 신분상 불이익, 위협·협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변 보호에 주의해야 함.
- ③ (알권리 보장) 연구개발기관은 제보자에게 조사 절차 및 일정을 안내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등 알권리를 보장해야 함.



참고

〈제보자의 권리보호 -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③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 ① 대학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개발기관은 자체규정에 부정행위 피조사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 ② (명예 보호) 연구개발기관은 부정행위 조사·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③ (방어권 보장) 연구개발기관은 피조사자에게 조사 절차 및 일정을 안내하고 소명 및 변론의 기회를 보장해야 함.



참고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②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④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 조사·검증 총괄 기구

- ☞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에서는 부정행위 조사·검증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총괄하는 전담부서(예시 : 연구윤리센터, 감사실 등)를 지정하고 조사·검증 활동을 감독하고 조사결과를 확정하는 기관 상설 위원회(명칭 :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함.

〈연구윤리위원회(또는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주요 역할 (예시)〉

- 해당 연구개발기관 구성원의 연구윤리 확립 및 부정행위 조사·처분과 관련된 아래 사항을 심의
 - 연구윤리 확립 : 해당 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시행, 연구윤리 교육 및 문화 확산 등
 - 부정행위 조사·처분 :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와 처리, 예비조사·본조사 등의 실시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예비조사·본조사 등의 조사결과 승인, 제보자 및 피조사자 권리보호, 부정행위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 등

2) 연구부정행위

- ☞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은 자체규정에 연구부정행위 조사·검증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 ☞ 연구진실성 훼손 여부를 가리는 연구부정행위(혁신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조사·검증에서는 “예비조사 ⇨ 본조사 ⇨ 판정 ⇨ 이의신청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각각의 조사 단계에서 지켜야 할 요건(조사위원 구성 기준, 조사기한 등)이 있음.
- ※ 예비조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조건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제18조제2항)
 - ※ 본조사 없이 예비조사만으로 곧바로 판정할 수 있는 조건 :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제19조제2항)



참고

〈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과 절차 -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대학등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④ 대학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

- 예비조사는 연구부정 의심행위에 대한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피조사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만 본조사 없이 판정을 내릴 수 있음.
- 참고로 연구부정행위 사실 여부 입증은 예비조사가 아닌 본조사에서 다루어함.



참고

〈예비조사 -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제19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해당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3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해당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 본조사

- 본조사는 조사대상 연구부정 의심행위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절차로 통상 1)제보자료 검토 및 관련 자료 요구, 2)제보자·피조사자·기타 증인 및 관계자에 대한 서면 및 구두 의견 청취 (필요 시 제보자 관련 사항은 생략 가능), 3)쟁점 사안에 대한 조사위원 간 토론 및 의견 조정, 4)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됨.
- 본조사 추진 시 특히 주의할 사항은 조사위원 구성의 객관성 유지와 조사위원과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 간의 이해충돌 방지임.



참고

〈본조사 -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제20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21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22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판정

 통상 대부분의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은 본조사가 완료되면, 기관의 상설 기구인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동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게 됨.

- 조사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본조사 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함.
- 조사결과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 조사결과를 승인하고 기관장에게 후속 조치를 요구함.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본조사 조사결과를 승인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판정 사항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함.



참고

〈판정 -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제24조(판정) ① "판정"은 해당기관의 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처리

-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 해당 기관의 장은 상기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종전의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판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종전의 판정 결과를 확정하게 됨.



참고

〈이의신청 -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제25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 일반부정행위

- ☞ 연구부정행위와 달리 연구비 사용 부정행위 등 일반부정행위(혁신법 제31조제1항제2~6호)의 조사·검증은 연구진실성 훼손 여부를 가리는 조사가 아니고,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부정행위의 조사·검증 절차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음. 즉 일반부정행위는 연구부정행위와 다른 조사·검증 절차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예비조사 단계를 생략할 수 있고, 조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외부 전문가 및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구성 비율 요건 등을 연구부정행위 조사와는 다르게 규정할 수도 있음.
- ☞ 일반부정행위의 조사·검증 세부절차와 기준 확립은 연구부정행위의 조사·검증 관련 규정과 기관 내부의 감사규정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절차와 기준을 확립해야 함.
- ☞ (절차) 전반적으로 연구부정행위 조사·검증 절차를 준용하되, 부정행위의 제보 내용 또는 자체인지 내용이 조사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절차 확립이 필요함 <굳이 예비조사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음>.
- ☞ (조사위원 구성) 연구개발기관 내부의 감사 규정을 등을 참고하여 조사위원(또는 자체 감사반) 구성 원칙 등을 확립해야 함.
 - 연구부정행위의 본조사를 위한 위원 구성 원칙(외부위원,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비율 등)을 참고하되 다른 합리적 방식으로 구성해도 무방함.
- ☞ (조사기간) 연구부정행위와 달리 예비조사 단계를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조사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함.
 - ※ 조사기간(예시) : 조사 착수(일반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조사 종료(조사를 착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조사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
- ☞ (기타)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 조사와 관련된 일반부정행위(조사방해 등)가 발생 시 이들 부정행위 조사를 병합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조사·검증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여도 됨
 - 아울러 일반부정행위(혁신법 제31조제1항제2~6호) 중에서도 연구진실성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연구부정행위와 동일한 절차로 조사·검증을 진행할 수도 있음(이는 조사를 진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판단할 사항임)

제3절 부정행위 판정에 따른 후속조치

1.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후속조치

-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는 행위의 경중을 고려한 해당자 징계, 피조사자에게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부정집행 연구비 회수 등을 추진함.
- 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피조사자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추진함.



참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 제2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등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대학등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연세대학교)〉

- 제26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유형 및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요청한다. <개정 2021. 2. 15.>
1. 징계
 2.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3. 피조사자에 대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및 해당 학술지 편집인에 대한 통보
 4. 학위 논문의 지도 및 심사의 제한
 5. 생명윤리를 위반한 경우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
-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제보자가 본교 구성원인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징계를 요청
 2. 제보자가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 ④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제3항의 조치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2. 연구비 지원 중앙행정기관(연구관리 전문기관)에 조사결과 제출

 혁신법(제31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제57조제3항)에 따라 조사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관 부처(연구관리 전문기관)에 보고 해야 함.

※ 혁신법(제31조제2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혁신법 시행령(제57조제3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참고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할 사항 -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제29조(조사결과)의 제출)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부정행위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할 사항 - 권고(안)〉

• (연구부정행위) 예비조사 결과

1.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진술내용(제보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
2.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3.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관련 증거자료
5. 증인, 참고인, 예비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에 관여한 사람의 소속 및 성명, 전문분야
6. 예비조사 결과 및 그 판단 근거
7.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조치계획

• (연구부정행위) 본조사 결과

1.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진술내용(제보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
2.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3.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관련 증거자료
5. 조사위원회 위원의 소속 및 성명, 전문분야
6. 증인, 참고인, 예비조사·본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소속 및 성명, 전문분야
7. 본조사 결과 및 그 판단 근거
8. 본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조치계획

• **(일반부정행위) 조사 결과**

1.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진술내용(제보에 따라 일반부정행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
2.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3.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관련 증거자료
5. 증인, 참고인, 일반부정행위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명단
6.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 및 그 판단 근거
7.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조치계획

제4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조사·검증 및 처리 규정(예시)

 본 예시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7조제1항)과 시행규칙(제4조)에서 요구하는 자체규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으로, 개별 연구개발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기존 규정 등을 고려하여 사정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예시 : ○○대학교)**의 구성원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동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이를 조사·검증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행위**”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2. “**연구부정행위**”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3. “**일반부정행위**”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제3조(부정행위의 제보 등)

- ① 누구든지 부정행위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익명으로도 제보(이하 “익명제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제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의 내용
 2. 부정행위로 제보한 사유 및 증거자료
 3. 부정행위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5. 부정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6. 제보한 부정행위 검증·조치의 결과를 통보받을 연락처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의 제보를 접수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제보를 접수하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부정행위 발생 당시 그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보 등을 이관해야 한다.

제4조(익명제보의 검토)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익명제보를 접수하거나 이관받은 경우에는 그 제보 내용의 타당성 등 익명으로 제보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검증·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검증·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과 및 이유를 익명제보(제3조제2항제6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한 사람에게 통보한다.

1. 익명제보의 내용이 거짓·허위인 경우
2. 익명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부정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제2장 연구부정행위 검증·조치·보고

제5조(예비조사)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연구부정행위를 한 당시에 소속 연구자일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관련된 제보(익명제보를 제외한다)를 접수하거나 이관 받은 경우
 2. 제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관련된 익명제보를 접수하거나 이관 받아 제4조제1항에 따라 검증·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연구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날, 이관을 받은 날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③ 예비조사의 방법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예비조사 절차·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로 제보자의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의심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착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조사를 종료하여야 하고, 예비조사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로 제보자의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혐의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6조(본조사)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본조사 절차·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로 제보자의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본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성·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결과를 존중하고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예비조사를 착수한 날 또는 예비조사를 생략한 경우 본조사를 착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조사를 종료하여야 하고, 본조사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로 제보자의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충실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4항에 따른 조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제보자, 조사대상자에게 연장사실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제6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
2. 제6조제4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관련된 조사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과 관련된 조사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각각 재검토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과 관련된 조사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한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재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본조사위원회의 판단)

본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해당 연구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9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① 본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본조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 위원의 과반수를 해당 연구개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 분야의 전문가 중 1명 이상을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본조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본조사위원이 된 자는 조사대상자 및 조사대상 연구개발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조사대상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보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본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⑤ 본조사위원이 된 자가 조사과정 중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되며, 위원 본인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본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보자는 본조사위원회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⑧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⑨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관련자에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부정의심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로 연구부정의심행위를 제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2호를 준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2. 연구부정의심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제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에 따른 연구부정의심행위의 제보·접수·이관, 제4조에 따른 제보의 검토, 제5조에 따른 예비조사에 관한 내용, 제6조에 따른 본조사에 관한 내용,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 및 이를 통해 알게 된 사항을 본조사 결과(제5조제5항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조사 결과와 제7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검토 결과를 포함한다)가 통보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1. 제3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당시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에 이관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익명제보의 검증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결과 및 사유를 제보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3. 제5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예비조사 절차·일정을 사전에 통보하는 경우
4. 제6조제2항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본조사 절차·일정을 사전에 통보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이의신청과 관련된 조사 결과에 대해 재검토 계획을 통보하는 경우
6. 제9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본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통보하는 경우

③ 조사과정에 참여한 조사위원이나 조사위원이었던 사람 또는 조사 관련자이거나 조사 관련자이었던 사람은 예비조사·본조사에서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부정의심행위가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조사대상자가 명예회복을 신청할 경우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문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증인, 참고인, 예비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에 관여한 사람의 소속 및 성명은 생략할 수 있다.

1.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진술내용(제보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3.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관련 증거자료
 5. 증인, 참고인, 예비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에 관여한 사람의 소속 및 성명, 전문분야
 6. 예비조사 결과 및 그 판단 근거
 7.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조치계획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문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조사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제6호에 따른 증인, 참고인, 예비조사·본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소속 및 성명은 생략할 수 있다.
1.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진술내용(제보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3.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관련 증거자료
 5. 조사위원회 위원의 소속 및 성명, 전문분야
 6. 증인, 참고인, 예비조사·본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소속 및 성명, 전문분야
 7. 본조사 결과 및 그 판단 근거
 8. 본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조치계획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과 관련된 조사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사 결과보고서에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중대한 법령위반 사항의 보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법령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즉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의 기록)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의 전부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일반부정행위 검증·조치·보고

제14조(일반부정행위조사)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일반부정행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일반부정행위에 관련된 제보(익명제보를 제외한다)를 접수하거나 이관 받은 경우
 2. 제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일반부정행위에 관련된 익명제보를 접수하거나 이관 받아 제4조제1항에 따라 검증·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일반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날, 이관을 받은 날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반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반부정행위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③ 일반부정행위조사의 방법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일반부정행위조사 절차·일정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로 제보자의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일반부정행위조사를 착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일반부정행위조사를 종료하여야 하고,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로 제보자의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일반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제6조에 따른 예비조사를 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일반부정행위 조사를 충실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5항에 따른 조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보자, 조사대상자에게 연장사실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제5항에 따라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⑩ 제9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로 제보자의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⑪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제10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보고서를 문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진술내용(제보에 따라 일반부정행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3.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관련 증거자료
 5. 증인, 참고인, 일반부정행위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명단
 6.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 및 그 판단 근거
 7.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조치계획

제15조(준용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일반부정행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본)

본 연구윤리 길잡이 각 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전문가들의 검토를 토대로 마련되었습니다.

엄창섭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윤철희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교수
노환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최병인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교수
이범훈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지선 로앤사이언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원용 연세대학교 화학과 교수
박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범훈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이효빈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집행이사
오주연 대한산업안전협회 변호사
김창근 부산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발 행 : 2023년 5월

발행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권익보호과 044-202-697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043-750-2333

※ 본 길잡이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www.kistep.re.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발행처의 승인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전재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